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이 책자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공기업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공기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전년 도 7.31.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등의 문의 시 준수사항

- ▶ (1차) 지방공기업에서 예산운용에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설립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예산편성지침 시달 부서)로함.
- ▶ (2차) 설립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하되,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시·도 지방공기업 예산부서에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판단 이 곤란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I |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 · 3 · 4 · 5 |
|---|---|-------------|
|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 19 |
| | 1. 사업별 예산제도 | 21 |
| | 2. 재정건전성 강화 | 23 |
| | 3. 독립채산의 원칙 | 27 |
| | 4. 발생주의 원칙 | 30 |
| | 5. 이익잉여금 처분 | 32 |
| | 6.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 33 |
| | 7. 지방채 및 사채발행 | 34 |
| | 8.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 35 |
| |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 27 |
| | | 01 |
| | 1. 상수도 사업 | 39 |
| | 2. 하수도 사업 | 43 |
| | 3. 공영개발 사업 | 45 |
| | 4. 시설(환경·경륜)관리공단 ···································· | 47 |
| | 5. 도시철도공사 | 49 |
| | 6. 도시개발공사 | 51 |
| | 7. 기타공사 | 53 |

| IV |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 57 · 64 · 76 · 82 · 85 · 86 · 87 |
|-----|---|--|
| V |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 97 |
| VI | 사업별 예산제도 ···································· | 123 |
| VII |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 | 154 156 |
| |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 203 |

I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I.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경제 전망 및 재정운용 여건

1-1 경제 전망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5년 경기가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국내 경제성장률 : ^{'22년}2.6% → ^{'23년}1.4% → ^{'24년 전망}2.6%→ ^{'25년 전망}2.1%(2024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3년(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5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1-2 수입 여건

- 점차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의 뚜렷한 회복세가 없는 점을 감안 시 수입의 불확실성이 계속
-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축소될 전망

1-3 지출 여건

-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 건설, SOC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전망
- 다만, 지방 공기업 및 설립 지자체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등의 요인이 내년도 재정지출에 상당한 제약이 될 가능성 존재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재정 운용 중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전한 지방공기업 경영



재정 운용

방향

-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
- ❖ 경영수지 개선 및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 ❖ 책임·자율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전략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

- 지역투자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 고유·핵심 업무와 연관된 성장분야 선제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조정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경영효율성 제고

- 기관 고유업무 위주의 예산편성
- 공적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투자
- 사업성과 평가 실시 및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
-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을 통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 재무구조 개선 및 실효성 있는 부채감축 계획 수립
- 비핵심자산 정비, 사업수행방식 개선 등을 통한 수지균형 확보
- 관련법령과 공통기준 준수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 ▶ 수익확대 및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 책임·자율경영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3-1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내실있는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투자활성화 뒷받침
- 고유·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고유업무와 연관된 핵심 성장분야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2 수익확대 및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사업 수행방식 개선, 수입원 확대 발굴,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수익
 증대로 경영수지 개선 도모
- 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최대한 억제
-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주택 건설 등 공적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적정 부채수준 유지

3-3 책임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 민간부분과 중복투자 제한, 과도한 사채발행 억제,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
- 관련법령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 확립

[참고 1]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① 근거 및 적용대상

1) 지방직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31.까지 통보(법 제23조)

2) 지방공사·공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전년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법 제66의2, 제76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7.31.까지 해당공기업에 통보(영 제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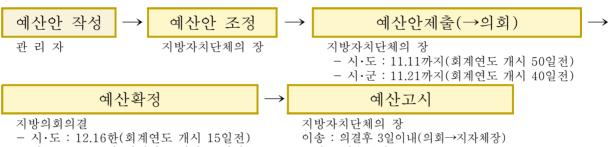
②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공기업간 균형 유지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2)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시행
- 3)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③ 예산편성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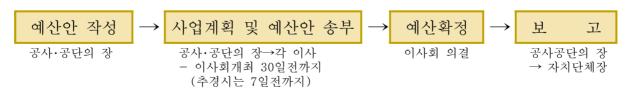
-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65조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로,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됨
- 2)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 시·군 : 12.21한(회계연도 개시 10일전)
- 고시 : 이송즉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안 제출시 부속서류
 - 사업운영계획,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에 관한 조서,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전년도 및 당해연도)

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 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음
 - ※ 공통기준 위반사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의 증가, 급여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등
-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공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함

4 예산편성결과 보고

-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3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 2) 보고사항
 - 예산규모(수입, 지출), 주요경비(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업무비 등) 편성현황, 예정손익 규모,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계획 등
- 3) 보고기한 및 절차 :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
 - 공기업 → 설립 지방자치단체→ 시·도 → 행정안전부

[참고 2]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① 지방공기업 대행업무수당 확대

- 지방공기업의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 육아휴직에만 적용 → 병가, 출산, 유산사산 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에도 적용

| 기존 | 개정 |
|--------------------------|----------------------------|
| <p.60></p.60> | <p.62></p.62> |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1 인건비 및 수당 | 1 인건비 및 수당 |
| 1-7 수당 등 | 1-7 수당 등 |
|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 |
|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 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 |
|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의 |
| |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휴가 또는 육아 |
| |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
| |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
| |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
| |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 |
| |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2] 저출생 관련 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지방공무원 수준 내 지급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신·구 대비표 >

| 기존 | 개정 | |
|------------------------------------|---|--|
| <p.57></p.57> | <p.59></p.59> | |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 1 인건비 및 수당 | 1 인건비 및 수당 | |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공단] | |
| 1-6 총인건비 | 1-6 총인건비 | |
| ○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
| <신설> | ⑰ 설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준 내 지급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 | |

③ 지방공기업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업무대행수당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도 확대

| 기존 | 개정 |
|--------------------------|--------------------------|
| <p.57></p.57> | <p.59></p.59> |
|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1 인건비 및 수당 | 1 인건비 및 수당 |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공단] |
| 1-6 총인건비 | 1-6 총인건비 |
| ○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 ○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
| 산정시 제외 | 산정시 제외 |
| ④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 ④ 대행업무수당 |

[4] 공사·공단 특정업무경비 자율항목 확대

- 공사·공단의 경우 자체 사정에 맞게 선택항목을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 임대주택 공급, 재산관리 업무 등에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 존재

| 기존 | 개정 | |
|---|---|--|
| <p.74></p.74> | <p.76></p.76> | |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 2 업무추진비 | 2 업무추진비 | |
| 2-5 특정업무경비 ○ 예산편성기준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안전 보건관리업무·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 예산편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공통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운영 ▶ (공통필수항목) 예산·계약·감사·노사·안전보건관리 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선택항목) 선택항목은 기관특성 및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거쳐 월 80,000원 이내에서 지출대상을자율 결정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하며,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평균증가율의 1/2범위내에서추가편성가능 * '25년은 제도시행 첫해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선택항목이 없으므로, '24년의결산·보상·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의특정업무경비를선택항목으로 봄 ※ 산출예시(전년도 선택항목특정업무경비예산총액이 2,000만원, '22~'24년당초예산평균증가율이 10%인경우):총액한도 = 2,100만원(2,000만원×(1+(0.1×1/2)) | |

[5] 직무중심인사관리 도입 인센티브 마련

- 2단계(채용, 전보 등 시범적용), 3단계(직무급 도입) 도입기관*에 대해 단계별로 1회에 한해 각각 0.1%p 총인건비 인센티브 제공
 - 단,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평균임금 80% 미만 기관은 0.2%p 적용
 - ※ (1단계) 직무분석 등 추진기반 마련, (2단계) 인사관리에 부분 적용, (3단계) 직무급 도입

< 신·구 대비표 >

| 기존 | 개정 |
|--|---|
| <p.57></p.57> | <p.59></p.59> |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1 인건비 및 수당 | 1 인건비 및 수당 |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공단] |
| 1-6 총인건비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산정시 제외 | 1-6 총인건비 ○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 <신설> | ® 직무중심인사관리 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 (2단계, 3단계 도입완료 기관은 단계별 1회에 한해 총인건비의 0.1%p 부여. 다만, |
| | 평균임금 80% 미만 기관은 0.2%p 부여) |

[6] 부채중점관리기관 배당제한 권고

•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

| 기존 | 개정 |
|-----------------------|-------------------------|
| <p.24></p.24> | <p.24></p.24> |
|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
| 2 재정건전성 강화 | 2 재정건전성 강화 |
| 2-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 2-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
| <신설> | ※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당기순이익의 30%를 |
| |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 |

7 예산이체 단위 변경

• 예산이체를 정책·단위·세부사업 전부에 대해 가능하도록 개선

< 신·구 대비표 >

| 기존 | 개정 |
|---|--|
| <p.99></p.99> | <p.101></p.101> |
|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 4 예산의 이체 | 4 예산의 이체 |
| 4-2 이체의 범위 | 4-2 이체의 범위 |
| - 이체의 단위는 "단위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단위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금액이체 가능 |

8 위원회 참석비 변경

• 현행 기준(1회: 10만원, 2시간 이상 시 15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설립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참석비 지출 가능

| 기존 | 개정 |
|------------------------------|------------------------------|
| <p.90></p.90> | <p.92></p.92> |
|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8 기타 | 8 기타 |
| ○ 위원회 참석수당 | ○ 위원회 참석수당 |
| - 위원회 참석비 | - 위원회 참석비 |
| ▶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 ▶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
|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 50,000원 추가(1일 1회)하는 것이 원칙임. |
| | 다만,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설립 |
| |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지출 가능 |

9 과목해소 변경

• 공공운영비-공무원의료비(201-02) 세목을 간접기업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과목해소 변경

< 신·구 대비표 >

| 기존 | | | | | 개정 | | | | |
|----------------------|---|----------|----------|------------|-----------------|---|----------|----------|--|
| <p.172></p.172> | | | | | 74> | | | | |
| VII.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용 | | | | | 계산 - | 구조 및 예산과목 내 | 용 | | |
|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 | | | 3 | 지 | 출예산 과목 내역(목 | ·세목) | | |
| 그룹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200 물건비 영비 | 3. 공무원의료비 (공무직(무기 계약) 포함) 1)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2) 공상치료비 등 | 직영 | 사업 | 200 물건비 | 02 공공운 영비 | 3. 의료비 (공무직(무기계약) 포함) 1)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2) 공상치료비 등 | 고통 | 사업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16.2.17. 고용노동부)」 준용 문구 삭제

| 기존 개정 | |
|---|-----------------|
| <p.62> <p.64></p.64></p.62> | |
|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 기준 |
| 1 인건비 및 수당 1 인건비 및 수당 | |
| 1-10 비정규직 보수 1-10 비정규직 보수 |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 등의 |
|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 외주화 |
|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포함)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 | } 개선 |
| 대책」('16.2.17, 고용노동부)을 준용하여 편성 대책」('16.2.17, 고용노동부)을 준용하여 | 편성 |

• 평가급 지급 제외 기간 계산과 관련한 코로나19 관련 문구 삭제

< 신·구 대비표 >

개정 기존 < p.77 >< p.79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 제외기간 ○ 제외기간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로 직무에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가, 코로나19 시설휴업에 따른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기간에 포함 휴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음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반환금 예산을 사업/자본예산에 모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 | | | 개정 | | | | | |
|---|-----------------------|--|----------|--------------------|--|-----------------------|--|----------|-----------|
| <p.1< td=""><td>98, 1</td><td>99></td><td></td><td></td><td><p.2< td=""><td>00, 2</td><td>01></td><td></td><td></td></p.2<></td></p.1<> | 98, 1 | 99> | | | <p.2< td=""><td>00, 2</td><td>01></td><td></td><td></td></p.2<> | 00, 2 | 01> | | |
| Ⅷ.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용 | | | | VII. | 계산 - | 구조 및 예산과목 내 | 용 | | |
|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 | | 3 |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 | |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800 예비비 및 기타 | 802 반환금 및 기타 | 01 국고보조금반환금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03 기타반환금 등 | 공통 | 사업 | 800 예비비 및 기타 | 802 반환금 및 기타 | 01 국고보조금반환금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03 기타반환금 등 | 공통 | 사업• 자본 |
| | | | | | | | | | |

• 예정손익계산서·추정손익계산서 간, 예정재무상태표·추정재무상태표 간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중이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재무상태표로 용어 통일

< 신·구 대비표 >

| 기존 | 개정 | | | | | | |
|--------------------------|--------------------------|--|--|--|--|--|--|
| <p.213, 228=""></p.213,> | <p.215, 230=""></p.215,> | | | | | | |
| Ⅷ.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 Ⅷ.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 | | | | | |
| 2. 예산총칙 | 2. 예산총칙 | | | | | | |
| 제1조(총칙) 2024년도 00시 00사업 | 제1조(총칙) 2025년도 00시 00사업 | | | | | | |
| 특별회계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 | 특별회계예산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 | | | | | | |
| 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 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 | | | | | |
| 같다. | 같다. | | | | | | |

• 이월과 관련하여 익년도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예시 추가

|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6-2 이월의 종류 6-2 이월의 종류 ○ 이월예산과 재원 ○ 이월예산과 재원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보조금,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여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일 가능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일 가능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일 가능 이원의 종류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6-2 이월의 종류 이월이 장류 스키를 지방해(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이년도에 의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외 가능 | 기존 | 개정 |
|--|--|--|
| 6-2 이월의 종류 ○ 이월예산과 재원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고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 <p.106></p.106> | <p.108></p.108> |
| ○ 이월예산과 재원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 이월예산과 재원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
|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 6-2 이월의 종류 | 6-2 이월의 종류 |
|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기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 ○ 이월예산과 재원 | ○ 이월예산과 재원 |
| |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

• 대행사업 미정산반환금을 순세계잉여금과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대행 사업비의 정확한 결산 및 효율적인 예산관리 도모

| 2 수입예소 그룹 목 181 1. 7 0 180 181 | 기존 | | | | 개정 | | | |
|--|---|----------|---|-------------------|---|----------|--|--|
| 2 수입예소 그룹 목 181 1. 7 0 180 181 | | | <p.1< td=""><td>65, 1</td><td>66></td><td></td></p.1<> | 65, 1 | 66> | | | |
| 그룹 목 181· 1. 2 180 181 C | 조 및 예산과목 내용 | | VII. | 계산 - | 구조 및 예산과목 내용 | | | |
| 181 1. 7 0 0 180 18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예산 과목 내역 | | 2 | 수약 | 집예산 과목 내역 | | | |
| 180 181 C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 |
| 금 잉여금 <u>c</u> 181 1. 전 | 18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181-02 보조금사용잔액 1. 전년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반납 예정인 금액 | 고통 | 180 유보자 금 | 181 순세계 잉여금 | 18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이월금, 제39조에 의한회전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대행사업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181-02 보조금사용잔액 1. 전년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반납 예정인 금액 1. 전년도 대행사업비사용잔액 1. 전년도 대행사업비를 미사용한잔액으로 반납예정인금액 | 공통 | | |

• 행사관련시설비는 자본예산이므로 이에 맞게 과목해소를 변경하고, 일회적 시설물 설비 비용은 행사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변경

< 신·구 대비표 >

| 기존 | | | | 개정 | | | | | |
|---|------------------------|--|----------|----------|--|------------------------|---|--------------|----------|
| <p.1< td=""><td>92, 1</td><td>72></td><td></td><td></td><td><p.1< td=""><td>94, 1</td><td>74></td><td></td><td></td></p.1<></td></p.1<> | 92, 1 | 72> | | | <p.1< td=""><td>94, 1</td><td>74></td><td></td><td></td></p.1<> | 94, 1 | 74> | | |
| VII. | 계산 - | 구조 및 예산과목 내· | <u> </u> | | VII. | 계산 - | 구조 및 예산과목 내 | 용 | |
| 3 | 지 | 출예산 과목 내역(목· | 세목) | | 3 | 지 | 출예산 과목 내역(목 | ·세목)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400 자본지 출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 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고통 | 자본 | 400 자본지 출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 하는 구조물 등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 자본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200 물건비 | 201 일반운 영비 | 03 행사운영비 <신설> | 공통 | 사업 | 200 물건비 | 201 일반운 영비 | 03 행사운영비 3.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 하는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공통 | 사업 |

• 평가급 및 성과금이 109목으로 이동됨에 따라, 전용이 제한되는 인건비 관련 비목의 예시 추가

| 기존 | 개정 |
|------------------------------|---------------------------------|
| <p.97></p.97> | <p.99></p.99> |
|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 ○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 - 인건비관련 비목(101, 107목), 차입금원금 | - 인건비관련 비목(101, 107, 109목), 차입금 |
| 상환(601목), 차입금이자상환(311목), 기타 | 원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상환(311목), |
| 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상환 | 기타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 |
| (612목) | 상환(612목) |
| ※ 인건비 관련 비목간 및 차입금원금상환과 | ※ 인건비 관련 비목간 및 차입금원금상환과 |
|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 사업별 예산제도

1-1 기본 개념

- 예산의 전 과정을(계획·편성·집행·결산·평가·환류) 사업중심으로 하여 투입 비용 대비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 품목별예산제도의 예산편성・운영체제 구조(관, 항, 세항)에서 프로그램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화
 - ※ 수입예산은 기존 구조(관-항-세항)체제를 그대로 유지

| 구분 | 품목별 예산제도 | 사업별 예산제도 ('24년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전면도입) |
|----|---|---|
| 편성 | ■ 예산과목 위주 편성(관-항-세항-목)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 ■ 시업(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 (정책-단위-세부-목) - 중장기 목표에 입각, 성과계획과 동시 작성 |
| 형식 | ■품목별 예산서 : 품목별 편성 | ■성과중심 예산서 : 사업단위 편성 |
| 운용 | ■ 예산 낭비억제 통제위주 예산운용 | ■성과위주 예산운용 |
| 결산 | ■단편적·품목별 결산 | ■ 종합적·사업단위 결산 |
| 평가 |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
| 환류 |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미반영 | ■성과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 반영 |
| 효과 | ■사업 수행 내용을 파악 곤란 | ■사업내용 파악 용이,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

1-2 도입 필요성

- 지방공기업 예산은 단위 사업들이 예산에 목을 달리하여 편성되는 체계로 사업별 성과 정보 파악에 애로
- 지방자치단체와 직영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간 예산체계의 상이성으로 예산의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 제공 곤란
 - 자치단체 복식부기 결산이 사업별 원가산출체계로 개편('13년)되고 자치단체 재무건전성 판단시 소속 지방공기업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일관된 재정정보 생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공사·공단 간에 예산편성 구조 및 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 제고
 - ※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국가공기업은 2013년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 일부 지방공사는 '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 재무 제표 결산 정보부터 구분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예산편성부터 사업별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 체계 필요
 -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1-3 도입 계획

- 직영기업은 '22년부터 병행 편성·운영*하고 그 외 공기업은 '23년부터 병행 편성·운영 후 '24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전면 도입
 - * 병행 편성·운영은 품목별예산제도와 사업별예산제도 중 한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음을 뜻함
- 사업별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출 예산의 관·항·세항 구분은 정책·단위·세부사업 구분으로 대체된 것으로 봄
- 지출예산 사업 구조화 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2 재정건전성 강화

- ▶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 계상
- ▶ 지방공기업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2-1

-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
 -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2024년도 수준 내에서 편성하되, 자율적으로 절감 ※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예산 편성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2-2

- 국회·감사원·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
 - 외부 회계감사, 개별·통합경영공시 공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보조금(출자금 포함)은 경영 혁신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행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미이행시 예산삭감 또는 집행 보류
- 업무추진비 집행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시. 예산 감액조정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2-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 지방공사 중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선정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 (지정방법) 재무지표평가(20점), 재무개선평가(가점 2점)을 통해 총점 12점 미만 기관을 지정
 - (재무지표 평가) 안정성, 수익성 분야 지표로 구성된 평가틀을 이용해 평가 * 재무지표는 최근 3개년 결산 공시자료(클린아이, 통합결산시스템) 활용

<재무지표 평가틀>

| 구 분 | 재무지표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반영 비율 | 바 | 점 |
|-----|----------|------------------|------------------|------------------------|------------------------|------------------------|-----------------------|-------|---|----|
| | 부채비율 | 300% 초과 | 300% 이하 | 250% 이하 | 200% 이하 | 150% 이하 | 100% 이하 | 80% | 4 | |
| 안정성 | 부채규모 | 1조 _{이상} | 1조 미만 | 5000억 ^{미만} | 3000억 _{미만} | 1000억 ^{미만} | 500억 ^{미만} | 80% | 4 | |
| | 금융부채/총자산 | 60% 이상 | 60% 미만 | 50% 미만 | 40 % 미만 | 30% 미만 | 20% 미만 | 60% | 3 | 20 |
| | 영업이익/매출액 | 2%미만 | 2 % 이상 | 3% 이상 | 5% 이상 | 7% 이상 | 10 % 이상 | 60% | 3 | 20 |
| 수익성 | 총자산수익률 | 0%미만 | 0 % 이상 | 0.5% 이상 | 1 % 이상 | 3 % 이상 | 5% 이상 | 60% | 3 | |
| | 이자보상배율* | 1배 _{미만} | 1배 이상 | 1.5배 이상 | 2배 이상 | 4배 이상 | 8배 이상 | 60% | 3 | |

- * 조정된 이자보상배율 적용 : (영업이익 + 매출원가 포함 이자비용) / 당기발생이자비용
- (재무개선 평가) 부채비율·규모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감소할 경우 가점 2점 부여(부채비율·규모 모두 감소: 2점, 부채비율만 감소: 1점)
- (관리방법)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클린아이 공시
 - ※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

100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 (지정방법)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① 부채규모 1천억 이상이며 부채비율 200% 이상, ② 완전자본잠식이며 당기순손실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부채성격 및 증가원인, 재무안정화대책 등을 평가
- (관리 방법) 클린아이 공시 및 기관별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연속 지정 기관)을 경영평가에 반영 및 분기별 점검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적정 부채관리제 도입에 따른 기관별 부채비율과 연계하여 공사채 발행 및 사후 관리

2-4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재무)관리계획 수립

(상·하수도)

•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근거, 자산·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제출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영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 1.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 2.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 3.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 자산·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 공사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제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 ※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2-5 지방공사의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강화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실시
 - 사업 타당성 분석 후 내부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결과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 실시 및 이사회 심의·의결로 추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 * (외부전문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함('24. 1. 1.)
-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치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예산 반영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사업 투자타당성 검토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

3 독립채산의 원칙

- ▶ 지방공기업은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함
- ▶ 이를 위해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함

3-1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

1)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1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일반 행정과 구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은 독립채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운영
-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사업 및「하수도법」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등 재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괄 편성 *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지원액이 직영기업 사업(수도, 하수도) 운영과 관련성이 있으면 지원액 전액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 지방공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별 서비스 혜택의 귀속 여부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 지방공기업은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영업수입으로 영업지출과 자본 지출까지 충당하여야 함
 - ※ 비수익성 사업의 추진, 수탁·대행 등은 억제하고 국가 및 지방의 보조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 대규모 사업비의 충당
 -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의한 거액의 건설비가 충당되어야 하는 경우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공사·공단은 공사(공단)채를 발행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여러 해에 나누어 분담시킴

2) 경비부담 및 예산편성

•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

3-2 일반회계 등의 경비부담(지방직영기업)

1)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또는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

2) 경비부담 및 예산편성

-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다음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년도 9.15.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요금조정 등 적절한 조치 강구
- 일반회계에 경비를 부담시킬 경우 부담기준에 적합한 예산과목에 계상하되 일괄적인 계상 금지
 - 경상적운영보조금 : 사업예산의 영업외수입 중의 일반회계 부담금 또는 타 특별회계 부담금에 계상
 - 자본보조금 : 자본예산의 자본잉여금 수입 중 건설보조금 등에 계상

■■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 ㅇ 각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비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 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그 시설유지비 및 외부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 궤도·하수도. 기타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등

3-3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지방공사·공단)

1) 근 거: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76조·제77조, 영 제63조·제66조·제67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업무를 지방공사·공단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방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위탁 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
- 공사·공단은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
 - 위탁계약 체결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공단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 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 시행
 - ※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 위탁비용 청구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서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예산편성

- 위탁대행 사업비(역무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수입에 계상(위탁대행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함
 -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



발생주의 워칙

- ▶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
- ▶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달리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현금지출경비를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함

4-1 발생주의 회계처리

1)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64조의2

- 수익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속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
-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

2) 예산편성

- 수입예산은 재화 및 서비스공급의 공급량과 요율·공급가격조정계획을 감안, 요금수입 등 사업수익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 이자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은 현실성 있게 적정 계상
 -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회계간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의해 계상
 - 지방채(사채)수입은 발행승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계상
- 지출예산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 예산활용, 편성단계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

-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
- 법령에 근거한「재정 투·융자심사」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환원리금 등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4-2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1)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자산감모비, 제품·상품의 매출원가
 -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 발생품 등의 사용 시의 발생품 장부가액,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 계상되는 손비 등
- 지방공사·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2) 예정손익계산서 편성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예산편성 없이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함
 - ※ 지출예산에 비현금성경비를 편성할 경우, 수입예산 총액과 지출예산총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현금성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당년도분*을 계산하여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 * 누계액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를 과대하게 왜곡되는 사례 금지
 - 이익잉여금 등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에 명시한다.
- 기타 경비는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산출해서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



이익잉여금 처분

▶ 지방공기업은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 적립 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1)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7조, 제67조

-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음
 - ※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다른 지방직영기업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가능(지방공기업법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2)
- 지방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
-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이익정산금(납부금, 전출금, 배당금)을 계상하여 지방의회(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익배분

2)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 지방직영기업은 자본예산의 「기타자본적지출」항에 「이익정산금」 과목으로 결산시 승인받은 납부금 또는 전출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정산금으로 계상·집행
- 지방공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금운영계획상「배당금」계정과목에서 집행
- 공영개발사업 중 향후 사업계획이 없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실상 특별회계 자금을 은행에 예치 하여 놓고 있는 자치단체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사업의 청산 방안을 강구

6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 ▶ 지방공사·공단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특정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성격상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는 바.
- ▶ 주식이나 사채 투자는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에 위배되므로 이를 금지하여 지방공기업 나아가서는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1)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69조, 제76조

- 지방공사·공단의 업무상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 포함)
- 지방공사·공단의 업무상 여유금 운용은
 -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 예입하되,
 -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
 - ※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형(국·공채) 수익증권, 국·공채 및 우수 신용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MMF, MMT 등
- 지방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
 - 특히, 출자를 통해 사실상 법인의 지배권을 갖고자 할 경우 현 사업에 대한 아웃소성 등 업무의 효율화 목적 이외에는 출자를 제한
 - * 출자한도(「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지방채 및 사채발행

▶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방채 또는 지방공사채(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음

1)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상적인 운전자금 충당, 회전기금의 재원 충당,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부담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숭인할 수 있는 경우 ■■

- 1. 경상적인 운전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회전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할 수 있음(일정기준 초과 시 사전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2) 발행방법

- 지방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발행승인 신청
- 지방공사채 및 공단채(차입포함)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발행(순자산액의 4배 이내/단,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외는 2배 이내)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발행 및 관리

■■ 공사채 발행 시 신청서 기재사항 ■■

- 1. 사채의 발행목적
- 2. 사채의 발행시기
-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 4. 이율
-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 7. 모집 및 인수방법
- 지방채 및 공사채·공단채 발행 시 자체재원인 보전재원의 정확한 산출로 기채수입을 최소화

8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1) 근 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방안(기획재정부),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및 융자계획(산업통상자원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환경부)

2) 주요내용

•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성과배분계약에 의한 에너지 절약 확산

3) 예산편성 및 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규정을 준용
 - 에너지 절약사업 용역비를 총 용역 부기 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공공운영비 및 동력비(직영기업 및 공사공단)로 계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또는 시설 교체 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의 절약액(또는 시설 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Ⅲ.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 ▶ 공통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세부 예산편성기준을 적용
- ▶ 세부편성기준이 없는 직영기업의 경우 상수도사업의 세부편성기준 준용
- ▶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본 지침적용이 곤란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편성 가능
-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공사·공단 편성기준 준용

1 상수도 사업

1-1 수입

- 급수수익은 요금적정화계획을 반영하되, 2023년도 결산결과를 감안 요금수익을 적절하게 추계
- 회계간 경비부담 원칙에 의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부담금 중 운영보조목적 부담금과 시설투자 목적 부담금은 공기업 자체조달 부족분에 대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구분 계상
- ㅇ 유휴자산의 관리방안 수립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제고로 영업외수익 증대
- ㅇ 자체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기채수입 최소화

가. 사업수입

- ① 영업수익
 - 요금산정을 위한 총괄원가에는 국고보조금 등 일반회계 지원예산도 포함
 - 급수수익의 제 잠식 요인(누수, 도수, 계량기 불감량, 무상사용량 등)을 정밀 분석하여 최대한 증수 노력
 - 급수공사수익은 2024년 실적 및 상수도보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계상
 - 구경별 정액요금은 급수수익에 포함
 - 소방·공원용수 등 공공시설 관리기관(소방서 등)의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 원수·정수 등 타 자치단체 판매 수입

② 영업외수익

- 면밀한 자금운영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은 항상 정기예금 등 고율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 증대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 계상
 - 경상적 운영보조 부담액은 영업외수입에 계상(소방용수사용료 등 요금부담액은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시설비 부담액은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계상

■ 일반회계(타회계)의 부담내역 ■

-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선행투자를 위해 일반회계 부담으로 기채한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 공업용수 등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원가이하로 요금을 책정한 경우 요금과 원가와의 차액
- 소방·공원용수 등 공공시설 관리기관(소방서 등)의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등의 해당요금 부담액
- 일반회계(다른 특별회계)사업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행할 경우의 비용 및 수수료
-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 당해수입금 징수에 따른 전산처리비용 등 제반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
- 불용고정자산 매각 시 처분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충당금)보다 높은 때에는 그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과목에 계상

③ 특별이익

• 전기의 수익으로 전기에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발견됨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입은 전기손익수정이익에 계상

나. 자본적 수입

- 당해 연도 사업 활동에 의한 수익 및 보전재원인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 지출경비·전기이월금 등을 최대한 확보
- 유휴자산은 불필요하게 총괄원가를 높이면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폐기, 일반회계 이관 등)를 취할 것
-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발행승인분에 한하여 계상
- 시설분담금은 2025년 급수전 증설계획을 감안 계상
- 일반회계가 부담키로 한 지방채상환원금

1-2 지출

- 사업비용은 그 비용과목에 대응하는 수익과목의 예정수입액을 한도로 하여 계상
- 경상적경비는 2024년도 수준 내에서 편성하되, 자율적으로 절감, 영업비용은 영업 수익규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수도종사공무원의 전문화, 경영마인드 제고, 안전사고 예방 등 즉각 대응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경비 등 반영(안전 관련 교육훈련비는 필수)
- 상수도 생산시설의 신·증설 전면 재검토, 사업추진의 적정화 - 정수장 등 수계별·권역별 공동설치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노후관교체, 불량계량기교체, 감압밸브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취·정수장시설 개량 등 유수율 제고사업 적극 추진
- 안전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가. 수익적 지출

① 인건비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 비정규직(상용인부)은 지방조직 감축지침에 따라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조정 계상
-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한 자치단체 청원경찰 보수관련 규정에 따르되, 조례로 설치된 상수도사업관장 기관에 근무하는 청경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종전 고용직에 준하는 장려수당 (월 2만원) 지급 가능

② 물건비

-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피복착용 가능연수를 고려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운영
- 검침원 등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는 출장지, 출장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범위 및 기준액에 대한 방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우영
- 급수공사비(신설+개조공사비)는 당해 급수공사 수입액 한도 내에서 계상

③ 영업외비용

- 차관, 각종 융자금에 대하여 2025년에 변제할 이자는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과목)
- 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민간이전 또는 민간자본이전과목에 계상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장학기금 적립 등 경상적 지원금 : 민간이전 과목(민간경상보조)에 계상
- 농기구수리시설, 농작물재배시설, 생활오수처리시설 등 자본적 지원금: 민간자본이전과목(민간자본보조)에 계상

■■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방법 ■■

- 보조조건을 명시하여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 등에 직접 교부
- 자금은 보조조건을 이행한 문서 또는 현지점검 후 사후 지출
- 지원사업계획을 수혜자 등에게 통보하고 수혜자와 제3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보조조건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에 의해 그 제3자에게 자금 지출
- ※ 집행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불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처분액 < 장부 가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 과목에 계상

④ 특별손실

• 수재, 화재 등에 의하여 발행한 손실은 임시손실과목에 계상

- 중·장기 상수도종합계획의 상수도 생산(처리)시설의 신·증설 재검토 추진
 - 실제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인구추계를 시설규모에 반영
 - 지역특성에 따른 상수도주민 1인 1일 소비기준(농어촌 300L이하, 도·농 복합시 350L이하, 도시 400L이하)을 시설규모에 반영
 - 하절기 등 계절적 수요는 예비율(10% 이하) 활용 ※ 시설과다 보유단체는 노후정수장 폐지, 읍·면 소규모 정수장의 통합운영 방안강구
- 상수도시설의 공동설치 운영 등 시설효율화
 - 지방자치단체 간 수계별·권역별 시설공동설치·운영 추진
-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사업비 최우선 계상
 -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 우선 투자
 - 취·정수장 시설물 개량, 불량계량기교체, 감압계량기 교체 등
 - 블록시스템 구축,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장비 구입 등
- 노후관 통합정비공사의 경우 공사 집행 편의상 급수관에서 배수관까지 시설비에 일괄계상 가능
 - 결산 시 비용계정과 자본계정으로 조정 분개
- 고지대, 변두리지역 농어촌의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시설확장 개량사업비 반영

2 하수도 사업

2-1 수입

- ㅇ 하수사용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총괄원가절감 등을 통해 경영개선노력 강화
- ㅇ 우수처리비, 총괄원가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부담금 철저 확보
- ㅇ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철저
- 택지개발 및 APT건설지역 등

가. 사업수입

• 하수처리장 건설재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에 따른 이자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은 타회계 경상보조금 과목에 해당

나. 자본적 수입

- 일반회계 등의 건설보조금은 회계별 투자비 부담기준에 따르되, 해당 회계로부터 보조금전출이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 일반회계가 부담키로 한 지방채상환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전출이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2-2 지출

- 상습침수지역, 영세민밀집지역, 악취발생지역 등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확장· 개량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적극 추진
-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부담금 편성(하수도사용료징수에 따른 실소요 경비를 부담)
- 하수관거, 처리장 등 국비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지방비부담 전액 계상
- ㅇ 자치구에 대한 예산은 본청예산에 일괄편성하고,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시행
- ㅇ 안전사고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안전 교육훈련 경비 필수 반영
- 안전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가. 수익적 지출

- 영업비용은 영업수익규모를 감안하여 적의 편성, 경상적경비는 2024년 수준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절감하여 편성
- 자치구의 사업비용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과목에 일괄계상하되,
 자치구별 내역을 명기

-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증설 재검토 추진
 - 실제 인구증가추세에 따른 인구추세를 시설규모에 반영
 - 수계별·권역별 시설공동설치,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재산 판매·빅딜 ※ 예) 서울시와 광명시간 : 하수처리장(서울), 쓰레기소각장(광명)
- 자치구에 대한 자본예산은 각 항목별로 자치구별, 사업별로 예산 편성
 - 하수관거, 종말처리장시설 등에 있어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계상



3 공영개발 사업

3-1 수입

- 투자재원 조달 시 장기저리자금의 차입을 통한 비용부담의 최소화
- ㅇ 철저한 원가계산 및 경비절감에 의한 내부 수입확보 효과 창출
- ㅇ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증대
- 임대료수입 현실화, 완성자산(주택·용지)의 분양촉진대책 강구

가. 사업수입

- 일시불 주택(용지)중 2025년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액을 주택(용지)매출수익으로 계상
- 2024년말 현재 미준공 주택(용지)의 선수매출액 중 2025년도에 준공예정인 주택(용지)의 선수매출은 자금의 수입이 없으나 2025년도 손익예산에 반영

나. 자본적 수입

- 토지 또는 주택이 준공일 이전에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금 수입액을 유동부채 선수금 수입으로 계상
 - 전기말 현재 준공이전 선수매출액은 2025년도에 준공될 경우 손익예산의 매출로 계상
- 임대주택보증금은 당해 연도에 실현될 수입액을 비유동부채 수입과목에 계상

3-2 지출

-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분양촉진 기여
 - 경상경비 및 일반관리비는 2024년도 수준을 감안, 자율적으로 절감
 - 사업부대비 등의 절감편성 및 효율적 집행

가. 수익적 지출

- 매출원가는 비용과 수익대응원칙에 의하여 계상
 - 당해 연도 일시불조건 매출하는 경우의 용지조성원가 또는 주택매출 원가
 - 연부매출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연부액 해당원가
- 임대 또는 수탁관리 사업비는 해당물건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계상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분양주택건설 사업 이외에 투자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

- 토지취득비는 감정가격을 근거로 실소요액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 시설비와 자재비는 설계를 근거로 하여 실소요액을 예산편성
- 시설부대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계상(예산 산출 기초란에 산출내역을 명기)
-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 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을 계상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4 시설(환경·경륜)관리공단

4-1 수입

가. 사업수입

- 자체사업에 의한 수입이 있는 때에는 2024년 수입실적 및 2025년 조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공단에서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사업비용 계산 시 직접관리비용, 간접관리비용 및 대상시설물의 감가상각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여 대행사업수입에 계상
 - 대행사업수행에 따른 수입은 자치단체 수입이므로 자치단체 세입으로 납입하되, 당해 공단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납입주기(일, 주, 월, 분기 등) 및 납입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시설임대의 경우 임대료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포함 산정, 민간부담금은 임대관리비 수익으로 계상
- 외부기관의 지원금, 장려금 등은 기타영업외수익에 계상

나. 자본적 수입

• 공통기준 및 상수도사업의 편성기준을 준용

4-2 지출

- ㅇ 이용 시설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 확충으로 서비스 제고
- o 자립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절감·긴축예산 운용

가. 수익적 지출

- 인건비는 공단보수 및 연봉제 규정에 의해 계상
-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편성하되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는 자체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집행
 -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계상
- 업무성과에 의한 평가급 운영 철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
-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시설비는 설계를 근거로 계상
- 이용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증진을 위한 시설개량비 최우선 계상

5 도시철도공사

5-1 수입

- ㅇ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적정화 노력과 무임승차 근절로 운수수입 증대
- ㅇ 광고물 적극 유치 등 부대사업수입 제고방안 강구
- ㅇ 채무상환, 영업결손보전을 위한 설립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최대한 확보
- ㅇ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영업외수입 증대
- 부채 및 적자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가. 사업수입

- 운수수입은 2024년도 실적 및 역세권별 교통량 증가요인, 기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금액 계상
- 임대수입 및 부대사업수익은 대상수입원을 적극 발굴 계상
- 불용 결정된 저장품 등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매각계획을 수립, 보유자산 활용 제고

나. 자본적 수입

-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상비절감·당해 연도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조달자금 최소화
- 가용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처분으로 투자재원확보 및 보유재산 활용도 제고

5-2 지출

가. 수익적 지출

- 인건비는 적정 결원을 감안 계상하고, 경상경비는 2024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감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
- 경상경비 및 전력비 등 도시철도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인 절감으로 원가인상요인 최소화
-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편성하되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집행
 - 직책수행비 또는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계상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시민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사업의 편익시설·안전시설 확충에 예산 최우선 계상
- 부채절감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 보전재원,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최대한 확보하여 채무추가발행 최소화
 - 민간위탁 등 경영합리화 적극추진, 절감된 예산은 부채상환에 최우선사용
- 시설비·시설부대비는 설계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 계상
 - 기채원금상환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6 도시개발공사

6-1 수입

- ㅇ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이윤 보장으로 수입 현실화
- 외부조달자금의 장기저리자금 확보로 부담 최소화
- 분양중도금, 미수금 등 관리 철저 및 미분양 토지(주택) 분양촉진방안 강구

가. 수익적 수입

- 2025년도 준공예정인 토지 및 주택의 선수매출액은 손익계산에 계상
- 임대대상 시설 확충 및 임대료의 현실화로 임대수입 증대 및 미수금 발생 방지

나. 자본적 수입

- 재정자금·주택도시기금·지역개발기금·은행차입금 등 장기차입금은 사채 승인액 중 당해 연도 발행이 확실시 되는 금액 및 내시된 금액을 계상
 - 외부 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 상환계획을 수립하되.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재검토 추진하고 차입금은 사업목적 외로 사용은 금지
- 임대주택 보증금은 당해 연도 실현가능한 수입을 계상
- 자본금 및 잉여금수입은 자치단체 등에서 전입이 확실한 금액을 계상

6-2 지출

가. 수익적 지출

- 용지매출원가 및 주택판매원가는 매출수익 인식기준에 따라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원가계상
 - 시설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시설부대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따라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보수 및 연봉제규정 등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
- 지급이자는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주택건설 이외의 사업에 투자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상
-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토지취득비는 감정가격을 근거로 실소요액 계상
- 시설비 및 자재비는 설계를 근거로 실소요액 반영
- 시설부대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 매출을 전제로 한 용지조성·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 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은 재고자산의 지급이자 등에 계상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시민서비스 증진을 위한 편익시설·안전시설 확충에 예산 최우선 계상

7 기타공사

7-1 수입

가. 수익적 수입

- 영업수익은 과거년도 실적, 수입증가요인 및 기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 계상
 - ※ 외부기관의 지원금, 장려금 등은 기타영업외수익에 계상
- 부대사업 수익은 대상 수입원을 적극 발굴로 수입 제고

나. 자본적 수입

•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 및 당해 연도 보전재원 최대한 확보

7-2 지출

가. 수익적 지출

-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공사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계상
- 경상경비 및 사업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인 절감 집행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시설비는 설계를 근거로 실 소요액 계상
- 고객서비스증진 및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비 최우선 계상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 지방직영기업은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을 적용
- ▶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및 자체 규정 등에 따라 편성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직영기업

1-1 편성기준 및 방법

- 2024. 10. 1.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 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지급
- 복리성 인건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에 정한 경비 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 상여금
- 인건비는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지침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임의로 정하여 집행할 수 없음

1-2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 또는 세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와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조직축소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용한 경우
 - 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라 관련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관리자가특별히 전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3 연봉액 계상방법

•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은 총액으로 인건비 과목의 101-01(보수), 계약직 공무원 급여는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집행

1-4 별도정원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의해 정원 외 인원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계상·집행

1-5 복리성 인건비 편성기준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 정한 비목 및 지급방법 등에 의해 편성·집행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아래 1

- ① 사장(상임임원 포함)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 ② 퇴직급여충당금
- ③ 평가급 및 성과금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 ④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5)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⑥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 급여 증가액
 -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 ※ '23.12.31.이후 소변경을 통하여 '24년부터의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소송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
- ⑦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⑧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⑩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추진된 기관통합에 따른 임금 조정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1% 범위 내, 1회에 한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1회에 한함)
- ③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4 대행업무수당
- ⑤ 코로나19 대응 화장인력 야근수당
- 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 ② 설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준 내 지급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
- ® 직무중심인사관리 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2단계, 3단계 도입완료 기관은 단계별 1회에 한해 총인건비의 0.1%p 부여. 다만, 평균임금 80% 미만 기관은 0.2%p 부여)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보수체계 조정 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취지를 고려하여 연도별 인상률과 인건비 절감분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되, 각종 법정수당에 연계된 기본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통합 전 기관 간 임금격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 1% 범위 내, 1회에 한해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인정
 - ※ 재정여건상 일시 증액이 어려운 경우, 연도별 분할 인상 가능(예시: 3년간 매년 0.3% 등)
- 202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4년 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 직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¹⁾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예시 1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인상률 2.5%와 자연증기분(호봉승급분) 1.4%를 제시할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부득이한 경우 총 인상률 3.9% 범위 내에서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율 간 조정 가능
- ☞ (예) 승급인력 증가로 자연증가분이 1.5% 인상될 경우 정책인상률 2.4%로 조정 가능
- 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 편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총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설립자치단체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를 참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여 공사·공단에 통보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¹⁾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 내에 별도로 계상 가능

예시 2

- √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이 100명인 경우 현원 100명은 인건비로 편성, 5명 신규채용 시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그 외 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5명일 경우 인건비는 95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봉급예비비로 편성)
-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105명일 경우 인건비는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 당해연도 봉급예비비로 편성한 5명 인건비는 차년도 편성 시 정상적인 인건비로 편성
- 아래 2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아래 2

- 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 이내), ②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③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④ 전환형 시간 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정규직 전환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편성

예시 3

| <보수·수당 규정 중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 | | | |
|-------------------------|-------|---------|-----------------|--|
| 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일 | |
| 급식비 | | 월 14만원 | 매월 급여일 | |
| 복지포인트 | 공무직 등 | 연 50만원 | 사장이 정하는 날 | |
| 명절상여금 | | 연 100만원 | 설날·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 |

- 사장(이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및 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평가 등급에 의한 「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임원급(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정책인상률 적용
- 연봉제 직원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여 가산비율 적용
- 호봉제 직원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 으로 보수표에 적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1-7 수당 등

-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인건비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 수당신설은 기본급 반영이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립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
 -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립지방자치 단체와 협의 결정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법정수당은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할 수 없음(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계산의 편의 및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고정OT·포괄임금제 지급방식 금지)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휴가 또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1-8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 가능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정년을 상향 조정(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P/G도입 여부를 설립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

1-9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 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공사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 하는 경우로서 사장(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1-10 비정규직 보수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 예산 집행 시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적정 임금인상률 결정 반영
- 비정규직 고용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및 법정수당은 비정 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퇴직금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1 일반 집행지침

- 적용대상 경비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집행 시 유의사항
 -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름 >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

-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
-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함
-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함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 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장(관리자)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음
 -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2-2 경비별 편성기준 및 지급방법

(1) 직책급업무추진비

공무원의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 기준액

(단위: 천원)

| 구 분 | 월 액 | 연 액 |
|--------|-----|-------|
| ○ 1급 | | |
| ·기 관 장 | 750 | 9,000 |
| •보조기관 | 700 | 8,400 |
| ○ 2~3급 | | |
| ·기 관 장 | 650 | 7,800 |
| •보조기관 | 600 | 7,200 |
| ○ 4급 | | |
| ·기 관 장 | 400 | 4,800 |
| ·보조기관 | 350 | 4,200 |
| ○ 5급 | | |
| ·시도과장 | 350 | 4,200 |
| ·기 관 장 | 150 | 1,800 |
| ·보조기관 | 100 | 1,200 |
| ○ 6급 | | |
| ·기 관 장 | 100 | 1,200 |
| ·보조기관 | 50 | 600 |

[※] 단, 지방직영기업의 3급 이상 기관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 집행기준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음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

• 편성기준

< 직영기업 관리자 >

- 특·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 구 분 | 기 준 액(연액) | 비 고 |
|---------|-----------|-----|
| 서 울 | 25,800천원 | |
| 부 산 | 23,400 " | |
| 기타광역시 | 22,000 " | |
| 제주특별자치도 | 22,000 " | |

- 특·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지방직영 기업 관리자(시·도, 시·군의 본청에 설치된 경우)
 - ▶ 일반회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경우, 중복편성할 수 없음. 단, 관리자 직책의 일반회계 기준액 범위에서 일반회계와 적정비율로 나누어 편성할 수 있음

< 직영기업소속 사업소 >

-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도, 시·군의 공기업특별회계소속 사업소장(4, 5급)
 - ▶ 일반회계의 사업소장(시·도, 시·군·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준용
 - ※ 5급인 사업소장도 4급과 동일 적용
 - ※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소장은 중복해서 편성 할 수 없음(분할편성은 가능)

• 집행기준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 ▶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함

- ▶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본부장,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부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본부 또는 실·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지방의원에 대한 축·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직영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 금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부 소속구성원에게도 집행 가능
-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금지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 편성기준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 경비
- 시·도, 시·군 및 출장소·사업소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2024.10.1. 기준) ※ 단, 관리자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

| 과 인원수 | 5인 이하 | 10인 이하 | 15인 이하 | 20인 이하 | 25인 이하 | 30인 이하 | 비고 |
|-------------|----------|-----------|-----------|-----------|-----------|-----------|----------------------------------|
| 월 지급액 범위 | 100천원 | 175천원 | 250천원 | 300천원 | 350천원 | 400천원 |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 5천원 추가 |

• 집행기준

- 부서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수 있음
- 부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추가 집행 가능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적용대상

- 특별시·광역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본부 및 사업소
- 시·도, 시·군·구의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조직(실·과 사업소)
 - ※ 공기업특별회계가 시·도, 시·군의 본청 실·과에 설치되어 일반회계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 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이 일반회계의 정원가신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별도계상 불가
- 편성기준(1인당 연간금액)
 -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소속공무원의 정원수(2024.10.1.)를 기준으로 편성
 - ※ 단, 관리자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
 - < 특·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도, 시·군·자치구의 본청 >

| ろ | 원 | 100명까지 | 101~300명 | 301~600명 | 601~800명 | 801명 이상 |
|-----|-------|---------|----------|----------|----------|---------|
| 1인당 | 강 기준액 | 80,000원 | 60,000원 | 45,000원 | 30,000원 | 15,000원 |

< 자치구가 아닌 구,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시·군의 사업소 >

| 정 원 | 100명까지 | 101~400명 | 401~1,000명 | 1,001명 이상 |
|---------|---------|----------|------------|-----------|
| 1인당 기준액 | 40,000원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 집행기준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편성

• 편성기준

<특별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사업본부 >

| 구 분 | 기 준 액 | 月 | 卫 |
|----------|-----------|---|---|
| 서 울 | 130,000천원 | | |
| 부 산 | 80,000천원 | | |
| 대구·인천 | 70,000천원 | | |
| 광주·대전·울산 | 60,000천원 | | |
| 제주특별자치도 | 60,000천원 | | |

※ 상기기준을 준수하되 신규시설확장사업,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유사 조직에 계상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 가능(직급· 회계 간 형평성 고려)

<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사업소 및 기타 지방직영기업 >

투자사업비의 규모를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기준을준수하여 편성

| 구 분 | 기 준 액 | 刊 | 고 |
|-----------------------|-----------------|---|---|
| 100억원 미만 | 3,000천원 | | |
|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4,000천원~5,000천원 | | |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10,000천원 | | |
| 1,0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 20,000천원 | | |
| 3,000억원 이상 | 30,000천원 | | |

• 집행기준

- 축·조의금 집행 및 월정액 지급 금지

(6) 특정업무경비

| 구 분 | 대 상 | 지급액(1인/월) |
|-----------------------|--|-------------------------------|
| ① 공기업종사 공무원 | 자치단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종사 5급 이하 공무원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범위, 지급액(8만원 한도) 조정 가능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사 청원경찰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5급 이하 실무담당공무원(사업소장, 과장 제외) | 80,000원 30,000원 80,000원 |
| ② 요금과징 담당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시군본청, 구청의 검침원 등 요금과징업무실무담당공무원(5급 이하 공무원) | 80,000원 |
| ③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 누수탐사, 누수수리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공무원) | 80,000원 |
| ④ 수도계량기 관리담당공무원 | 계량기수급, 수선, 교체업무 직접 담당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 80,000원 |
| ⑤ 경영평가 실무 담당공무원 |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 담당공무원(5급 이하 공무원) | 80,000원 |
| ⑥ 예산·결산·계약 업무담당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본청 예산·결산·계약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공무원)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계약업무 직접담당공무원 | 80,000원 80,000원 |
| ⑦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공무원단체업무 직접 담당공무원 | 80,000원 |

- 주) 1. 특정업무경비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 병급 불가. 단,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와 병급 지급 가능
 - 2. ①항의 공기업종사공무원 특수업무경비와 ②·③·④·⑤·⑥·⑦항의 특정업무경비는 병급 가능
 - ※②·③·④·⑤·⑥·⑦항의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의 겸직시 상호 병급이 불가하며, 동일업무를 분장 수행 하더라도 주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만 지급 가능
 - 3. 요금과징업무에 대해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불가
 - 4. 상하수도사업본부 감사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감사담당공무원 지급기준적용 가능
 - 5.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②, ③, ④항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 가능
 - 6.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성격의 활동지원비(월 8만원 범위내 지급 가능)는 307-13(민간 검침원 활동 지원비) 과목에 편성
 - 7.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가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가능
 - 8.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병급 지급 불가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의 정의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 제25조제4항)

• 예산편성 기준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2024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손금인정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한도 금액은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1천 2백만원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 예산편성은 예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집행 한도는 당해 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예산서상 매출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
- 단, 지방공단은 법인특성을 고려하여 손금한도 산정 시 위탁대행사업에따른 매출액은 자치단체로 납부한 실 수입액을 적용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

-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행사 등 잡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함 (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

• 집행기준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중 클린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로 집행
 - ※ 신용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는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적용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를 공용카드로 발급받아 운영
 -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으로 법인별로 별도의 일반카드 발급은 가능
-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

의무적 제한 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격려금·축의· 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
 -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
 -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함.
 -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함.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4 관서업무비

• 관서업무비의 정의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예산편성 기준

기관 및 부서운영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로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업무비」에 각각 편성

①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편성
- 2024년도 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정 원 | 100명까지 | 101~300명 | 301~600명 | 601~800명 | 801명 이상 |
|-----------|---------|----------|----------|----------|---------|
| 1인당 연간기준액 | 80,000원 | 60,000원 | 45,000원 | 30,000원 | 15,000원 |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② 부서업무비

-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
- 2024년도 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 과 | 인원수 | 5인 이하 | 10인 이하 | 15인 이하 | 20인 이하 | 25인 이하 | 30인 이하 | 비고 |
|---|-----------|----------|-----------|-----------|-----------|-----------|-----------|----------------------------------|
| 월 | 지급액 범위 | 100천원 | 175천원 | 250천원 | 300천원 | 350천원 | 400천원 |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 5천원 추가 |

-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 ※ 직영기업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준하여 집행

2-5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의 정의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예산편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공통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운영
 - ▶ (공통필수항목) 예산·계약·감사·노사·안전보건관리 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 (선택항목) 선택항목은 기관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 80,000원 이내에서 지출대상을 자율 결정
 -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 '25년은 제도시행 첫해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이 없으므로, '24년의 결산· 보상·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선택항목으로 봄
 - ※ 산출예시(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이 2,000만원, '22~'24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이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00만원(2,000만원 × (1+(0.1×1/2))
 - 개별 공기업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자체 내부기준으로 규정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지방공사·공단

3-1 경영평가 평가급

☑ 기본원칙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평가급 과목에 편성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한 경영평가결과(가~마 등급)임
- 평가급 예산은 전년도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편성하되, 당해연도 경영평가 결과 및 지급률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가능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함 ※ 연봉월액(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4년도 기준으로 산정
- 근무실적 평가 및 평가급 지급에 관하여 기관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급의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 평가급을 균등 배분 또는 균등 재배분하여 지급한 기관은 다음연도 평가급 예산편성 금지

☑ 지급대상

- (기관장) 사장, 이사장
- (임원) 상임이사,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 (직원) 정규직원(임금피크제 활용 신규채용직원 포함)
 - ※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직원에 대해 기관 경영평가에의 관련성, 경영평가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여부 결정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2025.12월 限)

<입사·퇴사자에 대한 지급>

[입사자]

- **입사연도의 경영실적 평가 완료 후**에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 2025년도 입사자는 2024년도 경영실적과 무관하므로, 2025년도 평가급 지급대상이 아님

【퇴사자】

- 기관장 및 임원급
 - 퇴임연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퇴임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 (예시) 2025년도 6월말 퇴임할 경우, 202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2026년 또는 2027년에 지급

○ 직위

- 2025년 퇴사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 ①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② 2024년 근무기간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 2025년 근무기간은 2026년(202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일괄 지급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 ① **2024년도 경영평가**(2023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024.1.1.~ 2025.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② 2025년도 경영평가(2024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024.1.1.~ 2025.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③ 2024년도 근무기간은 2025년 경영평가(2024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 **2025년 근무기간**은 **2026년 경영평가**(2025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지급률

| 평가등급 | 기관장 | 임원(급) | 직 원 |
|------|-------------------------|-------------------------|----------|
| 가 | 400~301% | 350~251% | 200~180% |
| 나 | 300~201% | 250~181% | 150~131% |
| 다 | 200~100% | 180~100% | 100~80% |
| 라 | 0% (익년도 연봉 동결) | 0% (익년도 연봉 동결) | 50~30% |
| 마 |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 0% |

• 지급률 결정

- 지급률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률**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대상별 지급기준·지급방법

- (기관장)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의 지급률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사장평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률을 결정
- (임원)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지급률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차등 지급
 - ※ 다만, 상임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경영평가 지급률로 지급
- (직원)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2016.5월 도입 권고안 기준)> ■■

- 지급액: 연봉월액 ×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 / 근무월수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5.)」에 따라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한 경우, 평가급 지급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평가급 재원 규모가 종전과 동일)
- 성과연봉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던 기본급 일부, 비속인적수당 등을 내부평가급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연봉 총액 산정 가능
 - ※ 내부평가급은 2016.5월 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기관이 성과연봉 비중을 15(공단)~20(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급의 일부, 비속인적 수당 등을 전환하여 내부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액

- (지급총액)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평가급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결정
 - ※ 총액산정 시 일할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차등 등급) 기관장은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등급별 인원 배분)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일할계산) 퇴사자 등은 기준연도의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제외

- 제외기관
 - 신설기관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받은 기관

• 제외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②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③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 ④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 제외기간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평가급 산정 시 제외
 -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2 자체 평가급

✓ 지급대상 및 예산편성

- (지급대상) 직원에 한하여 지급(기관장, 임원급은 대상이 아님)
- (예산편성) 지급대상자의 100% 지급률 기준으로 편성

☑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방법

- (지급시기)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으므로 기관 실정에 맞게 해당연도 중에 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급기준·방법) 기본원칙, 지급기준·지급방법(지급총액, 차등 등급, 등급별 인원 배분, 일할계산 등),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 평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
 - 다만, 신설기관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자체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음

3-3 예산성과금 운영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
 - 2024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에 계상
 -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한 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 연도 중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하거나, 절약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급대상

-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 도입,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 지방공사의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은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당기순이익 10% 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지방공단이 업무개선 또는 신규 수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 수입목표를초과 달성한 경우

• 지급기준

- 신공법 또는 신경영기법 도입, 신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1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 내(1인당 100만원 이내)
- 수입목표 초과분의 10%범위 내 지급(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 제외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주택·토지개발 사업)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 2024년도 적자가 발생한 기관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2023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

• 제외대상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방법

 관련 업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급하고,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절차 및 시기

- 각 기관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운영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 1/2 이상은 외부민간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 사업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과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으로 위촉
- 성과금 지급청구,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예산성과금은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급
- 협의과정에서 지급사유가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지급성격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장이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급시기

- 주요사업 예산절감, 수입목표 초과 달성 : 당해 연도 또는 익년도 3월말 한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산승인 익월 중

• 후속조치

-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경비

지방공사·공단

4-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
- 경상경비는 2024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되,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편성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
 - 절감된 예산은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 편성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 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
-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4-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함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복리 후생비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함
- 복리후생비는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
- 복리후생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본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별 준수사항>

| 일반원칙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
|-----------------|--|
| 교육비 및 학자금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예산으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및 대출을 포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지원 여부를 확인 하여 지원하고, 등록금 지급 후에는 5 영업일 이내 지원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정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 선택적 복지비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건강검진비 포함)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지원 예산편성 시, 틀니·보철·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직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 등을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활용한다.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주택자금 및 융자금 퇴직급여

-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대출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무이자 융자 금지)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 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 시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순직의 경우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과 장제비(葬祭費)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안 된다.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부부동반 해외 여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경조사비 및 상품권 등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 금지(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 금지)
 - ※ 다만,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기관 복리후생비 항목 중 명절 휴가비·경로효친비가 있는 기관은 해당 항목에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구매 가능, 명절휴가비·경로효친비 항목 미운영기관은 기념품비에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를 구매하거나 선택적복지 포인트에서 일정액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



사업비

지방공사・공단

- 기관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련조례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반영하되,
 - 다만,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함
- 타당성 검토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 당성 검토 재실시
 -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타당성 검토후 4년 이상 지연·보류 등
 - ※ 사업비가 30% 미만 증가하더라도 당초 사업비가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 미만에서 타당성 검토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검토 실시
-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향후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폐지 또는 시기를 재조정
- 자체재원이 아닌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공사채 등 외부차입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은 재원조달이 명확화 되는 시점에서 예산 반영

-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
- 자회사 설립을 비롯한 타법인 출자 시에는 업무의 효율성, 아웃소싱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추가 출자의 경우도 같음)야 함
- 당해 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과 출자사업의 성과가 당해 공사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 금지
 - 사업성과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PF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맺어 대행 사업으로 추진
- 출자한 타 법인에 대하여 출자 이외에 채무보증행위 금지
- 사업 확정 후 예산 편성 시 법령에 근거 없거나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비로 편성 금지

6 예비비

지방직영기업

-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

지방공사・공단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7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 1인당 기금 누적액 | 출연율 기준 |
|-------------------------|-------------------|
| 500만원 이하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
|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
|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이하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
| 2,500만원 초과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이내 |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 이익(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8 기타

지방직영기업

-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 운영
 - 상하수도사업본부 등에서는 필요한 경우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를운영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관계법령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 홍보 관련 예산편성
 - 홍보물은 발간의 필요성 재검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 신문·방송·TV 등 광고는 기업 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일반운영비 과목에서의 보도사례금 집행 불가
 - 행사관련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되「행사운영비」,「행사관련 시설비」과목에 계상
- 전용금지 과목
 - 인건비·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불가
- 당겨사용
 - 지방직영기업에서는 「당겨사용」을 할 수 없음 ※ 당겨사용: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 부족이 생긴 경우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이에 충당·사용하는 것을 말함
- 수입금 마련 지출
 - 사업량(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예산계상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지방공기업법 제27조)

• 투자심사 강화

 투자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되, 사업별로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편성 후 미집행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채무상화

- 상환시기가 도래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연도내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을 최대한 경감조치
- 상환원금은 자본적 지출의 비유동부채상환금에, 지급이자는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 과목에 각각 계상

• 금융비용 원가산입

- 공영개발사업(도시개발공사 포함)에 있어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건설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 중 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에 계상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지급이자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수익비용에서 제외, 재고 자산에 포함함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절차를 개선

• 출연금의 예산편성

- 출연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체 또는 민간에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
-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추진 지침에 따른 재정집행 적극 추진
-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재 및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적극 구매

지방공사 · 공단

- 대행사업비 처리
 -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의 수입은 공사·공단의 수입이 아니므로 업무를 대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
 -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 지방공단의 경우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잔액은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반납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반납하지 않은 재원은 임금피크제 절감재원 잔액으로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고, 다음 연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음)
 - ※ 공사·공단의 경우 과도한 미정산반환금으로 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연도 종료 전 가정산을 통해 미정산반환금 최소화 필요
 -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금에는 인건비, 각종경비, 대행수수료,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포함
 - ※ 지방공사의 경우 별도로 일정율의 대행사업 수수료를 대행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정산 시 대행사업 수수료는 공사의 수익으로 정리
-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각종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훈련비 필수 반영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이용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설개량(확충)비 최우선 계상
- 국내외여비 예산편성
 -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자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편성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해외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억제
 - ※ 실무연수, 선진지 시찰 등의 경우 임원은 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 후 시행

• 홍보 관련 예산편성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지양

• 재무건전성 강화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 중·단기 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공기업별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재무 위험상황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외부차입금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확실시 되는 금액 및 내시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차입 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차입목적 외로 사용은 금지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공유재산법령 등을 준용하여 마련
- 수익성 강화를 위한 수입원 확대 발굴, 사업 수행방식 개선 등 적극 강구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추진
- 투자사업의 균형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을 방지
- 지방공사·공단에서 자체노력을 통한 국·도비 확보 시 설립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관련 지방비 부담 등 재정적 지원 우선 조치

• 체크카드 사용기준 준수

- 체크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세출예산 과목인 민간이전(307목), 민간자본이전(402목)에 한하여 사용가능
- 행사운영비(201-03), 광고선전비(201-16), 판매촉진비(201-17), 행사관련 시설비(401-04)로 체크카드 사용 불가

• 전용금지 과목

평가급 예산은 불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금지 - 인건비·부채상환 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불가

• 위원회 참석수당

-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 사규, 내규 등에 명시
- 위워회 참석비
 - ▶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1일 1회)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설립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지출 가능
 -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 ▶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인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 단체의 사무까지 포함
 -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 지급 가능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해 심사할 경우 법령,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 ▶ 여비지급 시 자치단체에서의 여비지급과 이중 지급 금지
 - ▶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및 여비를 지급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 ▶ 당연직 이사, 기타 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 ▶ 회의 참석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

- 유급휴가 엄격 운영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함
 -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 할 의무가 없음(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적용)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
- 정직기간 중 인건비 전액 삭감
 -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퇴직금 감액 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
 - ①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②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추진 지침에 따른 재정집행 적극 추진
-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다.
-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를 추진한 기관은 전자 영수증 처리 가능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 사용의 범위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은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정원가산업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한다.

- 그 외에 급량비(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중 식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식비, 회의비 중 식비)로 지급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2. 발급 및 관리

- 자체 회계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관서의 직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직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3. 사용 및 지급절차

-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출납원이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 지급명령이 된 후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업무추진비 금액이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 지방공기업의 발생주의 예산과목 등에 대한 명확히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일선 예산 담당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주요 예산제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업무추진 혼란 예방
- ▶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운영



예산의 이용

1-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지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가능(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1-2 이용의 범위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품목별 예산체계에서는 "항"에 해당)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공기업의 장은 지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지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사장·이사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 간 세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확정
 - 이용요구: 사업부서는 세목단위로 지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지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및 이사회 승인사항) 지체 없이 확정

2 예산의 전용

2-1 관련규정

•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을 제외 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단위사업" 간 경비를 전용 가능(지방공기업법 제29조)

2-2 전용의 범위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품목별 예산 체계에서는 "세항"에 해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관리자 또는 사장(이사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단위 사업" 간 금액을 전용 가능
 - 전용범위: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관리자 또는 사장· 이사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 예산의 이·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함
- 예산의 전용은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 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 목은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용 제한 목 ■■

- ㅇ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관련 비목(101, 107, 109목), 차입금원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 상환(311목), 기타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상환(612목) ※ 인건비 관련 비목간 및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 ㅇ 다른 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203목)
- 예산부서는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세목까지 확정
 - 전용요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간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는 세목단위로 지출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지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지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3 예산의 조정

3-1 관련규정

•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단위사업" 및 "목"경비 전용 가능(지방공기업법 제29조)

3-2 조정의 범위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목(세목)" 간 예산을 관리자(부서의 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정이라 함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관리자, 광역자치단체는 부서의 장,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되 부서장의 범위는 내부규정으로 정함
 - 사업담당자는 예산조정 내역서를 작성, 관리자(부서의 장)가 결정하여조정 사용할 수 있음
- 조정절차: "전용절차"와 동일, 다만 조정의 승인권자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관리자,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되 부서장의 범위는 내부규정으로 정함
- 조정제한: 재조정 등은 최소화하고,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용
- 조정범위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목(세목)" 간 조정

| <포모벽 | 예사제도와 | 사업별예산제도 | 구주 | 비 교 > |
|------|-------|---------|----|-------|
| | | | | |

| 품목별 예산제도 | 사업별 예산제도 | 비고 |
|----------|----------|---------|
| 관 | 분야·부문 | |
| ठ्ठे | 정책사업 | 예산의 이용 |
| 세항 | 단위사업 | 예산의 전용 |
| | 세부사업 | 예산의 조정 |
| 목 | 목 | 예산의 조정* |
| 세목 | 세목 | 예산의 조정* |

^{*} 세부사업 내 (세)목간 조정



예산의 이체

4-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 가능(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4-2 이체의 범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이사회) 심의 대상이 아님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 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
 -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 사업"은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사업·단위사업"을 사용하고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사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 사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관리자 또는 사장·이사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 지방공기업의 기구 및 정원 등 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 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지출예산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지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고려사항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 예산의 | 이유 | . 저요. | スス | •이체 | 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 311 | ^ | - 1 / 11 | 1 1 | _ |

| 구 분 | 이 용 | 전 용 | 조 정 | 이 체 |
|------|-----------|-------------|----------|-------------|
| 적용범위 | "정책사업"간 | "단위사업"간 | "세부사업" 간 | 부서 간 |
| 요구권자 | 지방공기업의 장 | 부서의 장 | 사업담당 | 부서의 장 |
| 승인권자 | 지방의회(이사회) | 관리자(사장·이사장) | 관리자(부서장) | 관리자(사장·이사장) |

5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

5-1 관련규정

-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지방재정법 제46조)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2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법」제146조에 의한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은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으로써, 예산의 불성립에서 오는 행정의 마비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도 동 제도를 준용하여 운영함

5-3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기준

- 집행 시기:지방의회(이사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 집행 규모:전년도 예산에 준함(추경예산 포함)

5-4 대상경비

-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및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계속비 사업비
 - 시설의 현상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의무가 있는 경비
 - 「지방공기업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 **가. 인건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 나.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내 일반수용비·운영수당·급량비·임차료, 공공운영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다. 여 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 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 정원가산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마.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
- 바. 연금부담금 등 :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사. 계속비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 아.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기관·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5-5 집행절차

• 경비집행계획 수립

- 대상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 ▶ 실·국(과)별로 법정경비 지출계획 취합
 - ▶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경비여부를 판단 집행계획에 반영
- 당해 연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당해 연도 준예산액이 상호 비교될수 있도록 작성
 - ▶ 당해 연도 예산안, 당해 연도 준예산액은 그 산출근거를 표시

• 경비의 집행

-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의 경비는 예산배정과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

• 경비집행 결과처리

-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된 경비는 성립된 예산에 포함됨. 따라서 집행된 경비는 정상적으로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장부 등 정리

5-6 지방공기업 조치사항

- 법정경비의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이사회)에 제출 후 집행
- 집행기한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법정경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통하여 집행

< 20○○년도 ○○공기업 준예산 >

(단위: 천원)

| 714 | -J | -1 | ગાંગ | п | úП | 당해연도 여 | 계산안 | 당해연도 준 | 예산액 | 전년도 |
|-------|-----|-----|------|-----|---------|------------------------------|-------------|------------------------------|-------------|-------------|
| 구분 | 관 | 앙 | 세항 | 득 | 세목 | 산출기초 | 예산액 | 산출기초 | 예산액 | 예산액 |
| | | | 총 | 계 |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부서명 1 | 사업 | 예산 | | |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700 | 사 | 겁비용 | } |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710 | 영업 | 비용 | -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 711 | 원수 | - 및 취수비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 | 101 | 인건비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 | | 01 보수 | ○ 기본급 산출기초 000,000,000 | 000,000,000 | ○ 기본급 산출기초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 | | | | | | | | | | |
| | 자본 | 예산 | | |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200 | 자본 | 적 ス | 출 |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230 | 유형 | 자신 | 취득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 239 | 건설 | l중인자산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 | 401 | 시설비및부대비 |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 | | | | 01 시설비 | ○ 기본급 산출기초 000,000,000 | 000,000,000 | | 000,000,000 | 000,000,000 |
| 부서명 2 | | | | | | | | | | |
| | | | | | | | | | | |

6

예산의 이월제도

6-1 관련규정

• 매 사업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아래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지방공기업법 제30조)

6-2 이월의 종류

• 건설개량이월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 가능(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 제1호)
- 관리자는 예산에 정한 지방공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 즉 자본예산의 투자 사업비로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사용이 가능
- 건설개량이월은 사업예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차 건설개량비 이월은 할 수 없으나 사고이월은 가능

• 사고이월

-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회계연도로 이월 사용 가능(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제2호)
- 모든 지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은 즉 채무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사장·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출납정리기한인 익년도 1월 20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하고, 지방공기업에서는 사업 연도말(12.31)까지 물품검수, 준공검사 등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 시킴
- 12. 31.까지 채무 미확정된 금액(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검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사고이월된 경비는 재차 이월할 수 없음 사고이월이 확정된 경우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인정

• 계속비이월

-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4항)
-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
- 계속비는 매 사업연도(5년 이내)의 연간부담액 중 당해 사업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자(사장·이사장)가 그 금액을 계속비에 해당되는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월절차는 당초 계속비로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으며 이월이 확정된 경우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 예산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음
-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이사회)에 제출
- 계속사업 연도 말까지 지출을 마치지 못한 계속비 예산의 금액은 건설 개량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절차에 따라 다시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음
 - ▶ 연간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과 재원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 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 이월예산의 운영

- 「지방공기업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5항)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세목까지 확정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함

| < | 예산의 | 이월제도 | 구분 | > |
|---|-----|------|----|---|
|---|-----|------|----|---|

| 구 분 |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
| 이월단위 | 세목 단위까지 | 세목 단위 | 세목 단위 |
| 요구권자 | 관리자(부서의 장) | 관리자(부서의 장) | 관리자(사장·이사장) |
| 승인권자 |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 지방의회(이사회) |
| 요구시기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 확정시기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 기간연장 | 사고이월 가능 | 불가능 | 의회(이사회)의결 연장,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가능 |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세부사업" 또는 동일 "단위사업·세부사업" 내 "목(세목)"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경우 이월 가능. 다만, 지방 공기업의 실정에 따라 적용여부는 자체 결정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동일 "목" 내에서 "세목"의 조정이 가능하며 예산의 조정에 준하여 처리

<사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 상수도 공사」 이월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401) 10억원: 시설비(401-01) 8억원, 감리비(401-02) 2억원]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비(세목)가 부족할 경우 동일 목내 감리비(세목)에서 조정을 통해 예산 사용 가능



당기순손익 처리

7-1 관련규정

-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 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으며
 - 공영개발사업(주택·택지개발)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은 재해복구,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건설 사업에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일반 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1)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2)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3) 건설개량 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4)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함
- 5)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 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
-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수서에 따라 처리
 -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배당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7-2 당기 순손익의 처리

- 당기 순손익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수익>비용인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수익<비용인 경우에는 당기 순손실로 표현됨
 - 따라서 사업예산의 수익총계(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에서 비용 총계(영업비용+영업외비용+특별손실+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예정당기순 이익 또는 예정당기순손실로 볼 수 있음
-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해당 금액만큼 추가적 잉여재원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당해 잉여재원은 「지방공기업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먼저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납부하거나 전출할 수 있음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적립은 기업의 연속성과 공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로의 일방적인 전출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법령으로 그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당기 순손익은 사업의 수지를 예측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당기순이익의 적립(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
 - 당기 순손익의 실제 발생하는 것은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익년도 이므로 당해 회계연도 발생된 예정 당기 순손익은 당해 회계연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정확한 당기 순손익은 결산에 나타남)

사 례

ㅇ 사업예산에서 수입이 100억원, 지출이 90억원인 경우 순이익 처리

| 사업예산 | | | | 자본 예산 | | | |
|--------|-------|--------|------|-------|---|----|--------|
| 수익 | | 비용 | - | 수약 | 입 | 지출 | irthy. |
| 영업수익 등 | 100억원 | 영업비용 등 | 90억원 | | | | |
| 계 | 100억원 | 계 | 90억원 | | | | |

- 사업예산 총수입(100억)〉 총지출(90억)의 차액 10억은 "예정당기순이익"으로 보존재원으로 확보하여 자본예산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 "예정당기순이익"이 당해연도말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정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보전재원을 예산으로 계상할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현금 및 예금, 즉 순이월현금(예산이월액 제외, 미수금·미지급금 가감)이 있는지 확인 후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예산총칙 제11조에 의거 처분하는 용도와 금액을 밝혀서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이사회)을 받아야 하며,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함
- 손익계산상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손액 상당을 공제한 잔액만이 보전재원화됨

ㅇ 사업예산 수입이 100억원, 지출이 110억원인 경우 순손실 처리

| 사업예산 | | | | 자본예산 | | | |
|--------|-------|--------|-------|------|---|---|--------|
| 수의 |] | 비용 | op. | 수 | 입 | 지 | Ž Ž |
| 영업수익 등 | 100억원 | 영업비용 등 | 110억원 | | | | |
| 계 | 100억원 | 계 | 110억원 | | | | |

- 사업예산 총수입(100억) 〈총지출(110억)으로 차액 10억의 "예정당기순손실"발생
-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예정당기순손실" 10억원은 보존재원으로 부터 전입 받아 충당할 수 있음
- ※ 사업예산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영성과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는가 순손실이 발생되었는가에 따라 경영의 실적을 표시함. 사업예산의 예산과목(세항)체계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정 과목 체계와 일치하여 년도 말 결산서인 손익계산서와 직접연결 됨(예정손익계산서)
 - 영업이익(손실) = 영업수익-영업비용
- 당기총이익(손실) = 영업이익+영업외수익
- 경상이익(손실) = 당기총이익-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손실) = 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계상

8-1 관련규정

-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 ▶ 감가상각비
 - ▶ 자산감모비
 - ▶ 제품·상품의 매출워가
 - ▶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 ▶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 ▶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 ▶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 계상되는 손비
-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해당 항목이 현금 지출 항목과는 달리 계산상 어려움이 크고 특수한 항목은 발생자체를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재해에 따른 자산 소멸 등), 이를 감안하여 예정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결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 따라서 매년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감가상각비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금액을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함

8-2 감가상각비

- 예정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킬 예정 감가상각비는 대상 회계연도의 직전연도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당해 연도의 자본적 지출(취득)과 자본적 수입(처분)을 반영한 상각 기초금액에 각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감가상각비는 대부분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에 의존하므로 전산 시스템 수준에 따라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예정손익계산서 작성 시 직전년도 감가상각자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또한 계산상 어려움을 가중시킴
 -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 회계연도 전전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 다만, 대상 회계연도에 대규모 상각자산취득(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 포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7월 1일에 취득하였다고 가정하고
 6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반영
-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과 같은 의미임
 - 즉 감가상각비만큼 잉여재원이 발생하며 이는 보전재원으로 활용되어시설비 등에 재투자될 수 있음

사 례

 사업예산 수입이 100억원, 지출이 60억원이며, 30억원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처리방법

| | 예정손익계산서 | | | | | |
|--------|---------|---------------------|------|--|--|--|
| 수익 | | 비용 | | | | |
| 영업수익 등 | 100억원 | 영업비용 등 (감가상각 제외) | 60억원 | | | |
| | | 감가상각비 | 30억원 | | | |
| 계 | 100억원 | 계 | 90억원 | | | |

- 자금수지 : 수입(영업수익 등) 100억원 지출(감가상각 제외 영업비용) 60억원 = (+)40억원
-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예산에 계상된 감가상각비 30억원은 적립금, 보전 재원 등으로 충당되어 자본예산의 지출 부족분 등을 충당할 수 있음
- 예정손익계산서의 총수익(100억)〉 총비용(90억)으로 차액 10억은 "예정당기순이익"
- 사업예산 수입이 100억원, 지출이 80억원이며, 30억원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처리방법

| | 예정손익계산서 | | | | |
|--------|---------|---------------------|-------|--|--|
| 수익 | | 비용 | | | |
| 영업수익 등 | 100억원 | 영업비용 등 (감가상각 제외) | 80억원 | | |
| | | 감가상각비 | 30억원 | | |
| 계 | 100억원 | 계 | 110억원 | | |

- 자금수지 : 수입(영업수익 등) 100억원 지출(감가상각 제외 영업비용) 80억원 = (+)20억원
- 당해 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에 적자 발생이 예정되는 경영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지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함, 직영기업의 경우 타회계보조금(원가이하의 요금수준으로 인한 보조) 등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예정손익계산서의 총수익(100억)<총비용(110억)으로 차액 10억은 "예정당기순손실"
- ※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법정상각액을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하며, 적자은폐를 위한 법정상각액 이하 또는 일부만을 반영하여서는 아니됨

8-3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

-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의 성격
 -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는 현금지출이 수반되는 사업비가 자본예산에 편성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출되는 항목임
 - 즉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부분은 "자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또한 개발 사업은 수입액 전부를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당해 연도수입액 중 실현분(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에 따라 계산)만 수익으로 처리될수 있는 구조임
 - 개발사업의 사업예산 중 핵심항목인 용지 및 주택매출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는 현금 수수액과 일치할 수 없으며,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임
-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는 현년도의 예상 수익(용지 및 주택매출 수익)에 대응되는 판매원가로 산출
 - 따라서 당해 연도의 예상 매출수익을 먼저 계산한 후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산출하는 구조임
 - 예상 용지 및 주택매출 수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에 따라 계산된 예상 수익을 반영
 - 예상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에 따라 계산된, 예상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반영

사 례

○ 당기 공사비(시설비 등) 200억원,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250억원, 당해 사업의 추정원가율 90%, 일반관리비 등 5억원(외상거래는 없다고 가정)

| | 자본예산 | | | | | | |
|-----------------|-------|-----------------|-------|-----|-------|-------|-------|
| 수익 비용 | | | | 수입 | | 지출 | |
|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 250억원 | 용지 및 주택판매 원가 | 225억원 | 선수금 | 220억원 | 시설비 등 | 200억원 |
| | | 일반관리비 등 | 5억원 | | | | |
| 계 | 250억원 | 계 | 230억원 | 계 | 220억원 | 계 | 200억원 |

- 자금수지 : 수입(선수금) 220억원 지출(일반관리비 및 시설비 등) 205억원 = (+)15억원
- 용지 및 주택매출에 따른 예정당기순이익 = 250억원(수익)-225억원(원가) 5억원(일반 관리비 등) = 20억원
-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및 원가는 실제 수입 및 지출이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수익>원가인 경우 비현금수입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전재원으로 전출할 금액은 없고,수익<원가인 경우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자액 상당을 공제한 잔액만이 보전재원화 됨
 - ※ 자본예산은 예정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재무상태표 계정에 속하는 모든 거래를 전부 예산화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자본예산에는 현금지출을 필요로 하는 것만을 지출로 계상하고 그 지출재원 으로서 보전재원을 제외하고 현금수입이 예정되는 외부자금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자본예산의 적자편성은 불허(보전재원 충당부분은 제외)함

8-4 퇴직급여

○ 퇴직급여의 산출방법

- 예산편성 대상연도의 퇴직금 지급 예정액,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 예정액,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예정액을 사업예산의 "퇴직급여"로 반영
-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납부 예정액은 현금지출이 수반되는 항목이므로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보전재원의 처리

9-1 보전재원의 의의

- 보전재원은 공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으로 자본적 수입만으로 자본적 지출에 부족할 때 사용 가능한(충당해 주는) 유보재원을 의미
 - 감가상각비 등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비용에 의한 당해 연도 손익 계정 유보자금과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이에 해당

9-2 보전재원의 처리

- 당기 발생된 보전재원으로 당기의 자본예산 지출 및 당기 순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본예산 차손이 발생하며 이 경우 전기에서 이월된 보전재원에서 충당
 - 당기 발생된 보전재원으로 당기의 자본예산 지출 및 당기 순손실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자본예산 차익이 발생하며, 이 경우 당기 이월 보전재원에 가산됨
 - 당기에 자본예산 차손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회계 등의 자본보조를 늘리거나, 외부차입금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시키지 않는다면 전년도에 이월된 보전재원에서 충당
 - 현금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유보된 자금은 손익 계상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손액 상당을 공제한 잔액만을 보전재원으로 전환
- 당해 연도 예정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당해 연도 말에 이익잉여금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금액 중 예정 처분할 것으로(예산총칙 제11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은 공기업 내에 유보자금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예정처분 이므로 보전재원으로 충당할 때에는 반드시「지방공기업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 보전재원을 예산으로 계상할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현금 및 예금, 즉 순이월현금(예산이월에 상당하는 현금예금제외, 미수금·미지급금 가감)이 있는지 확인 후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예산총칙 제11조에 의거 처분하는 용도와 금액을 밝혀서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이사회)을 받아야 함
- 전년도말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 ≥ 유동부채"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의 순이익 및 내부유보자금은 보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동부채 〉유동자산"의 상태일 때에는 그 불량채무(유동부채 유동자산)의 해소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전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보전재원에서 제외되는 항목

- 전기 이월 보전재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후 직전년도까지 매년 발생한 이월
 재원의 누계액 이므로 이는 자본예산 차익의 누계액과 같은 개념임
 - 당기 자본예산 차익이 곧 자금의 잉여액(자금 증가액)을 의미하므로 전기 이월 보전재원은 매년 발생한 자금 잉여액의 누계액과 같고 이는 곧 전년도말 현금 및 예금과 같은 개념임
 - 다만, 전년도말 현금 및 예금 전부를 당기의 자본예산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월예산을 들 수 있음
 - 전년도말 현금 및 예금 중 전년도 결산상 이월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월예산의 집행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당기의 자본예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전재원에서 제외
 - 전년도말 예산결산상 미지급금(채무확정액-지출액) 만큼의 자금도 미지급금 상환에 쓰여야 하므로 당기의 자본예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전 재원에서 제외
 - 전년도말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예금은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하는데, 이역시 당기의 자본예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전재원에서 제외되어야 함
 - 따라서 매년도말의 보전재원 총액은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예금-이월예산액-확정미지급금-세입세출외현금"임
- 당해 연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한 미수금, 예산이월의 재원에 필요한 자금, 상시 일정량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 저장품 등은 공제하여 보전재원 산출
 - 전년도말 예산결산상 미수금의 당기 회수액은 그만큼 자금이 증가 하므로 보전재원으로 사용 가능
 - 당해 연도 수익 중 미수금(조사결정액-실제수납액)은 그 금액만큼 실제 자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보전재원 재원에서 제외

사 례

ㅇ 이월 보전재원의 증가 사례

| 사업예산 | | | | 자본예산 | | | |
|--------|-------|---------------------|-------|------|--|--------------|------|
| 수인 | | 비용 | | 수입 | | 지출 | |
| 영업수익 등 | 120억원 | 영업비용 등 (감가상각 제외) | 73억원 | | | 가동설비 자산 등 | 35억원 |
| | | 감가상각비 | 57억원 | | | | |
| 계 | 120억원 | 계 | 130억원 | | | 계 | 35억원 |

- 당기 사업수입은 120억원, 사업비용은 130억원이며, 사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57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자본적 수입은 없고 자본적 지출(가동설비자산)은 35억원인 경우
- 감가상각비 57억원은 자본예산의 지출재원(보전재원)으로 확보되어 사업예산의 "예정 당기순손실" 10억원과 자본예산의 가동설비자산 구입비 35억원을 보전재원에서 제하면, "예정자본예산차익" 12억원 발생 예상 ⇒ 당기순보전재원 12억원 발생 예상

ㅇ 이월 보전재원의 감소 사례

| 사업예산 | | | | 자본예산 | | | |
|--------|-------|---------------------|-------|------|--|--------------|------|
| 수익 | | 비용 | | 수입 | | 지출 | |
| 영업수익 등 | 120억원 | 영업비용 등 (감가상각 제외) | 94억원 | | | 가동설비 자산 등 | 35억원 |
| | | 감가상각비 | 36억원 | | | | |
| 계 | 120억원 | 계 | 130억원 | | | 계 | 35억원 |

- 당기 사업수입은 120억원, 사업비용은 130억원이며, 사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36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자본적 수입은 없고 자본적 지출(가동설비자산)은 35억원인 경우
- 감가상각비 36억원은 자본예산의 지출재원(보전재원)으로 확보되어 사업예산의 "예정 당기순손실" 10억원과 자본예산의 가동설비자산 구입비 35억원을 제하면, "예정 자본예산차손" 9억원 발생 예상 ⇒ 당기 보전재원 감소 9억원 발생 예상

사업별 예산제도



VI. 사업별 예산제도



1 지출예산 사업 구조화

1-1 기본 워칙

- 각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 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따라서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 구분 | 구조 |
|-----|-------------|---------|
| | | |
| | | 임무 (미션) |
| | 목적 | |
| | (조직별 임무, | 전략목표 |
| | 전략목표, 성과목표) | |
| | | 성과목표 |
| 예산서 | | |
| | | 정책사업 |
| | | |
| | 수단 | 단위사업 |
| | | |
| | | 세부사업 |
| | | |

• 지방공기업 사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항·세항 예산체계를 정책·단위·세부사업 체계로 구조화

(기존) 관 - 항 - 세항 -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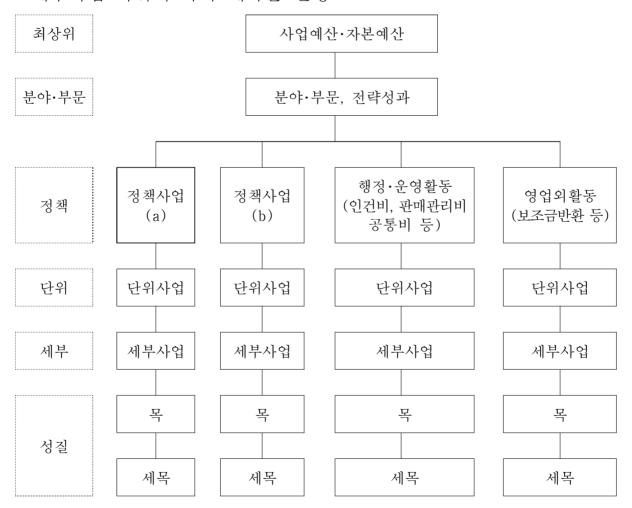
(개편)(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 목

1-2 사업 계층 구조

✓ 지출 예산 사업구조

지방공기업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예산·자본예산 및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지방공기업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외활동으로 구분
- 공기업 본연의 미션(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층화 구조(정책-단위-세부사업 순으로)를 통해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목과 세목을 설정



• 예산 수립 시 목표원가를 산출하고 실제원가와의 차이 분석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 필요

✓ 지출예산 사업 구조화 방법

- 사업예산·자본예산
 - 지방공기업법 제25조(예산의 내용)에 따라 수익·비용에 관한 수입· 지출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산·부채·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은 자본예산으로 편성

사업예산

■ 경상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은 사업단위 내 계정과목별로 편성하여 예정손익계산서 상 수익 비용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 관리를 하도록 함

자본예산

- 자본투자와 관련한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은 사업단위마다 계정별 예산을 편성하여 예정재무상태표 상 자산·부채·자본으로 반영하여 효율적 자원배분 및 자금관리를 하도록 함
- 분야 부문
 -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따라 정해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의 기준을 준용
 - * UN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 대부분의 공기업에 적용되는 분야·부문은 1가지(상하수도·수질 부문)이나, 일부 공사·공단의 경우 2가지 이상 적용 가능

|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
|-----|-----|--------------|-----|-----|------------|-----|-----|---------------------|
| 010 | | 일반공공행정(4) | 070 | | 환경(6) | 110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
| | 011 | 입법 및 선거관리 | | 071 | 상하수도·수질 | | 111 | 산업금융지원 |
| | 013 | 지방행정·재정지원 | | 072 | 폐기물 | | 112 | 산업기술지원 |
| | 014 | 재정•금융 | | 073 | 대기 | | 113 | 무역 및 투자유치 |
| | 016 | 일반행정 | | 074 | 자연 | | 114 | 산업진흥·고도화 |
| 020 | | 공공질서 및 안전(3) | | 075 | 해양 | | 115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023 | 경찰 | | 076 | 환경보호일반 | | 116 | 산업·중소기업 일반 |
| | 025 | 재난방재·민방위 | 080 | | 사회복지(8) | 120 | | 교통 및 물류(5) |
| | 026 | 소방 | | 081 | 기초생활보장 | | 121 | 도로 |
| 050 | | 교육(3) | | 082 | 취약계층지원 | | 123 | 도시철도 |
| | 051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084 | 보육·가족 및 여성 | | 124 | 해운·항만 |
| | 052 | 고등교육 | | 085 | 노인·청소년 | | 125 | 항공·공항 |
| | 053 | 평생·직업교육 | | 086 | 노동 | | 126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060 | | 문화 및 관광(5) | | 087 | 보훈 | 140 | | 국토 및 지역개발(3) |
| | 061 | 문화예술 | | 088 | 주택 | | 141 | 수자원 |
| | 062 | 관광 | | 089 | 사회복지 일반 | | 142 | 지역 및 도시 |
| | 063 | 체육 | 090 | | 보건(2) | | 143 | 산업단지 |
| | 064 | 문화재 | | 091 | 보건의료 | 150 | | 과학기술(3) |
| | 065 | 문화 및 관광일반 | | 093 | 식품의약안전 | | 151 | 기술개발 |
| | | | 100 | | 농림해양수산(3) | | 152 | 과학기술연구지원 |
| | | | | 101 | 농업·농촌 | | 153 | 과학기술일반 |
| | | | | 102 | 임업·산촌 | 160 | | 예비비(1) |
| 900 | | 기타 | | 103 | 해양수산·어촌 | | 161 | 예비비 |

• 정책사업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공기업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지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지방공기업의 핵심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예산사업단위로 구조화
- 정책 및 사업이 일관성을 갖는 다수 사업군을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함 (계층화된 사업구조 형성)
- 정책사업과 하부 단위사업은 조직 구조를 고려하여 단일 관리자에 의해 통괄되도록 구조화

<조직 구조에 따른 사업 단위 예시>

| 조직구조 | 사업 단위 |
|--------|-------|
| | |
| 실/국/본부 | 정책사업 |
| | |
| 과 | 단위사업 |
| | |
| 팀/계 | 세부사업 |

- 예비비는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편성

| 구분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사업명 | वी मी मी | 예비비 | 예비비 |

• 단위사업

정책사업의 하부 실행단위인 단위사업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산집행 활동의 특성을 가지면서 비용 산정의 기초단위이자 정책평가 및 분석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구성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집행 활동을
 고려하여 구조화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World Bank의 권고사항)
- 정책사업과 그에 속하는 단위사업/세부사업은 기능, 예산, 원가산정, 성과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관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

• 세부사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로서 사업주체(광역단체, 기초 단체), 재원구분(국고보조, 자체재원)을 고려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구분회계 도입기관은 세부사업을 고유사업, 정책사업, 대행·위탁사업을 기준으로 세분화
 - 고유사업 :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
 - · 정책사업 : 사업 추진 동기가 지방공기업의 자체판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 대행·위탁사업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 행정·운영활동

- 서비스와 관련한 영업 활성화, 고객관리비용, 조직 전반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어 사업 배부가 적합하지 않은 일반적 지원 및 관리비용(예, 회계, 기획, 총무 등)은 행정·운영활동으로 편성
- 한 직원이 두가지 이상 사업 수행 등으로 사업별 인건비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운영활동에 속한 단위사업으로 인건비 일괄 편성
- 인건비를 행정운영활동에 일괄 편성시 세부사업에서 인건비 내용을표시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구분 | | 사 | 업 | | |
|------|----------|-------|---------------|---------------|--|
| 정책사업 | 상수도 | : 운영 | 행정운 | 영활동 | |
| 단위사업 | 정수 | 관리 | 인력운영비 | | |
| 세부사업 | 정수시설 | 운영사업 | 인건운영비 (취수) | 인력운영비 (정수) | |
| 목 | 무기계약직 보수 | 수선유지비 | 보수 | 보수 | |

• 영업외활동

- 자금조달 이자 상환, 자치단체 이전거래, 타법인 출자 등이 개별사업과 관련성이 존재하면 해당 구조화된 사업에 편성하고, 사업별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없고 사업 배부하기 곤란하거나 배부에 따른 실익이 없는 이자 상환, 개발을 위한 타법인 출자활동, 자금이전 거래 등은 '영업외 활동'으로 편성함

☑ 지출예산 사업 구조화 주요 사항

- 구분회계 도입기관
 - 구분회계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단위로써
 그 목적이 성과평가 등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
 단위 연계

| 사업별 | 예산제도(• | 예산회계) | | 구분회계(재무회계 |]) | |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대분류 (공급유형) | 중분류 (사업유형) | 기초분류 | 비고 |
| | 주택 | 고유정책 위탁·대행 | | 주택 | 고유정책 위탁·대행 | |
| 분양 | 택지 | | 분양사업 | 택지 | | |
| | 산업단지 | | | 산업단지 | | |
| | 기타 | | | 기타 | | |
| | 공공임대 | | | 공공임대 | | |
| റിപ്പി | 국민임대 | | 이리카카어 | 국민임대 | | |
| 임대 | 영구임대 | | 임대사업 | 영구임대 | | |
| | 기타임대 | | | 기타임대 | | |
| | 1호선 | | | 1호선 | | |
| 운송 | 2호선 | | 운송사업 | 2호선 | | |
| | ••• | | | 공동유지관리사업 | | |
| | 도시재생 | | | 도시재생 | | |
| | 관광 | | | 관광 | | |
| | 철도건설 | | | 철도건설 | | |
| 기타 | 부대 | | 기타사업* | 부대 | | |
| 714 | 기타 | | / 기 너 / 기 남* | 기타 | |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도시재생, 관광 등 사업은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류 |
| 디 | 행 | | 대행사업 | ••• | | |

[※]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공통비는 별도의 단위사업 편성 가능

<예시>

교통공사에서 $1\sim5$ 호선까지 수선유지 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는 경우, 호선별로 배부하지 않고 공통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

| 구분 | 사업 | | | | | |
|------|---------|---------|-----|----------|--|--|
| 정책사업 | 운송사업 | | | | | |
| 단위사업 | 1호선 | 2호선 | ••• | 공통유지관리사업 | | |
| 세부사업 | 차량 유지관리 | 차량 유지관리 | ••• | 시설유지관리 | | |

• 재무회계와의 연계

- 현행 품목별예 산제도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연계되는 구조에서,
 사업단위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예산편성 과목과 재무회계 과목이 연결되지 않아 예정재무제표 작성 및 재무회계 결산에 어려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사업 구조화 시 현행 품목별 예산과목과 재무회계 과목 연계를고려

| < 혀 해 | 품목별예산제도 | 과목과 | 재무회계 | 과목 | 여계> |
|-------|-----------|-----|--------------|----|--------|
| 11.0 | ㅁㅋㄹㅋ!!/씨ㅗ | -1 | 711 1 24 711 | 7 | 1'/71' |

| 품목별 예4 | 난회계 과목 | 재무회 | 계 과목 |
|--------|----------|------|----------|
| 항 세항 | | 중분류 | 공시과목 |
| 영업비용 | 원수 및 취수비 | 영업비용 | 원수 및 취수비 |
| 정수비 | | | 정수비 |
| 배·급수비 | | | 배·급수비 |
| | 관거비 | | 관거비 |
| 펌프장비 | | | 펌프장비 |
| : | : | : | : |

• 위탁·대행사업 위주의 공단 사업 구조화

- 위탁/대행사업만을 수행하는 소규모공단은 기관의 판단 하에 정책 사업과 단위사업을 위탁/대행사업으로 단일 편성
- 다만 위탁운영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곳의 과(예: 공원녹지과, 주차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경우 주무부서 기준으로 세부사업단위 설정

| 구분 | 사업 | | | | |
|------|----------|--------|--|--|--|
| 정책사업 | | 행정운영활동 | | | |
| 단위사업 | | 인력운영비 | | | |
| 세부사업 | 주차장 위탁운영 | 보수 | | | |



2 지방공기업 유형별 사업 구조화 예시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 구조화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 해당 예시는 재무회계 연계, 구분회계 단위, 조직구조, 업종별 주요사업이 고려된 것임

1 상수도 직영기업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사업예산 | | | | |
| | 상하수도 • | 수질/수자원/•• | • | |
| | | 상수도사업 : | (참고) 지방공 | 강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당연 적용 사업 |
| | | | 원수및취수 관 | 리 : (참고)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취수장 운영/위탁운영 |
| | | | | ○○취수장 수선유지 |
| | | | | ○○원수 구입 |
| | | | | ○○취도수관 수선유지 |
| | | | 정수생산 관리 |] : (참고)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정수장 운영/위탁운영 |
| | | | | ○○정수장 수선유지 ○○지수 기계 |
| | | | 에 그스 키키 | ○○정수 구입 · (공공) 기스트기의 점심까요요 기노병 세기 중기 |
| | | | 배·급수 관리 | : (참고)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위탁운영 ○○배수지 및 가압장 수선유지 |
| | | | | ○○ ○○ ◇ ○○ ◇ ・ ○○ ◇ ・ ・ |
| | | | | ○○급수관/계량기 수선유지 |
| | | | 글수고사 과근 | ○○ᆸ 전/세정기 1전 시 : (참고)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신설공사 |
| | | | | ○○개조공사 |
| | | ○○정책사업 |] | |
| | | | ○○단위사 ⁹ | 어 범 |
| | | | | ○○세부사업 |
| | | 행정운영활동 | - : (참고) 조 | 직의 전반적 관리 목적을 위한 사업들 |
| | | | 일반행정운역 | 경 관리 |
| | | | | ○○상수도 행정운영 |
| | | | | ○○상수도 행정운영자산 수선유지 |
| | | | 징수및수용> | |
| | | | | ○○검침및요금고지 관리/위탁관리 |
| | | | 인건비 | |
| | | | | 인건비 (원수및취수) |
| | | | | 인건비 (정수) |
| | | | | 인건비 (배·급수) |
| | | | | 인건비 (행정운영)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1 4 | - 114 | 영업외활동 | | " ! ! П |
| | | | 지급이자 관 | l-리 |
| | | | | ○○지방채 이자비용 |
|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기타영업의: | |
| | | | | ○○사업예산 보조금반환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 | | 예비비 | <u> </u>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자본예산 | | | | |
| | 상하수도. | 수질/수자원/•• | • | |
| | | 상수도사업 | | |
| | | | 원수및취수 | 관리 |
| | | | | ○○취수장 설비 교체 (기계장치) |
| | | | | ○○취수장 증설 토목공사 (구축물) |
| | | | | ○○취도수관 설치 공사(구축물) |
| | | | 정수생산 관 | <u></u> |
| | | | | ○○정수장 토목공사 (구축물) |
| | | | | ○○정수장 건축공사 (건물) |
| | | | | ○○정수장 기계공사 (기계장치) |
| | | | 배·급수 관 | 리 |
| | | | | ○○배수지 토목공사 (구축물) |
| | | | | ○○가압장 펌프 교체 (기계장치) |
| | | | | ○○배수관 개선 공사 (구축물) |
| | | ○○정책사업 | | |
| | | | ○○단위사' | |
| | | -2.24.22.2 | | ○○세부사업 |
| | | 행정운영활동 | | ا ا ا |
| | | | 일반행정운 | |
| | | | | ○○상수도 행정사무실 리모델링 (건물) |
| | | | |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 (공기구비품) |
| | | 케므치드 | | ○○프로그램 구입 (소프트웨어) |
| | | 재무활동 | ગોમોનો ≀ાં∻ | 1. |
| | | | 지방채 상횐 | |
| | | | 차입금 상환 | │○○지방채 원금상환 L |
| | | | ^F급급 '상본 | <u>†</u> │○○차입금 원금상환 |
| | | | 보조금 반환 | |
| | | | <u>포</u> 그ㅁ 빈원 | r ○○자본예산 보조금반환 |
| | | | 일반회계 전 | |
| | | | ㄹ근퍼계 ① | ^{1 월 더} ○○전출금 지급 |
| | | | 기타자본적 | |
| | | | / G / C T / | ○○기타자본적 지출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u> </u> | | I | 9 1 1 |

2 하수도 직영기업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사업예산 | | | | |
| | 상하수도 | ·수질/••• | | |
| | | 히수도사업: | (참고) 지방공 | ·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당연 적용 사업 |
| | | | 하수관거 관리 | : (참고) 하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하수관거 운영/위탁운영 |
| | | | | ○○하수관거 수선유지 |
| | | | 펌프장 관리 : | (참고) 하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배수펌프장 운영/위탁운영 |
| | | | | ○○배수펌프장 수선유지 |
| | | | 하수처리장 관 | 리 : (참고) 하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하수처리장 운영/위탁운영 |
| | | | | ○○하수처리장 수선유지 |
| | | | 분뇨처리장 관 | 리 : (참고) 하수도사업 영업비용의 기능별 예산 편성 |
| | | | | ○○분뇨처리장 운영/위탁운영 |
| | | | | ○○분뇨처리장 수선유지 |
| | | ○○정책사업 | | |
| | | | ○○단위사업 | |
| | | | | ○○세부사업 |
| | | 행정운영활동 | - : (참고) 조 | 직의 전반적 관리 목적을 위한 사업들 |
| | | | 일반행정운영 | 관리 |
| | | | | ○○하수도 행정운영 |
| | | | | ○○하수도 행정운영자산 수선유지 |
| | | | 인건비 | |
| | | | | 인건비 (관거) |
| | | | | 인건비 (펌프장) |
| | | | | 인건비 (하수처리장) |
| | | | | 인건비 (분뇨처리장) |
| | | | | 인건비 (행정운영) |
| | | 영업외활동 | | |
| | | | 지급이자 관 | 리 |
| | | | | ○○지방채 이자비용 |
|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 ○○BTL미지급금 이자비용 |
| | | | 기타영업외횔 | 농동 관리 |
| | | | | ○○사업예산 보조금반환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자본예산 | | | | |
| | 상하수도. | 수질/••• | | |
| | | 하수도사업 | | |
| | | | 하수관거 관 | 리 |
| | | | | ○○하수관거 정비 (구축물) |
| | | | 펌프장 관리 | |
| | | | |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 (기계장치) |
| | | | 하수처리장 | |
| | | | | ○○하수처리장 증설 토목공사 (구축물) |
| | | | | ○○하수처리장 증설 건축공사 (건물) |
| | | | | ○○하수처리장 증설 기계공사 (기계장치) |
| | | | 분뇨처리장 | |
| | | | | ○○분뇨처리장 건축공사 (건물) |
| | | | | ○○분뇨처리장 기계공사 (기계장치) |
| | | ○○정책사업 | | |
| | | | ○○단위사업 | |
| | | 레기스서컨드 | | ○○세부사업 |
| | | 행정운영활동 | | 1 귀기 |
| | | | 일반행정운영 | ○○하수도 행정사무실 리모델링 (건물) |
| | | | | ○○하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 (공기구비품) |
| | | | | ○○파무고 %%까무자런 T 및 (6기 T 미 점) ○○프로그램 구입 (소프트웨어) |
| | | 재무활동 | | |
| | | /개 현 0 | 지방채 상환 | |
| | | | 10/11 0 12 | ○○지방채 원금상환 |
| | | | 차입금 상환 | |
| | | | , , , , , , , | ○○차입금 원금상환 |
| | | | BTL미지급금 | |
| | | | , , , , , | ○○BTL미지급금 시설임대료 상환 |
| | | | 보조금 반환 | |
| | | | | ○○자본예산 보조금반환 |
| | | | 일반회계 전형 | 출금 |
| | | | | ○○전출금 지급 |
| | | | 기타자본적지 | 출 |
| | | | | ○○기타자본적 지출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3 공영개발 직영기업

| 十문 - | 문야무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무사업 | |
|------|------|-----------------|--------------------------------------|-----------------------------|--|
| 사업예산 | | | | | |
| | 지역및도 | 시/산업단지/주택/••• | | | |
| | | 토지개발 및 | 주택분양사업 | : (참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 |
| | | 당연 적용 사 | 전용 사업, 주거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목적 등 | | |
| | | | 주택판매 관리 | | |
| | | | | ○○주택 판매관리 | |
| | | | | ○○주택 수선유지 | |
| | | | 택지판매 관 | , | |
| | | | | ○○택지 판매관리 | |
| | | | | ○○택지 수선유지 | |
| | | | 산업단지판마 | | |
| | | | | ○○산업단지 판매관리 | |
| | | | | ○○산업단지 수선유지 | |
| | | | 기타용지등핀 | | |
| | | | | ○○기타용지등 판매관리 | |
| | | _ 1 _ 1 _ 7 . 2 | | ○○기타용지등 수선유지 | |
| | | | 임대 관리 : (참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당연 | | |
| | | 식용 사업, 7 | 주거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목적 등 | | |
| | | | 공공임대 관i | ○○ 공공임대 관리 | |
| | | | 국민임대 관i | · · · | |
| | | | 그 한 년 대 전 1 | ○○ 국민임대 관리 | |
| | | | 영구임대 관i | | |
| | | | 010912 | ○○ 영구임대 관리 | |
| | | | 기타임대 관i | | |
| | | | | ○○ 기타임대 관리 | |
| | | ○○정책사업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세부사업 | |
| | | 행정우영활동 | · : (참고) 조 | 직의 전반적 관리 목적을 위한 사업들 | |
| | | | 일반행정운영 | | |
| | | | | ○○공영개발 행정운영 | |
| | | | | ○○공영개발 행정운영자산 수선유지 | |
| | | | 인건비 | | |
| | | | | 인건비 (주택판매) | |
| | | | | 인건비 (택지판매) | |
| | | | | 인건비 (산업단지판매) | |
| | | | | 인건비 (기타용지등판매) | |
| | ' | ' | | | |

| | | | | 인건비 (공공임대) |
|--------|-------|--|---|--|
| | | | | 인건비 (국민임대) |
| | | | | 인건비 (영구임대) |
| | | | | 인건비 (기타임대) |
| | | | | 인건비 (행정운영) |
| | | 영업외활동 | | |
| | | | 지급이자 관 | 리 |
| | | | | ○○지방채 이자비용 |
|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기타영업외횔 | 동 관리 |
| | | | | ○○사업예산 보조금반환 |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자본예산 _ | | \(\dots\)\\\\\\\\\\\\\\\\\\\\\\\\\\\\\\\\\\\ | 2.4 | |
| | 지역및도/ | 시/산업단지/주 | | |
| | | 보지개발 및 | 주택분양사업 | |
| | | | 수택소성 | |
| | | | 티키기기기 | ○○수택소성 (미완성수택) |
| | | | 택시소성 | |
| | | | 시어디카코션 | |
| | | | 산십년시조성 | |
| | | | 기티요기드ス | |
| | | | 71457163 | |
| | - | 토지 및 주태 | 이대 과리 | 00/19/8/18/18 (11/18/17/1) |
| | | <u> </u> | | 선 |
| | | | 3 0 L II | |
| | | | 국민임대 조/ | |
| | | | , , , , , , | |
| | | | 영구임대 조~ | |
| | | | | |
| | | | 기타임대 조 | |
| | | | | ○○기타임대주택 조성 (건물) |
| | | ○○정책사업 | | |
| | | | ○○단위사업 | |
| | | | | ○○세부사업 |
| | | 행정운영활동 | | |
| | | | 일반행정운영 | · 관리 |
| | | 토지 및 주택 | 주택조성 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기타용지등조 임대 관리 공공임대 조선 국민임대 조선 기타임대 조선 | ○○주택조성 (미완성주택) ○○택지조성 (미완성토지) ○○산업단지조성 (미완성토지) 선정 ○○기타용지등조성 (미완성토지) 성정 ○○공공임대주택 조성 (건물) 성정 ○○국민임대주택 조성 (건물) 성정 ○○역구임대주택 조성 (건물) 성정 ○○이영구임대주택 조성 (건물)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 ○○공영개발 행정사무자산 구입 (공기구비품) |
| | | | | ○○프로그램 구입 (소프트웨어) |
| | | 재무활동 | | |
| | | | 선수금 상환 | |
| | | | | ○○선수금 해약상환 |
| | | | 지방채 상환 | |
| | | | | ○○지방채 원금상환 |
| | | | 차입금 상환 | |
| | | | | ○○차입금 원금상환 |
| | | | 보조금 반환 | |
| | | | | ○○자본예산 보조금반환 |
| | | | 일반회계 전략 | 출금 |
| | | | | ○○전출금 지급 |
| | | | 기타자본적지 | 출 |
| | | | | ○○기타자본적 지출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4 개발공사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사업예산 | | | | |
| | 지역및도서 | 시/산업단지/주 | 택/••• | |
| | | , , , | | : (참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
| | | 당연 적용 사 | | 지역경제활성화 목적 등 |
| | | | 주택판매 관 | |
| | | | | ○○주택 판매관리 |
| | | | | ○○주택 수선유지 |
| | | | 택지판매 관 | ' |
| | | | | ○○택지 판매관리 |
| | | | 21 61 -1 -1 -1 | ○○택지 수선유지 |
| | | | 산업단지판미 | |
| | | | | ○○산업단지 판매관리 ○○시합되고 참 N ○ 기 |
| | | | 리티스카드로 | ○○산업단지 수선유지 |
| | | | 기타용지등편 | |
| | | | | ○○기타용지등 판매관리 ○○기타용지등 판매관리 |
| | | 도기 미 ス데 | <u> </u> । । । । । । । । । । । । । । । । । । । | ○○기타용지등 수선유지 장크〉기바고기어비 게임기(거유비이)세 이천 다이 |
| | | | | 참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당연 경제활성화 목적 등 |
| | | 10 16, 1 | 공공임대 관 | |
| | | | | ○○ 공공임대 관리 |
| | | | 국민임대 관 | |
| | | | , – – . – | ○○ 국민임대 관리 |
| | | | 영구임대 관 | 리 |
| | | | | ○○ 영구임대 관리 |
| | | | 기타임대 관 | 리 |
| | | | | ○○ 기타임대 관리 |
| | | 출자회사 관리 | 믜 : (참고) 시 | ·업추진을 위한 자본 참여 관련 사업비 |
| | | | 출자회사 관리 | 긔 : (참고) 사회간접시설 운영 관련 자본참여 등 |
| | | | | ○○출자회사 운영 지원 |
| | | 대행사업 : (| 참고) 지자체 |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
| | | | | l 수탁 대행사업 : (참고) 자치단체의 세부 사업 |
| | | | 단위 참조 | |
| | | | | ○○체육문화시설 수탁 운영 |
| | | | 7-1-1-1-1-1-1 | 수탁 ○○체육문화시설 수선유지 |
| | | | 수차시설 수! 참조 | 탁 대행사업 : (참고) 자치단체의 세부 사업단위 |
| | | | | ○○주차시설 수탁 운영 |
| | | | | 수탁 ○○주차시설 수선유지 |
| | | | |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 ○○정책사업 |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 ○○세부사업 | | |
| | | 행정운영활동 | : (참고) 조 | 직의 전반적 관리 목적을 위한 사업들 | | |
| | | | 일반행정운영 | · 관리 | | |
| | | | | ○○개발공사 행정운영 | | |
| | | | | ○○개발공사 행정운영자산 수선유지 | | |
| | | | 인건비 | | | |
| | | | | 인건비 (주택판매) | | |
| | | | | 인건비 (택지판매) | | |
| | | | | 인건비 (산업단지판매) | | |
| | | | | 인건비 (기타용지등판매) | | |
| | | | | 인건비 (공공임대) | | |
| | | | 인건비 (국민임대) | | | |
| | | | 인건비 (영구임대) | | | |
| | | | 인건비 (기타임대) | | | |
| | | | | 인건비 (출자회사 관리) | | |
| | | | | 인건비 (체육문화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 | 인건비 (주차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 | 인건비 (행정운영) | | |
| | | 영업외활동 | | | | |
| | | | 지급이자 관 | | | |
| | | | | ○○공사채 이자비용 | | |
|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 | 기타영업외횥 | | | |
| | | | | ○○사업예산 보조금반환 | |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 |
| | | 법인세등 | 2.2.2= | | | |
| | | | 법인세등 | 131 AL 31 E | | |
| | | 2.2.2 | | 법인세등 | | |
| | | 예비비 | יני (ני וני | | | |
| | | | 예비비 | and of | | |
| -1 H .11 >1 | | | | 예비비 | | |
| 자본예산 | 기어미ㄷ | ᆡᄊᅅᆔᆔᆔ | Fl / | | | |
| | 시ㅋ돗노/ | 시/산업단지/주 「ㅌス!게바 및 | | | | |
| | | 토지개발 및 | 구덕군장사업 주택조성 | | | |
| | | | T 5 7 8 | ○○주택조성 (미완성주택) | | |
| | | | 택지조성 | | | |
| | | | 7(17-9 | ○○택지조성 (미완성토지) | | |
| 1 | l | | | ○○コペーの(引むるエペル | |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 | 산업단지조성 | 3 | | |
| | | | | ○○산업단지조성 (미완성토지) | | |
| | | | 기타용지등조 | 성 | | |
| | | | | ○○기타용지등조성 (미완성토지) | | |
| | | 토지 및 주택 | | | | |
| | | | 공공임대 조 | - | | |
| | | | ○○공공임대주택 조성 (건물) | | | |
| | | | 국민임대 조 | | | |
| | | | | ○○국민임대주택 조성 (건물) | | |
| | | | 영구임대 조 | | | |
| | | | 키디이리 그 | ○○영구임대주택 조성 (건물) | | |
| | | | 기타임대 조 | | | |
| | | 대행사업 | | ○○기타임대주택 조성 (건물) | | |
| | | 네 % / [립 | 체유무하시서 | 로 수탁 대행사업 | | |
| | | | 제작단되어 | 수탁 ○○체육관 개선 (수탁 건물) | | |
| | | | 주차시설 수 | | | |
| | | | 1/1161 | 수탁 ○○주차장 개선 (수탁 구축물) | | |
| | | ○○정책사업 |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 ○○세부사업 | | |
| | | 행정운영활동 | | | | |
| | | | 일반행정운영 | · 관리 | | |
| | | | | ○○개발공사 행정사무실 리모델링 (건물) | | |
| | | | | ○○개발공사 행정사무자산 구입(공기구비품) | | |
| | | | | ○○프로그램 구입 (소프트웨어) | | |
| | | 재무활동 | | | | |
| | | | 선수금 상환 | | | |
| | | | 그 기 에 기 키 ㅋ | ○○선수금 해약상환 | | |
| | | | 공사채 상환 | | | |
| | | _ | 키이그 사회 | ○○공사채 원금상환 | | |
| | | | 차입금 상환 | ○○차입금 원금상환 | | |
| | | | 보조금 반환 | | | |
| | | | 3-1 CT | ○○자본예산 보조금반환 | | |
| | | | 배당금등 지· | | | |
| | | | , 0 1 0 1 | ○○이익배당금 지급 | | |
| | | | 기타자본적지 | | | |
| | | | | ○○기타자본적 지출 | | |
| | | 예비비 | | | | |
| | | | 예비비 | | | |
| | | | | 예비비 | | |

5 교통공사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사업예산 | | | | | | |
| | 도시철도/ | ••• | | | | |
| | | 도시철도운영사업 : (참고) 지방공기업법(2조 적용범위) 목적 사업 | | | | |
| | | | 1호선 관리 : (| 참고) 운행을 위한 직접·간접적 시설운영 관리 등 | | |
| | | | | 1호선 운영 | | |
| | | | | 1호선 수선유지 | | |
| | | | 2호선 관리 : (| 참고) 운행을 위한 직접·간접적 시설운영 관리 등 | | |
| | | | | 2호선 운영 | | |
| | | | | 2호선 수선유지 | | |
| | | | 공동사업 관리 관리 등 | 의 : (참고) 운행을 위한 직접·간접적 시설운영 | | |
| | | | | 도시철도 공동시설물 운영 | | |
| | | | 도시철도 공동시설물 수선유지 | | | |
| | | | 부대사업 관리 : (참고) 운행을 위한 직접·간접적 시설운영 관리 등 | | | |
| | | | ○○광고 운영관리 | | | |
| | | 출자회사 관리 | 회사 관리 : (참고)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 참여 관련 사업비 | | | |
| | | | 출자회사 관리 |] : (참고) 사회간접시설 운영 관련 자본참여 등 | | |
| | | | | ○○출자회사 운영 지원 | | |
| | | 대행사업 | | | | |
| | | | ○○선 수탁 | 대행사업 | | |
| | | | | ○○선 수탁 운영 | | |
| | | ○○정책사업 |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 ○○세부사업 | | |
| | | 행정운영활동 | · | 식의 전반적 관리 목적을 위한 사업들 | | |
| | | | 일반행정운영 | · | | |
| | | | | ○○도시철도공사 행정운영 | | |
| | | | | ○○도시철도공사 행정운영자산 수선유지 | | |
| | | | 인건비 | | | |
| | | | | 인건비 (1호선) | | |
| | | | | 인건비 (2호선) | | |
| | | | | 인건비 (공동사업 관리) | | |
| | | | | 인건비 (부대사업 관리) | | |
| | | | | 인건비 (출자회사 관리) | | |
| | | | | 인건비 (○○선 수탁 대행사업) | | |
| | | | | 인건비 (행정운영) | |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영업외활동 | | |
| | | | 지급이자 관련 | <u> </u> |
| | | | | ○○공사채 이자비용 |
|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기타영업외활 | 동 관리 |
| | | | | ○○사업예산 보조금반환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 | | 법인세등 | | |
| | | | 법인세등 | |
| | | | | 법인세등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자본예산 | | | | |
| | 도시철도/ | • • • | | |
| | | 도시철도운영 | 사업 | |
| | | | 1호선 관리 | |
| | | | | ○○신호 및 통신 설비 구축 (기계장치) |
| | | | | ○○선로 구축 (구축물) |
| | | | 2호선 관리 | |
| | | | | ○○전동차 취득 (차량운반구) |
| | | | 공동사업 관리 | 의 |
| | | | | ○○환승역 증설공사 (건물) |
| | | | 부대사업 관리 | - - |
| | | | | ○○광고판 설치 (구축물) |
| | | 대행사업 | | |
| | | | ○○선 수탁 | 대행사업 |
| | | | | 수탁 ○○선 전동차 개선 (수탁 차량운반구) |
| | | ○○정책사업 | | |
| | | | ○○단위사업 | |
| | | | | ○○세부사업 |
| | | 행정운영활동 | | |
| | | | 일반행정운영 | 관리 |
| | | | |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실 리모델링 (건물) |
| | | | |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자산 구입 (공기구 비품) |
| | | | | ○○프로그램 구입 (소프트웨어)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재무활동 | | |
| | | | 공사채 상환 | |
| | | | | ○○공사채 원금상환 |
| | | | 차입금 상환 | |
| | | | | ○○차입금 원금상환 |
| | | | 보조금 반환 | |
| | | | | ○○자본예산 보조금반환 |
| | | | 배당금등 지급 | |
| | | | | ○○이익배당금 지급 |
| | | | 기타자본적지 | 출 |
| | | | | ○○기타자본적 지출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6 기타공사 ※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기타공사는 공단의 사업구조화 참고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사업예산 | | | | | | | |
| | 문화및관광/호 | 문화및관광/해운·항만/에너지및자원개발/••• | | | | | |
| | | 관광사업 : (참고) 지역의 자연환경, 입지 조건, 자원화 등 사업화 | | | | | |
| | | | 관광레저사업 | 관리 | | | |
| | | | | ○○관광단지 운영 | | | |
| | | | | ○○휴양림 운영 | | | |
| | | | | ○○관광단지 수선유지 | | | |
| | | | | ○○휴양림 수선유지 | | | |
| | | 문화사업:(| 참고) 지역문회 | 아, 교통, 지역입지 조건 등을 포함한 관련 사업 | | | |
| | | | 전시컨벤션시 | 업 관리 | | | |
| | | | | ○○컨벤션센터 운영 | | | |
| | | | | ○○컨벤션센터 수선유지 | | | |
| | | | 지역향토문회 발전 | 가 개발 및 보급 : (참고) 지역문화, 전통문화 보급, | | | |
| | | | | ○○전통행사대회 운영 | | | |
| | | | | ○○행사장 수선유지 | | | |
| | | 농수산물유통 | 사업 : (참고) | 지역의 자연환경, 입지 조건, 자원화 등 사업화 | | | |
| | | 농수산물유통사업 관리 : (참고) 지역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사업화 단위로 설정 | | | | | |
| | | | |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 | | | |
| | | | | ○○농수산물유통센터 수선유지 | | | |
| | | 해양물류항민 | :사업 : (참고) | 지역의 자연환경, 입지 조건, 자원화 등 사업화 | | | |
| | | | 해양물류항민 | 사업 관리 | | | |
| | | | | ○○해양물류항만 운영 | | | |
| | | | | ○○해양물류항만 수선유지 | | | |
| | | 신재생에너지 | 사업 : (참고) | 지역의 자연환경, 입지 조건, 자원화 등 사업화 | | | |
| | | | 풍력발전사업 | 관리 | | | |
| | | | | ○○풍력발전 운영 | | | |
| | | | | ○○풍력발전 수선유지 | | | |
| | | | 태양광발전시 | 업 관리 | | | |
| | | | | ○○태양광발전 운영 | | | |
| | | | | ○○태양광발전 수선유지 | | | |
| | | 출자회사 관 | 믜 : (참고) 사 | 업추진을 위한 자본 참여 관련 사업비 | | | |
| | | | 출자회사 관 | 리 : (참고) 사회간접시설 운영 관련 자본참여 등 | | | |
| | | | | ○○출자회사 운영 지원 | | | |
| | | ○○정책사업 | |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 | ○○세부사업 | | | |
| | | | | | | |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 | 행정운영활동 | : (참고) 조직 | l의 전반적 관리 목적을 위한 사업들 | | | |
| | | | 일반행정운영 | 관리 | | | |
| | | | | ○○공사 행정운영 | | | |
| | | | | ○○공사 행정운영자산 수선유지 | | | |
| | | | 인건비 | | | | |
| | | | | 인건비 (관광레저사업 관리) | | | |
| | | | | 인건비 (전시컨벤션사업 관리) | | | |
| | | | | 인건비 (지역향토문화 개발 및 보급) | | | |
| | | | | 인건비 (농수산물유통사업 관리) | | | |
| | | | | 인건비 (해양물류항만사업 관리) | | | |
| | | | | 인건비 (풍력발전사업 관리) | | | |
| | | | | 인건비 (태양광발전사업 관리) | | | |
| | | | | 인건비 (출자회사 관리) | | | |
| | | | | 인건비 (행정운영) | | | |
| | | 영업외활동 | | | | | |
| | | | 지급이자 관리 | | | | |
| | | | | ○○공사채 이자비용 | | | |
|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 | | 기타영업외활 | 동 관리 | | | |
| | | | | ○○사업예산 보조금반환 | | |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 | |
| | | 법인세등 | | | | | |
| | | | 법인세등 | | | | |
| | | | | 법인세등 | | | |
| | | 예비비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वीमोम | | | |
| 자본예산 | | | | | | | |
| | 문화및관광/히 | l운·항만/에너/ | 시및자원개발/ <u>•</u> | •• | | | |
| | | 관광사업 | | | | | |
| | | | 관광레저사업 | | | | |
| | | | | ○○관광단지 개선 (구축물) | | | |
| | | | | ○○휴양림 개선 (입목) | | | |
| | | 문화사업 | 1.1.2.2.2.2 | | | | |
| | | | 전시컨벤션사 | | | | |
| | | | 1.151 - 5 | ○○전시관 리모델링 (건물) | | | |
| | | | 지역향토문화 | 개발 및 보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사장 증설공사 (건물) | | | |
| | | 농수산물유통 | | | | | |
| | | | 농수산물유통 | | | | |
| | | | |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개선 (구축물) | | |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해양물류항만 | ·사업 | | |
| | | | 해양물류항만 | 사업 관리 | |
| | | | | ○○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개선 (구축물) | |
| | | 신재생에너지 | 사업 | | |
| | | | 풍력발전사업 | 관리 | |
| | | | | ○○대형 풍력터빈 교체 (기계장치) | |
| | | | 태양광발전사업 관리 | | |
| | | | | ○○태양광패널 설치 (기계장치) | |
| | | ○○정책사업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세부사업 | |
| | | 행정운영활동 | | | |
| | | | 일반행정운영 | | |
| | | | | ○○공사 행정사무실 리모델링 (건물) | |
| | | | | ○○공사 행정사무자산 구입 (공기구비품) | |
| | | 1020 | | ○○프로그램 구입 (소프트웨어) | |
| | | 재무활동 | 7 (3) () 2) | | |
| | | | 공사채 상환 | | |
| | | | 그시그 기원 | ○○공사채 원금상환 | |
| | | | 차입금 상환 | ○○카이크 이크사회 | |
| | | | 보조금 반환 | ○○차입금 원금상환 | |
| | | | 모조급 민관 | ○○자본예산 보조금반환 | |
| | | | 배당금등 지급 | | |
| | | | | □ ○○이익배당금 지급 | |
| | | | 기타자본적지 | | |
| | | | | ○○기타자본적 지출 | |
| | | 예비비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예비비 | |

7 공단 ※ 대행사업의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은 기타공사의 사업구조화 참고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 사업예산 | | | | | | | | |
| | 문화및관 | 화및관광/상하수도·수질/••• | | | | | | |
| | | 서비스 대행시 | ·업 : (참고) | 지자체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 | | | |
| | | | 관광레저시설 | · | | | | |
| | | | 지자체 세외 | 수입 조치 등을 고려 | | | | |
| | | | | ○○관광레저시설 수탁 운영 | | | | |
| | | | | 수탁 ○○관광레저시설 수선유지 | | | | |
| | | | 체육문화시설 | 수탁 대행사업 : (참고) 서비스요금수령 및 | | | | |
| | | | 지자체 세외4 | 수입 조치 등을 고려 | | | | |
| | | | | ○○체육문화시설 수탁 운영 | | | | |
| | | | | 수탁 ○○체육문화시설 수선유지 | | | | |
| | | | 주차시설 수탁 대행사업 : (참고) 서비스요금수령 및 지자체 | | | | | |
| | | | 세외수입 조치 등을 고려 | | | | | |
| | | | | ○○주차시설 수탁 운영 | | | | |
| | | | | 수탁 ○○주차시설 수선유지 | | | | |
| | | 환경 대행사업 | 환경 대행사업 : (참고) 지자체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 | | | | |
| | | | 하수처리시설 | 수탁 대행사업 | | | | |
| | | | | ○○하수처리시설 수탁 운영 | | | | |
| | | | | 수탁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 | | | | |
| | | 공공편익 대학 | 행사업 : (참고 |) 지자체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 | | | |
| | | | | ł 대행사업 : (참고) 시장기능으로 공급 곤란한 | | | | |
| | | | 문화 능 관련 | 정책목적 고려 | | | | |
| | | | | ○○도서관 수탁 운영 | | | | |
| | | | | 수탁 ○○도서관 수선유지 | | | | |
| | | | | ł 대행사업 : (참고) 시장기능으로 공급 곤란한 정책목적 고려 | | | | |
| | | | ,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 운영 | | | | |
| | | | | 수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선유지 | | | | |
| | | ○○정책사업 | I | |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 | | ○○세부사업 | | | | |
| | | 행정운영활동 | : (참고) 조직 | 식의 전반적 관리 목적을 위한 사업들 | | | | |
| | | | 일반행정운영 | 관리 | | | | |
| | | | | ○○공단 행정운영 | | | | |
| | | | | ○○공단 행정운영자산 수선유지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인건비 (관광레저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 | | | 인건비 (체육문화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 . ' | | | | | | |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 인건비 (주차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인건비 (하수처리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인건비 (교육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인건비 (복지시설 수탁 대행사업) |
| | | | | 인건비 (행정운영) |
| | | 영업외활동 | | |
| | | | 지급이자 관련 | 긔 |
| | | | | ○○공단채 이자비용 |
|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기타영업외활 | 동 관리 |
| | | | | ○○사업예산 보조금반환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 | | | | 예비비 |
| 자본예산 | | | | |
| | 문화및관 | 광/상하수도·수 | 질/••• | |
| | | 서비스 대행시 | <u> </u> | |
| | | | 관광레저시설 | 수탁 대행사업 |
| | | | | 수탁 ○○수목원 개선 (수탁 입목) |
| | | | 체육문화시설 | 수탁 대행사업 |
| | | | | 수탁 ○○스포츠센터 수영장 개선 (수탁 구축물) |
| | | | 주차시설 수퇴 | |
| | | | | 수탁 ○○공영주차장 증설 (수탁 구축물) |
| | | 환경 대행사인 | | |
| | | | 하수처리시설 | 수탁 대행사업 |
| | | | | 수탁 ○○하수처리시설 설비 교체 (수탁 기계장치) |
| | | 공공편익 대형 | | 2 2 2 2 2 |
| | | | 교육시설 수택 | |
| | | | | 수탁 ○○도서관 책상 및 의자 구입 (수탁 공기구비품) |
| | | | 복지시설 수퇴 | 탁 대행사업 |
| | | | | 수탁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차량 취득 (수탁 차량운반구) |
| | | ○○정책사업 | | ,,,,,,,,,,,,,,,,,,,,,,,,,,,,,,,,,,,,,,, |
| | | | ○○단위사업 | |
| | | | | ○○세부사업 |
| | | 행정운영활동 | | |
| | | | 일반행정운영 | 관리 |
| | | | | ○○공단 행정사무실 리모델링 (건물) |
| | | | | ○○공단 행정사무자산 구입 (공기구비품) |
| • | ' | ' | 1 | |

| 구분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 | | | ○○프로그램 구입 (소프트웨어) |
| | | 재무활동 | | |
| | | | 공단채 상환 | |
| | | | | ○○공단채 원금상환 |
| | | | 차입금 상환 | |
| | | | | ○○차입금 원금상환 |
| | | | 보조금 반환 | |
| | | | | ○○자본예산 보조금반환 |
| | | | 기타자본적지 | 출 |
| | | | | ○○기타자본적 지출 |
| | | 예비비 | | |
| | | | वी मी मी | |
| | | | | 예비비 |

W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 2025년도 예산과목 구조의 특징은
 - ▶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자료 통합 및 직영기업과 공사공단의 예산결산자료 통합을 위한 사전조치로, 예산과목 구조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성격별 분류에 최대한 일치 시킴
 - ▶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면실시로 사업별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기본개념, 도입필요성 및 지출예산 사업 구조화를 추가하고, 그 외 예산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일부반영하여 예산과목 개선 등 조치를 하였음
-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표준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
 - 필요시 기업회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워용



수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 | | 사 업 | 예 산 | | | 7 | 아 본 예 | 산 | |
|-----|-----|-----------------------|---------------------|------|-------|--------|----------|----------|------------------|
| 관 | 항 | 세항 | 목 | 관 | 항 | 세 | 항 | | 목 |
| 600 | 610 | 611 사용료수익 | 611-01 가정용상수도사용료 | 100 | 110 | 112 대역 | 금회수수입 | 112-01 | 대여금회수수입 |
| 사업 | 영업 | | 611-02 가정용하수도사용료 | 자본적. | 투자자산 | 113 투자 | 구가증권처분수입 | 113-01 | 매도가능증권등매각수입 |
| 수익 | 수익 | | 611-03 공공용상수도사용료 | 수입 | 처분 | 114 예탁 | 금원금회수수입 | 114-01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 | | | 611-04 공공용하수도사용료 | _ | | 119 개軒 | 투자자산처분수입 | 119-09 | 기타투자자산매각수입 |
| | | | 611-05 일반용상수도사용료 | | | | | | |
| | | | 611-06 일반용하수도사용료 | _ | 120 | 121 재선 | 난매각수입 | 121-01 | 토지매각수입 |
| | | | 611-07 대중탕용상수도사용료 | | 유형자산 | | | 121-02 | 건물매각수입 |
| | | | 611-08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 | 처분 | | | 121-03 | 구축물매각수입 |
| | | | 611-09 산업및공업용상수도사용도 | ! | | | | 121-04 | 입목매각수입 |
| | | | 611-10 산업및공업용하수도사용료 | | | 122 물품 | 등매각수입 | 122-01 | 기계장치매각수입 |
| | | | 611-11 기타상수도사용료 | - | | | | 122-02 | 차량운반구매각수입 |
| | | | 611-12 기타하수도사용료 | - | | | | 122-03 | 공기구비품매각수입 |
| | | | 611-13 원·정수판매수입 | | | | | 122-09 |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 |
| | | | 611-14 도매시장사용료 | - | | | | | |
| | | | 611-15 시설사용료 | | 130 | 131 보증 | 금회수수입 | 131-01 | 보증금회수수입 |
| | | 612 급·배수공사수의 | 612-01 상수도신설공사수입 | | 기타비유동 | 139 神 | 유동자산매각수입 | 139-09 |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
| | | 612 급·배수공사수의 | 612-02 하수도신설공사수입 | | 자산처분 | | | | |
| | | | 612-03 상수도개조공사수일 | | | | | | |
| | | | 612-04 하수도개조공사수입 | | 140 | 141 선 | 수금수입 | 141-01 | 선수금수입 |
| | | 613 빗물처리부담금 | 613-01 빗물처리부담금 | | 유동부채 | 142 단7 | 차입금수입 | 142 - 01 | 시・도지역개발기금단기차입금 |
| | | 621 상품등판매수익 | 621-01 상품판매수입 | | 수입 | | | 142 - 02 | 시・군・구지역개발기금단기차입금 |
| | | | 621-02 제품판매수입 | | | | | 142-03 | 중앙정부단기차입금 |
| | | | 621-09 기타재고자산판매수입 | | | | | 142-04 | 자치단체단기차입금 |
| | | 622 관리사업수익 | 622-01 관리사업수입 | | | | | 142-05 | 금융기관단기차입금 |
| | | | 622-02 관리사업부대수입 | | | | | 142 - 06 | 단기공사・공단채 |
| | | 623 대행사업수익 | 623-01 직접관리비수입 | | | | | 142 - 07 | 단치차관 |
| | | | 623-02 간접관리비수입 | | | | | 142-08 | 기타단기해외채무 |
| | | 624 입장료수익 | 624-01 입장료수입 | | | 149 기타 | 유동부채수입 | 149-09 | 기타유동부채수입 |
| | | 625 경주·경기사업수익 | 625-01 경주·경기사업수입 | | | | | | |
| | | 631 운수사업수익 | 631-01 운수수입 | | 150 | 152 정투 | 부차입금수입 | 152-01 | 시·도지역개발기금장기차입금 |
| | | 641 क्ष्रापूर्वस्मानि | 641-01 택지판매수입 | | 비유동부채 | | | 152-02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장기차입금 |
| | | | 641-02 공단용지판매수입 | | 수입 | | | 152-03 | 중앙정부장기차입금 |
| | | | 641-03 주택판매수입 | | | 153 금융 | 기관차입금수입 | 153-01 | 금융기관장기차입금 |
| | | | 641-09 기타용지등판매수입 | | | 154 공사 | ··공단채수입 | | |

| | | | 사 업 | 예 산 | | | | | 자 본 예 | 산 | |
|---|-----|-----|-----------|----------|-----------------------|---|-------|-----|-------------------------|--------|--------------|
| 관 | 항 | | 세항 | | 목 | 관 | 항 | | 세항 | | 목 |
| | | 642 | 임대사업수익 | 642-01 | 주택및상가임대수입 | | | 155 | 국외차입금수입 | 155-01 | 장기차관 |
| | | | | 642-02 | 용지임대수입 | | | | | 155-09 | 기타장기해외채무 |
| | | | | 642-09 | 기타임대수입 | | | 159 | 기타비유동부채수입 | 159-09 | 기타비유동부채수입 |
| | | 661 | 기타영업수익 | 661 - 02 | 기타사용료수익 | | | | | | |
| | | | | 661-03 | 기타수수료수입 | | 160 | 161 | 자본금수입 | 161-01 | 자본금수입 |
| | | | | 661 - 04 | 광고료수입 | | 자본금수입 | | | | |
| | | | | 661 - 05 | 부대시설임대수익 | | | | | | |
| | | | | 661-09 | 기타영업수입 | | 170 | 171 | 시설분담금수입 | 171-01 | 시설분담금수입 |
| | | | | | | | 자본잉여금 | 173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173-01 | 국고보조금수입 |
| | 670 | 671 | 이자수익 | 671 - 01 | 예금이자수입 | | 수입 | | | 173-02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 | 영업외 | | | 671-02 | 대여금이자수입 | | | | | 173-03 | 시도비보조금수입 |
| | 수익 | | | 671-03 | 예탁금이자수입 | | | | | 173-09 | 기타건설보조금수입 |
| | | | | 671 - 09 | 기타이자수입 | | | | | | |
| | | 672 | 타회계전입금수익 | 672-01 | 일반회계전입금 | | | 174 | 보조금수입 | 174-01 | 타회계보조금수입 |
| | | | | | 타특별회계전입금 | | | | | 174-02 | 국고보조금수입 |
| | | | | 672-03 | 일반회계지원금 | | | | | 174-03 | 자치단체보조금수입 |
| | | | | | 타특별회계지원금 | | | 175 | 공사부담금수입 | |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 |
| | | | | | 기타전입금 | | | | | | 타자치단체공사부담금수입 |
| | | 673 | | | 국고보조금 | | | | | | 기타공사부담금수입 |
| | | | | | 시·도비보조금 | | | | | | 수탁자산보조금수입 |
| | | | | | 자치단체보조금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674 | 유형자산처분이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 | 178 | 보조금등반환금수입 | 178-01 | 국고보조금반환금 |
| | | 675 | 외화환산이익 | 675-01 | 외화환산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 | | | 178-02 |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
| | | 676 | 전기오류수정이익 | 676-01 | 전기오류수정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 | 179 | 기타자본잉여금수입 | 179-09 | 기타자본잉여금수입 |
| | | 677 | 채무면제이익 | | 채무면제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 180 | 181 | 순세계잉여금 | 181-01 | 순세계잉여금 |
| | | 678 | 투자자산처분이익 | 678-01 | 투자자산처분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 유보자금 | | | 181-02 | 보조금사용잔액 |
| | | 679 | 기타엿엇외수이 | | 기타임대수입 | | | | | 181-03 | 대행사업비사용잔액 |
| | | 010 | | | 임대관리수입 | | | 189 | 미수금 | | 영업미수금 |
| | | | | | 불용품매각수입 | | | 104 | 11 11 | | 기타미수금 |
| | | | | | 변상금및위약금수입 | | 190 | 191 | 기타자보적수인 | | 기타자본적수입 |
| | | | | | 기타영업외수입 | | 기타자본적 | 101 | · I · I · I · I · I · I | 101 00 | |
| | | 681 | | | 전기손익수정이익 | | 수입 | | | | |
| | | | | | 채무면제이익 | | 1 H | | | | |
| | | | 41 4 1 1 | | (예정손익계산서) | | | | | | |
| | | 683 | 보조금등반환금수입 | 683-01 | 국고보조금반환금 | | | | | | |
| | | | | 683-02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 | | | | |

2 수입예산 과목 내역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사업 | 계산 | | | | | |
| | 600 | 사업 | 수익 | | | |
| | | 610 | 영업수 | 역 | | |
| | | | 611 | 사용료수익 | | |
| | | | | 611-01 가정용상수도사용료 | 1.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조정액) | 상수도 |
| | | | | 611-02 가정용하수도사용료 | 1.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조정액) | 하수도 |
| | | | | 611-03 공공용상수도사용료 | 1. 공공용(업무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액) | 상수도 |
| | | | | 611-04 공공용하수도사용료 | 1. 공공용(업무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액) | 하수도 |
| | | | | 611-05 일반용상수도사용료 | 1. 일반용(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액) | 상수도 |
| | | | | 611-06 일반용하수도사용료 | 1. 일반용(영업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액) | 하수도 |
| | | | | 611-07 대중탕용상수도사용료 | 1. 대중탕(욕탕 1,2종) 상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액) | 상수도 |
| | | | | 611-08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 1. 대중탕(욕탕 1,2종) 하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액) | 하수도 |
| | | | | 611-09 산업및공업용상수도 사용료 | 1. 산업용 또는 전용공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조정액) | 상수도 |
| | | | | 611-10 산업및공업용하수도 사용료 | 1. 산업용 또는 전용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조정액) | 하수도 |
| | | | | 611-11 기타상수도사용료 | 1.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이외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 | 상수도 |
| | | | | 611-12 기타하수도사용료 | 1.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이외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 | 하수도 |
| | | | | 611-13 원·정수 판매수입 | 1.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원·정수 판매 수입 | 상수도 |
| | | | | 611-14 도매시장사용료 |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 | 기타공사 |
| | | | | 611-15 시설사용료 | 1.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입 | 기타공사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612 | 급·배수공사수익 | | |
| | | | | 612-01 상수도신설공사수입 | 1. 수탁 신설공사에 따른 자재대, 시공비 및 기타 수입 | 상수도 |
| | | | | 612-02 하수도신설공사수입 | 1. 수탁 신설공사에 따른 자재대, 시공비 및 기타 수입 | 하수도 |
| | | | | 612-03 상수도개조공사수입 | 1. 수탁 기설공사의 개조공사에 따른 자재대, 시공비 및 기타 수입 | 상수도 |
| | | | | 612-04 하수도개조공사수입 | 1. 수탁 기설공사의 개조공사에 따른 자재대, 시공비 및 기타 수입 | 하수도 |
| | | | 613 | 빗물처리 부담금 | | |
| | | | | 613-01 빗물처리 부담금 | 1. 하수도사업의 빗물처리에 따른 일반회계 등 부담금 | 하수도 |
| | | | 621 | · 상품등판매수익 | | |
| | | | | 621-01 상품판매수입 | 1. 구매 상품 판매수입 | 공사·공단 |
| | | | | 621-02 제품판매수입 | 1. 제품 판매수입 | 공사·공단 |
| | | | | 621-09 기타재고자산판매수입 | 1.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 등 기타 재고자산 판매수입 | 공사·공단 |
| | | | | | - 용지, 주택 등 판매수익은 제외 | |
| | | | 622 | 관리사업수익 | | |
| | | | | 622-01 관리사업수입 | 1. 주택 수탁·관리운영에 따른 제수입 | 공사·공단 |
| | | | | | 2. 기타 공사·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수입 | |
| | | | | | 정관상에 명시된 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자체사업수입 | |
| | | | | 622-02 관리사업부대수입 | 1. 관리사업운영에 따른 기타 제수입 | 공사·공단 |
| | | | 623 1 | 대행사업수익 | | |
| | | | | 623-01 직접관리비수입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수탁한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관리비수입 | 공사·공단 |
| | | | | | ※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관리비로 계상 | |
| | | | | 623-02 간접관리비수입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수탁한 사업수행에 따른 공통경비 등 간접관리비 수입 | 공사·공단 |
| | | | 624 | 입장료수익 | | |
| | | | | 624-01 입장료수입 | 1. 운동장, 공연장, 관광시설 등의 입장료수입 | 공사·공단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625 | 경주·경기사업수익 | | |
| | | | | 625-01 경주·경기사업수입 | 1. 소싸움, 경륜 등의 우권, 투표권 발매수입 | 공사·공단 |
| | | | 631 - | 운수사업수익 | | |
| | | | | 631-01 운수수입 | 1. 대중교통 등 운임수입 | 도시철도 |
| | | | | A 1-17, W 1 W 1 W 1 | | 자동차운송 |
| | | | 641 - | 용지및주택판매수익 | | |
| | | | | 641-01 택지판매수입 | 1. 당해 사업년도분 수익실현 가능한 | 공영개발 |
| | | | | | 택지조성시 판매 수입 | 개발공사 |
| | | | | | | 기타공사 |
| | | | | 641-02 공단용지판매수입 | 1. 당해 사업년도중 수익실현 가능한 | 공영개발 |
| | | | | | 공단용지 조성시 판매 수입 | 개발공사 |
| | | | | | | 기타공사 |
| | | | | 641-03 주택판매수입 | 1. 당해 사업년도분 수익실현 가능한 | 공영개발 |
| | | | | | 주택조성시 판매수입 | 개발공사 |
| | | | | | 기타공사 | |
| | | | 641-09 기타용지능판매수입 | 1. 상기 과목이외의 기타 용지 등 판매수입 | 공영개발 | |
| | | | | | 1 | 개발공사 |
| | | | 649 | 임대사업수익 | | 기타공사 |
| | | | 042 | | | 고서레비 |
| | | | | 642-01 주택및상가임대수입 | 1. 주택 및 상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현가능한 | 공영개발 |
| | | | | | - 1 6 6 6 에 시합인도 필원기 6 원 수입분만 계상 | 개발공사 |
| | | | | | , | 기타공사 |
| | | | | 642-02 용지임대수입 | 1. 용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 공영개발 |
| | | | | | 사업년도 실현가능한 수입분만 계상 | 개발공사 |
| | | | | | | 기타공사 |
| | | | | 642-09 기타임대수입 | 1. 기타 시설물에 다른 임대료 수입중 | 공영개발 |
| | | | | | 당해 사업년도 실현 가능한 수입분만 계상 | 개발공사 |
| | | | | | /11/8 | 기타공사 |
| | | | 661 | 기타영업수익 | | |
| | | | 661-02 기타사용료수익 | 1. 통신 및 회선 전용선, 차량, 역사 공동사용료 수입 등 | 공통 | |
| | | | | 2. 기타 부수 영업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 | |
| | | | | 661-03 기타수수료수입 | 1. 급수공사 및 급수조례에 의한 각종 수수료 수입 | 공통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 | 2.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각종 수수료 수입 | |
| | | | | | 3. 상품 거래 중개 관련 수수료 수입 | |
| | | | | | 4. 기타 부수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 |
| | | | | 661-04 광고료수입 | 1. 터널, 차량, 역구내 등 광고수익 | 공통 |
| | | | | 661-05 부대시설임대수익 | 1. 상가, 편의시설 등 임대료수입 | 공통 |
| | | | | | 2. 기타 부수 영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 |
| | | | | 661-09 기타영업수입 | 1.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관한 위·수탁비용 | 공통 |
| | | | | | 2. 위탁판매수수료, 여객유치시설수익, 후생복리시설수익, 대중교통 관련 운영수입 등 영업에 수반되는 잡수입 | |
| | | | | | 3. 기타 열거되지 않은 영업수입 | |
| | | 670 | 영업외 | 수익 | | |
| | | | 671 | 이자수익 | | |
| | | | | 671-01 예금이자수입 | 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이자 및 적립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유가증권 이자수입 | 고통 |
| | | | | 671-02 대여금이자수입 | 1.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각종 대여금 이자수입 | 공사공단 |
| | | | | 671-3 예탁금이자수입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다른 예탁금 이자의 회수수입 | 직영 |
| | | | | 671-09 기타이자수입 | 1. 상기과목이외의 이자수입 | 공통 |
| | | | 672 t | 타회계전입금수익 | | |
| | | | | 672-01 일반회계전입금 | 1. 타회계 부담금수입 중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 직영 |
| | | | | | 2.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 |
| | | | | | 3. 공업용수, 소방용수 등 공공시설의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 |
| | | | | 672-02 타특별회계전입금 | 1. 타회계 부담금수입 중 일반회계 이외의 기타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 직영 |
| | | | | | ※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은 [672-04 타특별회계지원금]에 계상 | |
| | | | | | 2. 상수도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계상 | |
| | | | | | 3.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 |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 672-03 일반회계지원금 | 1. 타 회계 부담금수입 중 일반회계가 지원하는 수입(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지원, 보조금, 차입금이자 상환자금, 기타성격상 자본적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상적 보조금 성격) | 상·하수도 |
| | | | | 672-04 타특별회계지원금 | 1. 타 회계 부담금수입 중 일반회계 이외의 기타 특별회계가 지원하는 수입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지원, 보조금, 차입금이자 상환자금, 기타 성격상 자본적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상적 보조금 성격) | 상·하수도 |
| | | | | 672-09 기타전입금 | 1. 상기과목이외의 기타전입금 | 직영 |
| | | | 673 | 보조금수익 | | |
| | | | | 673-01 국고보조금 | 1. 국가로부터 전입된 수익적 보조금 수입 | 공통 |
| | | | | 673-02 시·도비보조금 | 1. 시·도로부터 전입된 경상보조금 | 직영 |
| | | | | 673-03 자치단체보조금 | 1.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수익적 보조금 및 부담금 수입 | 공사·공단 |
| | | | 67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674-01 유형자산처분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1. 유형자산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 공통 |
| | | | 675 | 외화환산이익 | | |
| | | | | 675-01 외화환산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1. 환산 이익 중 당해연도 수익 해당액을 계상 | 공통 |
| | | | 676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676-01 전기오류수정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1. 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 공사·공단 |
| | | | 677 | 채무면제이익 | | |
| | | | | 677-01 채무면제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1. 상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채무원리금중 그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상환의무가 면제됨으로서 발생한 수익 | 공사·공단 |
| | | | 678 |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 | | 678-01 투자자산처분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1. 투자자산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 공통 |
| | | | 679 | 기타영업외수익 | | |
| | | | | 679-01 기타임대수입 | <상하수도> | 공통 |
| | | | | | 1.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임야, 기타 재산의 임대 및 그에 부수되는 수입 |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 | <지방공사·공단> 1. 영업활동이 아닌 자산임대에서 발생한 수입 | |
| | | | | 679-02 임대관리수입 | 1. 영업활동이 아닌 임대자산관리에 따른 입주자에 대한 제반비용 수입 2.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대납 비용에 | 공통 |
| | | | | 679-03 불용품매각수입 | 대한 수입 1. 불용품으로 결정된 불용물품 매각 수입 | 공통 |
| | | | | 679-04 변상금및위약금수입 |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금 수입과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 | 공통 |
| | | | | 679-09 기타영업외수입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영업외 수입 | 공통 |
| | | | 681 | 전기손익수정이익 | | |
| | | | | 681-01 전기손익수정이익 | 1. 전기의 수익으로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발견됨으로써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입 (예: 과년도사용료 추가 조사결정액 등의 수입) | 직영 |
| | | | 682 | 채무면제이익 | | |
| | | | | 682-01 채무면제이익 (예정손익계산서) | 1. 지방채발행액중 상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공채상환원리금중 그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상환의무가 면제됨으로서 발생한 수입 | 전영 |
| | | | | | 2. 기타 채무면제이익 | |
| | | | 683 | 보조금등 반환금수입 | | |
| | | | | 683-01 국고보조금 반환금 | 1. 과년도 국고에 의한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수입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수입 | 공통 |
| | | | | 683-02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 1. 과년도 시·도비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수입 2.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수입 | 공통 |
| 자본(| 예산 | 1 | 1 | 1 | | |
| | 100 | 자본적 | 부수입 | | | |
| | | 110 | 투자지 | -산처분 | | |
| | | | 112 1 | 대여금회수수입 | | |
| | | | | 112-01 대여금회수수입 | 1.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대여금의 당년도 원금 회수분 계상 | 공사공단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113 | 투자유가증권처분수입 | | |
| | | | | 113-01 매도가능증권등매각 수입 | 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 매각수입 | 공통 |
| | | | | | 2.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금 매각수입 | |
| | | | 114 4 | 계탁금원금회수수입 | | |
| | | | | 114-01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탁금원금의 회수수입 | 직영 |
| | | | 119 | 기타투자자산처분수입 | | |
| | | | | 119-09 기타투자자산매각수입 | 1. 열거되지 않은 기타투자자산 매각수입 | 공통 |
| | | 120 | 유형지 | ·산처분 | | |
| | | | 121 | 재산매각수입 | | |
| | | | | 121-01 토지매각수입 | 1. 토지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 공통 |
| | | | | | 2. 토지·건물(구축물 포함) 일괄매각시 각 항목별 매각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토지매각수입으로 계상 | |
| | | | | 121-02 건물매각수입 | 1. 건물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 공통 |
| | | | | 121-03 구축물매각수입 | 1. 구축물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 공통 |
| | | | | 121-04 입목매각수입 | 1. 입목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 공통 |
| | | | 122 | 물품매각수입 | | |
| | | | | 122-01 기계장치매각수입 | 1. 불용 기계장치 매각수입 | 공통 |
| | | | | 122-02 차량운반구매각수입 | 1. 불용 차량운반구 매각수입 | 공통 |
| | | | | 122-03 공기구비품매각수입 | 1. 불용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 공통 |
| | | | | 122-09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 | 1. 상기 이외의 유형자산 매각수입 | 공통 |
| | | | | |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일괄매각시 각 항목별 매각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기타유형자산처분수입으로 계상 | |
| | | 130 | 기타비 | 유동자산처분 | | |
| | | | 131 | 보증금회수수입 | | |
| | | | | 131-01 보증금회수수입 | 1.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회수분계상 | 공통 |
| | | | 139 |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 | |
| | | | | 139-09 기타비유동자산매각 수입 | 1.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비유동자산의 매각수입 | 공통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 용 대상 |
|----|---|-----|-------|-----------------------------|---|----------------------|
| | | 140 | 유동부 | -채수입 | | |
| | | | 141 | 선수금수입 | | |
| | | | | 141-01 선수금수입 | 1. 용지 및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금 | 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
| | | | 142 4 | · 단기차입금수입 | | |
| | | | | 142-01 시·도지역개발기금 단기차입금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통 |
| | | | | 142-02 시·군·구지역개발 기금단기차입금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통 |
| | | | | 142-03 중앙정부단기차입금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통 |
| | | | | 142-04 자치단체단기차입금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사·공단 |
| | | | | 142-05 금융기관단기차입금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통 |
| | | | | 142-06 단기공사·공단채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사·공단 |
| | | | | 142-07 단치차관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통 |
| | | | | 142-08 기타단기해외채무 | 1.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공통 |
| | | | 149 | 기타유동부채수입 | | |
| | | | | 149-09 기타유동부채수입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할 부채의 증가로 인한 수입 | 공통 |
| | | 150 | 비유동 | -부채수입 | | |
| | | | 152 | 정부차입금수입 | | |
| | | | | 152-01 시·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 1.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 공통 |
| | | | | 152-02 시·군·구지역개발 기금장기차입금 | 1.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 고통 |
| | | | | 152-03 중앙정부장기차입금 | 1.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 공통 |
| | | | | 152-04 자치단체장기차입금 | 1. 지방공사·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 공사·공단 |
| | | | 153 | 금융기관차입금수입 | | |
| | | | | 153-01 금융기관장기차입금 | 1. 국내 예금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 공통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154 | 공사·공단채수입 | | |
| | | | | 154-01 공사·공단채 | 1. 지방공사·공단이 채권(공모사채, 사모사채, 용지보상채권 등)을 발행하여 발생한 수입 | 공사·공단 |
| | | | 155 | 국외차입금수입 | | |
| | | | | 155-01 장기차관 | 1. 해외차관에 따른 수입 | 공통 |
| | | | | 155-09 기타장기해외채무 | 1. 해외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 수입 | 공통 |
| | | | 159 | 기타비유동부채수입 | | |
| | | | | 159-09 기타비유동부채수입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부채 수입 | 공통 |
| | | 160 | 자본금 | 수입 | | |
| | | | 161 | 자본금수입 | | |
| | | | | 161-01 자본금수입 | 1. 당해연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한 자본금 수입 | 공통 |
| | | 170 | 자본잉 | [여금수입 | | |
| | | | 171 - | 시설분담금수입 | | |
| | | | | 171-01 시설분담금수입 | 1. 상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입 | 상·하수도 |
| | | | 173 1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 |
| | | | | 173-01 국고보조금수입 |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 상·하수도 |
| | | | | 173-02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보조금 | 상·하수도 |
| | | | | 173-03 시도비보조금수입 |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시도 지원하는 보조금 | 상·하수도 |
| | | | | 173-09 기타건설보조금수입 |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타회계에서 지원받은 상기 과목 이외의 보조금 | 상·하수도 |
| | | | 174 | 보조금수입 | | |
| | | | | 174-01 타회계보조금수입 | 1.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자본적 보조금 수입 | 공영개발 |
| | | | | | 2.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보조금수입 | |
| | | | | 174-02 국고보조금수입 |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공사·공단 등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 공영개발 |
| | | | | | 보조금(영구 임대주택 건설자금) | 공사·공단 |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 174-03 자치단체보조금수입 |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공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수입 | 공사·공단 |
| | | | 175 | 공사부담금수입 | | |
| | | | | 175-01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 |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시설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가 부담하는 수입 | 상·하수도 |
| | | | | 175-02 타자치단체공사부담금 수입 |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입 | 상·하수도 |
| | | | | 175-09 기타공사부담금수입 | 1. 상하수도법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공사원인자가 부담하는 수입 | 상·하수도 |
| | | | | | 2.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법령 및 설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특별회계 등에서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 도시철도 |
| | | | 176 - | 수탁자산보조금수입 | | |
| | | | | 176-01 수탁자산보조금수입 | 1. 대행사업 관련 수탁자산 취득 보조금수입 | 공사·공단 |
| | | | 177 - | 원인자부담금수입 | | |
| | | | | 177-01 원인자부담금 | 1.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에 의거 공사원인자가 부담하는 수입 | 상·하수도 |
| | | | 178 | 보조금등 반환금수입 | | |
| | | | | 178-01 국고보조금 반환금 | 1. 과년도 국고에 의한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수입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수입 | 공통 |
| | | | | 178-02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 1. 과년도 시·도비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수입 2.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수입 | 공통 |
| | | | 179 | 기타자본잉여금수입 | | |
| | | | | 179-09 기타자본잉여금수입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수입 | 공통 |
| | | 180 | 유보지 | -금 | | |
| | | | 181 | 순세계잉여금 | | |
| | | | | 181-01 순세계잉여금 | 1.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대행사업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 고 |
| | | | | 181-02 보조금사용잔액 | 1. 전년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반납 예정인 금액 | 고통 |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구분 | 관 | 항 | 세항 | 목 | 과 목 내 역 | 적용 대상 |
|----|---|-----|-------|------------------|--|----------|
| | | | | 181-03 대행사업비사용잔액 | 1. 전년도 대행사업비를 미사용한 잔액으로 반납 예정인 금액 | 공통 |
| | | | ו 182 | 미수금 | | |
| | | | | 182-01 영업미수금 | 1.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중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미수금 수입 | 공통 |
| | | | | 182-02 기타미수금 | 1.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중 영업활동 이외의 미수금 수입 | 공통 |
| | | 190 | 기타지 | -본적수입 | | |
| | | | 191 | 기타자본적수입 | | |
| | | | | 191-09 기타자본적수입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타자본적수입 | 공통 |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 예산분류 사업:사업예산, 자본:자본예산, 손익:예정손익계산서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 100 | 100 인건비 | | | | | | |
| | 101 인건비 | 01 보수 | 공통 | 사업 | | |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 | | 1. 기본급 | | | | | |
| | | 1)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 | | | | |
| | |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 | | | | |
| | |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 | | | | |
| | |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xx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 | | | | |
| | | 2)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 | | | | |
| | |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 | | | | |
| | | 2. 수당 | | | | | |
| | |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xx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 | | | | |
| | | 3. 정액급식비 | | | | | |
| | |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xx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 | | | | |
| | | 4. 명절휴가비 | | | | | |
| | |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xx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 | | | | |
| | | 5. 연가보상비 | | | | | |
| | | 1) 「20xx년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xx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 | |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 | | 1. 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결원율을 참고하여 계상 | | | | | |
| | | 2.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 | | | | |
| | | 3. 보수규정 등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 | |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1)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 포함 | | |
| | | 02 기타직보수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 | |
| | | 2.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 |
| | |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 | |
| | |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 |
| | |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 | |
| | |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 | |
| | | <공사·공단> | | |
| | | 1.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 | |
| | |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 | |
| | |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 | |
| |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 |
| | |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 |
| |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 |
| |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 | |
| | | ※ 기본급, 수당(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외 경비성 비용은 별도 편성목 등(201, 202, 203 등) 활용 | | |
| | | 2)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 | |
| | | 2.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 | |
| | |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 관리부서에서 통합 관리 | | |
| | | 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 |
| | |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 | |
| | |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기간제근로자 등 예산편성 | | |
| | | 1)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 | |
| | |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 | |
| | | 3)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근로관계를 종료 | | |
| | | 4)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 | |
| | |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 | |
| | |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0호, 2020.5.26.)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4호, 2019.11.5.)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 | |
| | | 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 |
| | |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 | |
| | 107 퇴직급여 | 0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 직영 | 사업 |
| | |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액 | | |
| | |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보험료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 | |
| | | 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 | |
| | | 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예정손익계산서) | | |
| | | 02 기간제근로자등퇴직급여 | 직영 | 사업 |
| | | 1.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급여 지급액 | | |
| | | 2.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보험료 | | |
| | | 3.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 | |
| | | 4.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 | |
| | | 5.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예정손익계산서) | | |
| | | 03 퇴직급여 | 공사·공단 | 사업 |
| | | 1.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액 | | |
| | | 2. 근로자 퇴직보험료 | | |
| | | 3. 근로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 | |
| | | 4. 근로자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 | |
| | | 5.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예정손익계산서) | | |
| | 109 평가급 및 | 01 일반직평가급등 | 공사·공단 | 사업 |
| | 성과금 등 | 1.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 정부 권장정책의 도입에 따른 일반직 및 기타직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및 성과금 계상 | | |
| | | 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평가급등 | 공사·공단 | 사업 |
| | | 1.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 정부 권장정책의 도입에 따른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및 기타직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및 성과금 계상 | | |
| 200 | 물건비 | | | |
| | 201 일반운영비 | 1. 일반운영비는 지방공기업의 행정활동 및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만을 편성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본적 지출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2.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 항목은 자본적 지출 해당과목에 계상 | | |
| | | 01 사무관리비 | 공통 | 사업 |
| | | 1. 일반수용비 | 공통 | 사업 |
| | | 1)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 | |
| | | 가.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 |
| | | 나.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 | |
| | | 다.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 | |
| | | 2) 필기구, 용지대등 사무용 잡품비 | | |
| | | 3)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
| | | 4)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 제작비 | | |
| | | 5)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 | |
| | | 6)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 | |
| | | 7)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 | |
| | | 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비목에 계상 | | |
| | | 나.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 | |
| | | 8)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 |
| | |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 |
| | |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 공통 | 사업 |
| | | 1) 위원회 참석수당 | | |
| | | 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 |
| | | 나.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 |
| | | 다.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계상 가능 | | |
| | | 2) 심사수당 | | |
| | | 가.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 |
| | |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 심사 등 | | |
| | | 나. 지방공사·공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3) 일·숙직비 | | |
| | | 가.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 | |
| | | 나.)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 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 | | |
| | | 4) 시험관리비 | | |
| | |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 | |
| | |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 | |
| | | 5) 이사회참석수당 | | |
| | | 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비 | | |
| | | 3. 피복비 | 직영 | 사업 |
| | | 1)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 | |
| | | 2)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 | |
| | | 3)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 |
| | | 가.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 | | |
| | | 4) 현업부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 | |
| | | 4. 급량비 | 직영 | 사업 |
| | | 1)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 | |
| | | 가.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 | |
| | | 나.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 | |
| | | 다.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 | |
| | | 라.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 |
| | | 마.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 |
| | |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 | |
| | |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 |
| | | 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 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나.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 |
| | | 다.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 |
| | | 라.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 | |
| | | 마.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 | |
| | |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 | |
| | |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 |
| | |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 | |
| | | 바. 휴일근무자 급식비 | | |
| | |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 | |
| | |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 |
| | |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 | |
| | | 사.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 | |
| | | 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급량비 | | |
| | | 02 공공운영비 | 공통 | 사업 |
| | | 1. 연료비 | 공통 | 사업 |
| | | 1) 냉·난방시설(부속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부대경비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 | |
| | |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 |
| | | 2. 시설장비유지비 | 직영 | 사업 |
| |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 |
| | |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 |
| | | 2)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 |
| | |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 |
| | | 3)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 | |
| | | 4)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 |
| | | 5)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도 포함)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3. 의료비(공무직(무기계약) 포함) | 공통 | 사업 |
| | | 1)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 | |
| | | 2) 공상치료비 등 | | |
| | | 03 행사운영비 | 공통 | 사업 |
| | |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 |
| | |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 |
| | |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 |
| | |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 |
| |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 | |
| | | 2.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 |
| | |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 |
| | |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 |
| | |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 | |
| | | ※ (지방직영기업) 정수 및 수용가 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 | |
| | | ※ (지방공사·공단) 대행사업 및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 | |
| | | 3.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 |
| | |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적·일화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 |
| | |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직영 | 사업 |
| | |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규직, 공무직(무기계약) 포함) | | |
| |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 |
| | |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 | |
| | |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 | |
| | | 11 지급수수료 | 공통 | 사업 |
| | |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2. 소송료(등기료는 해당자산에 포함) | | |
| | |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 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 | |
| | |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 | |
| | |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 | |
| | | 6. 물품의 운송대 | | |
| | |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 | |
| | | 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 | |
| | |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 통역비 | | |
| | |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때에는 포함하고 측량수수료의 경우 자산취득 시 해당자산에 포함) | | |
| | | 11.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 |
| | | 12.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전자결제대행수수료 등 | | |
| | | 13.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 | |
| | | 14. 청소, 경비, 세탁 시설물관리, 제품운송 등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 | |
| | | 12 교육훈련비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위탁교육비 | | |
| | | 1)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 |
| | | 2)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 |
| | |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 |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 | |
| | | 2.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 | |
| | | 1) 교육기관 강사료 | | |
| | |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 | |
| | | 2) 자체교육 강사료 | | |
| | |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 | |
| | |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 |
| |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 | |
| | |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 | |
| | |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 | |
| | |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각종 교육훈련관련 경비(교육(전문)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 | |
| | | 2. 직원의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및 자체규정에 따른 대학원등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 | | |
| | | 13 임차료 | 공통 | 사업 |
| |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임차료 | | |
| | |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자산)에 계상 | | |
| | |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 | |
| | |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 | |
| | |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 | |
| | |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 | |
| | | 4.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 | |
| | | 1)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 | |
| | | 5.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 | |
| | | 14 회의비 | 공사·공단 | 사업 |
| | | 1. 지방공사·공단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2. 지방공사·공단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
| | | ※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내에서 집행 | | |
| | | 15 복리후생비 | 공사·공단 | 사업 |
| | | 1. 각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편성 | | |
| | | 2.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 | |
| | | 3.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 | |
| | | 4.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또는 제조경비 | | |
| | | 5. 침구류 구입 | | |
| | | 6.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 | | |
| | | 7.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 | |
| | | 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보육비 지원 | | |
| | | 16 광고선전비 | 공통 | 사업 |
| | | 1.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 | |
| | | ※ 대행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 | |
| | | 17 판매촉진비 | 공통 | 사업 |
| | | 1. 인센티브 등 판매촉진을 위한 기타 제 비용 | | |
| | | ※ 대행사업, 징수 및 수용가관리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 | |
| | | 21 공공요금 및 제세 | 공통 | 사업 |
| | | 1. 우편물 발송대 | | |
| | | 2.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 | |
| | | 3.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 | |
| | | 4.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 | |
| | | 5.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 | |
| | | 6.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 | |
| | | 1)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제56조) 등 | | |
| | | 7. 기 타 | | |
| | | 1)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 | |
| | | 보험(공제) 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3)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 |
| | | 22 차량•선박비 | 공통 | 사업 |
| | | 1.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 |
| | | 2.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 | |
| | | 23 경주·경기사업제세 | 공사·공단 | 사업 |
| | | 1. 투표권 발매액에 부과되는 레저세 등 | | |
| | 202 여비 | 01 국내여비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 |
| | |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 | |
| | |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 |
| | |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 | |
| | |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 | |
| | |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 | |
| | |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내출장여비 | | |
| | |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 | |
| | | 02 월액여비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편성여부 및 대상 부서, 월정액을 자율결정(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를 적용)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내월액여비 | | |
| | | 03 국외업무여비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 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 |
| | | - (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외업무여비 <지방공사·공단> | | |
| | |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 | |
| | | 04 국제화여비 | 직영 | <u>사업</u> |
| | |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 | |
| | |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 |
| | | 05 공무원 교육여비 | 직영 | 사업 |
| | |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 | |
| | | 08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 | 공통 | 사업 |
| | |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여비 | | |
| | |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교육훈련 여비 | | |
| | | ※ 기간제근로자 포함하여 편성 | | |
| | 203 업무추진비 | <지방직영기업> | | |
| | |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 |
| | | 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 | |
| | | 2. 기타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가능 | | |
| | | 3.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 |
| | | ※ 지방공단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시 지자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 | | |
| | |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 | |
| | |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직영 | 사업 |
| | | 1.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 | |
| | | 2. 예산편성 및 집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 일반회계와 중복 편성 불가 | | |
| | |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영 | 사업 |
| | |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 | |
| | |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 별도 계상(본청내에 설치된 직영기업은 본청 전체 정원으로 계상하되, 일반회계에 일괄 편성된 경우 별도 편성 불가) | | |
| |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직영 | 사업 |
| | | 1.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 | |
| | |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 | | |
| | | 3. 예산집행 | | |
| | | 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 | |
| | |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 | |
| | | 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 | |
| | | ※ 개인적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 |
| |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영 | 사업 |
| | |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 | |
| | |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 |
| | | -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 | |
| | | 나.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 | |
| | |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등의 경우에도 지급 | | |
| | |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 | |
| | | 07 사업업무추진비 | 공사·공단 | 사업 |
| | | 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 |
| | | ※ 지방공단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시 지자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 | |
| | 004 기미스웨거네 |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 -1 AJ | ואו |
| | 204 직무수행경비 |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영 | 사업 |
| | |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 | |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함 | | |
| | | 02 직급보조비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 | |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집행 | | |
| | | 03 특정업무경비 | 공통 | 사업 |
| | |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 | |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함 | | |
| | | 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병급 불가 | | |
| | 206 재료비 | 01 일반재료비 | 공통 | 사업 |
| | |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 | |
| | |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 |
| | |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 | |
| | |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 | |
| | | 5.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 | |
| | | 6. 급식재료비 | 공단 | |
| | | 7. 기타일반재료비 | | |
| | | ※ 지방공사·공단의 상품매출수익 관련 상품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233 상품매입비로 편성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02 약품비 | 상·하수도 | 사업 |
| | | 1.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로서 징수처리에 필요한 모든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 환경공단 | |
| | | 2. 하수정화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 | |
| | | 3. 분뇨, 침출수, 음식물, 슬러지건조고화 등에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 | | |
| | | 4. 수영장 정수에 소요되는 약품비 | | |
| | | 03 원수구입비 | 상수도 | 사업 |
| | | 1.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원수를 구입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원수구입대금 | | |
| | | 2. 취수관리사업(단위사업) 등으로 편성 | | |
| | | 04 정수구입비 | 상수도 | 사업 |
| | | 1.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정수구입대금 | | |
| | | 2. 정수관리사업(단위사업) 등으로 편성 | | |
| | 207 연구개발비 | 1. 자본적 지출(자산형성)과 관련된 부대경비 성격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유무형자산의 분류에 포함하여 해당 목에 계상 | | |
| | | 01 연구용역비 | 공통 | 사업 |
| | | 1.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적 비용 | | |
| | | 02 전산개발비 | 공통 | 사업 |
| | |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 | |
| | |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 |
| | | ※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 | | |
| | | 03 시험연구비 | 공통 | 사업 |
| |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 | |
| | 214 수선유지교체비 | 01 급수계량기교체비 | 상·하수도 | 사업 |
| | | 1. 유효기간경과수도계량기 및 고장수도계량기구, 수도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2. 하수배출량 계측을 위한 계측기구입비 및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02 상하수도관 교체비 | 상·하수도 | 사업 |
| | | 1. 기 시공된 상하수도관중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상하수도관의 교체비용(자재비 및 시공비, 기타 경비 포함)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03 감리비 | 상·하수도 | 사업 |
| | | 1. 누수복구 및 누수도로 굴착복구 등에 따른 감리비 계상 | | |
| | | 04 지원사업성 시설비 | 상・하수도 | 사업 |
| | | 1. 주민 및 타회계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는 당해 직영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 | | |
| | | 05 수선유지비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설비자산의 소규모 수선비 교체 개량 등 경상적 수선비(재료비, 설계비 포함) | | |
| | | 가.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 목적 | | |
| | | 나. 응급복구 사업비 | | |
| | |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목에 계상 | | |
| | | 2. 슬러지처리비 | | |
| | | 3. 직접 생산을 위한 자산이 아닌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 | |
| | | 4.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 |
| |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 | |
| | | 4. 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미계상(자본적 지출 항목에 별도 계상) | | |
| | | 5. 유지보수 공사중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비도 본 항목에 계상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건물, 전로설비, 선로설비, 철도차량, 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 | | |
| | | 2. 하수 및 소각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운반비 포함) | | |
| | | 3.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 |
| |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 | |
| | | 4.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비용(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도 포함)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215 동력비 | <지방직영기업> | 공통 | 사업 |
| | | 1.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로서 취수 및 가압송수용 전동기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요금. 단 시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 | |
| | | 2. 하수정화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전기사용요금.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 | |
| | | 3. 원동기, 동력장치, 중장비 등 직접생산설비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대 | | |
| | |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 집행 가능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철도차량 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연료대 비용계상.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 | |
| | |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 | |
| | |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 | |
| | 217 관서업무비 | 01 정원가산업무비 | 공사·공단 | 사업 |
| | | 1.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 | |
| | | 02 부서업무비 | 공사·공단 | 사업 |
| | | 1.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 | |
| | | 가.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 | |
| | 231 신설공사비 | 1. 수탁공사 중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및 기타 부대경비(설계비, 여비 등 포함) | 상수도 | 사업 |
| | 232 개조공사비 | 1. 수탁공사 중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및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여비 등 포함) | 상수도 | 사업 |
| | 233 상품매입비 | 1. 상품매출수익의 원천인 상품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공단 | 사업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300 | 경상이전 | | | |
| | 301 일반보전금 |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 | |
| | |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 |
| | | 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공통 | 사업 |
| | |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 | |
| | |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 | |
| |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공사 공단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 | |
| | | 06 민간인국외여비 | 직영 | 사업 |
| | |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 | |
| | | 07 외빈초청여비 | 직영 | 사업 |
| |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 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 | |
| | |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경비 | | |
| | |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 | |
| | |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함 | | |
| | |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공통 | 사업 |
| | |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 |
| | | 가.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 | |
| | |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 | | |
| | | 09 행사실비지원금 | 공통 | 사업 |
| | |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 | |
| | | 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 _ | |
| | |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 | |
| | |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공통 | 사업 |
| | | 1.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 | |
| | | 2.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 | |
| | | ※ 영업외활동(정책사업)에 한하여 편성 | | |
| | | 12 기타보상금 | 공통 | 사업 |
| | |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 | |
| | | 2. 법령·조례(지방공사·공단은 정관, 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 | |
| | | 3. 지방공기업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 | |
| | |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 | |
| | | 5.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 | |
| | | 6. 경륜선수상금 및 보상금(유사사업은 아래 항목과 유사한 것) | | |
| | | 가. 경륜선수상금, 특별경륜시상금, 경륜선수포상금 및 상품구입비 | | |
| | | 나. 경륜선수 자전거수리 및 헬멧 보상금 등 | | |
| | | 다. 경륜선수 상해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사고처리비 등 | | |
| | 302 이주및재해 보상금 | 01 민간인이주보상금 | 공영개발 | 사업 |
| | |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 보상비 | | |
| | | 가.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계상 | | |
| | |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 직영 | 사업 |
| | |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 | |
| | |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303 포상금 | 01 포상금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 | |
| | |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 | |
| | |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 | |
| | |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비 | | |
| | |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 | |
| | |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 | |
| | |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 |
| |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품 구입비 | | |
| | | 2. 예산절감,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 | |
| | | 02 성과상여금 | 직영 | 사업 |
| | | 1.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 | |
| | |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 | | |
| | 304 연금부담금등 | 01 연금부담금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사용자 부담분 | | |
| | | 02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 공통 | 사업 |
| | | <지방직영기업> | | |
| | | 1.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1.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03 공무직(무기계약) 부담금 관련 | 공통 | 사업 |
| | | 1. 공무직(무기계약)의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 | |
| | | 2. 공무직(무기계약)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담금 | | |
| | | 3. 공무직(무기계약)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 | |
| | 305 배상금등 | 01 배상금등 | 공통 | 사업 |
| | | 1. 손해보상금, 국가배상금 | | |
| | |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 |
| | |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 | |
| | 306 출연금 | 11 자치단체출연금등 | 직영 | 사업 |
| | | 1. 법령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 | | |
| | | 12 민간출연금 | 직영 | 사업 |
| |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 |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 |
| | | 13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 공사·공단 | 사업 |
| | | 1. 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경비 | | |
| | | 14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 공사 | 사업 |
| |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
| | 307 민간이전 |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직영 | 사업 |
| | |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
| | |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 |
| | |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
| | | 3.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
| | |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직영 | 사업 |
| | |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 |
| | |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 |
| | | 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나.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 |
| | | 다.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 |
| | | 04 민간행사사업보조 | 직영 | 사업 |
| | |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
| | | 가.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등) 지원 불가 | | |
| | |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 |
| | | 05 민간위탁금 | 직영 | 사업 |
| | | 1.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 |
| | | 가. 시가지·도로청소, 상수도검침 대행사업비 등 | | |
| | |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 |
| | | ※ 수도법 제23조에 의한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 위탁비용 계상 | | |
| | | 06. 보험금 | 직영 | 사업 |
| | |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 | |
| | | 07 연금지급금 | 직영 | 사업 |
| | | 1. 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 | |
| | |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 | |
| | | 08 이차보전금 | 직영 | 사업 |
| | |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 | | |
| | | 13 민간검침활동지원비 | 상수도 | 사업 |
| | | 1. 팀장급 민간검침원(주부, 통장 등)에 대한 활동지원비 | | |
| | | 2. 민간검침원 검침비용 | | |
| | | ※ 수수료 성격 이외의 비용 편성 불가 | | |
| | 308 자치단체등이전 |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직영 | 사업 |
| | |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 | |
| | | 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작영 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 사업 |
| | |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 | |
| | |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 | |
| | |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 | |
| | |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직영 | 사업 |
| | |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 |
| |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 | | |
| | |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 | |
| | | ※ 시설물 건설 등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목으로 편성 | | |
| | | 12 기타부담금 | 직영 | 사업 |
| | | 1. 법령에 의거 국가 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 | |
| | 309 전출금 |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 직영 | 사업 |
| | | 1. 공무원연금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 | |
| | 310 국외이전 | 01 국외경상이전 | 직영 | 사업 |
| | |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 | |
| | |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경비 | | |
| | | 02 국제부담금 | 직영 | 사업 |
| | | 1.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 | |
| |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국제부담금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 직영 | 사업 |
| | | 1. 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 | |
| | |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 공통 | 사업 |
| | |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 | |
| | |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 공통 | 사업 |
| | |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 | |
| | | 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 공통 | 사업 |
| | |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 | |
| | |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 | |
| | |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 | |
| | | 08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 직영 | 사업 |
| | | 1. 시·도의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자동차운송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 | | |
| | | 09 타회계차입금이자상환 | 직영 | 사업 |
| | | 1.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 | |
| | | 10 자치단체차입금이자상환 | 공사·공단 | 사업 |
| | | 1. 지방공사·공단의 자치단체차입금 대한 이자 상환 | | |
| | | 11 공사·공단채이자상환 | 공사·공단 | 사업 |
| | | 1. 공사·공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상환 | | |
| | | 12 기업채취급제비 | 공사·공단 | 사업 |
| | | 1. 공사·공단채발행 등에 따른 인쇄비, 수수료 등 관련비용 | | |
| | | 2. 차관 약정수수료 등 | | |
| | 317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 1. 공기업특별회계 상호간 부담해야 할 경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 직영 | 사업 |
| | 318 기부금 | 1.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등 | 공사·공단 | 사업 |
| | 319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부담금 | 1.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 공사·공단 | 사업 |
| | 320 법인세등 | 1. 법인세 등 계상(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 | 공사·공단 | 사업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400 | 자본지출 | | |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01 시설비 | 공통 | 자본 |
| | | 1. 기본조사설계비 | | |
| | |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 | |
| | | 가. 실시설계비 | | |
| |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 |
| |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 | |
| |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 |
| | | 나. 공모설계비 | | |
| | |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 | |
| | | 3. 토지매입비 | | |
| | |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 | |
| | |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 | |
| | |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 | |
| | | 4. 시설비 | | |
| | |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 | |
| | |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 | |
| | | 다. 토지 정지공사비 | | |
| | |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 | |
| | |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 | |
| | |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 | |
| | |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 |
| | | ※ 당해 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수익적 지출에 계상 | | |
| | |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 |
| | |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 | |
| | |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 |
| | |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 |
| | | 5. 문화재 발굴경비 | | |
| | | 지방공기업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 | |
| | | 02 감리비 | 공통 | 자본 |
| | |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 | |
| | |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 |
| | | 03 시설부대비 | 공통 | 자본 |
| | |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 | |
| | |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 목에 계상 | | |
| | | 3.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 |
| | |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 | |
| | |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 |
| | | 예시) | | |
| | | ⑦ 도로굴착 시 민간건물 손상 | | |
| | | ①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 | |
| | |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 | | |
| | |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 |
| | | 9.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 | | |
| | |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 | |
| | |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 |
| | |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 |
| | |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 |
| | | 04 행사관련시설비 | 공통 | 자본 |
| | |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 |
| | |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 |
| | |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 |
| | | ※ 대행사업, 징수 및 수용가관리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402 민간자본이전 |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직영 | 자본 |
| | |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 |
| | |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 |
| | | ※ 투자사업성격이아닌경비는민간경상사업보조에편성 | | |
| | | 2.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농로·창고시설·화장실·오수처리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해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 | |
| | |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직영 | 자본 |
| | |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 |
| | |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 |
| | | ※ 투자사업성격이아닌경비는민간경상사업보조에편성 | | |
| | | 2.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농로·창고시설·화장실·오수처리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해 이전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 | |
| | | 03 민간위탁사업비 | 직영 | 자본 |
| | |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
|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지급하는 교부금 | | |
| | | ※ 시설물의 건설 등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 | |
| | 403 자치단체등 |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직영 | 자본 |
| | 자본이전 |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 |
| | |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 |
| | | 02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 직영 | 자본 |
| | |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 | | |
| | | ※ 시설물의 건설 등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 | |
| | |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 | |
| | 405 자산취득비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공통 | 자본 |
| |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 | |
| | |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 | |
| | |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 | |
| | |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 | |
| | |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 | |
| | |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 | |
| | |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 | |
| | | 6.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 |
| |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 | |
| | | <계상방법> | | |
| | |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비 | | |
| | | 2. 입목취득비 및 취득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 | |
| | | 3.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 | |
| | | 4. 사업용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 | |
| | | 5.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 | |
| | |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 기구및 비품구입비 계상 | | |
| | | 나. 단, 내용연수 5년 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 | | |
| | | 6. 전동차량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7.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철도차량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 | |
| | | 02 도서구입비 | 공통 | 자본 |
| | |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 | |
| | | 11 정보화시스템취득비 | 공통 | 자본 |
| | | 1.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 |
| | | 12 수탁자산취득비 | 공사·공단 | 자본 |
| | | 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 | |
| | | 13 기타투자자산 | 공통 | 자본 |
| |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투자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 | |
| | | 14 기타비유동자산 | 공통 | 자본 |
| |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 | |
| | 406 기타자본이전 | 01 기타자본이전 | 공통 | 자본 |
| | | 1. 차관물자 용역대 | | |
| | |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 | |
| | |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 | |
| | |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 | |
| | | 2. 건설가계정 | | |
| | |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 | |
| | |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 |
| | | 3. 무형자산 및 보증금 | | |
| | |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 | | |
| | |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 |
| | |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 |
| | |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 | |
| | | 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등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영업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02 기타자본적지출 | 공통 | 자본 |
| |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 | | |
| 500 - | 용자 및 출자 | | | |
| | 501 융자금 | 11 장기대여금 | 공사·공단 | 자본 |
| | | 1. 장기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 | | |
| | 502 출자금 | 11 매도가능증권등 | 공사·공단 | 자본 |
| | | 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 | | |
| | |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금 | | |
| 600 | 보전재원 | | | |
| | 601 차입금원금상환 |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 직영 | 자본 |
| | |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 | |
| | |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 공통 | 자본 |
| | |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 공통 | |
| | |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 | 자본 |
| | |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 | |
| | | 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 공통 | 자본 |
| | |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 | |
| | | 06 차관상환 | 공통 | 자본 |
| | | 1. 해외차관 원금의 상환 | | |
| | | 07 기타해외채무상환 | 공통 | 자본 |
| | |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 | |
| | | 08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 직영 | 자본 |
| | | 1. 시·도의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상환 | | |
| | | 09 타회계차입금원금상환 | 직영 | 자본 |
| | | 1.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 | | |
| | | 10 자치단체차입금원금상환 | 공사·공단 | 자본 |
| | | 1. 공사·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상환 | | |
| | | 11 공사·공단채원금상환 | 공사·공단 | 자본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1. 지방공사·공단이 발행한 채권(공모사채, 사모사채, 용지보상채권 등)의 원금 상환 | | |
| | 607 선수금상환 | 1. 선수금상환(해약에 한함) | 공영개발 | 자본 |
| | | | 개발공사 | |
| | | | 기타공사 | |
| | 611 기타유동 부채상환 | 1. 상가임대보증금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유동부채 상환금 | 공통 | 자본 |
| | 612 기타비유동 부채상환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부채 상환금 | 공통 | 자본 |
| 700 1 | 내부거래 | | | |
| | 701 기타회계등 전출금 | 11 이익정산금 | 직영 | 자본 |
| | | 1 지방직영기업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 납부금 및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전출금 | | |
| | 704 예탁금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지출 | | 직영 | 자본 |
| |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 | 공통 | 손익 |
| | 1.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당해 연도분 감가상각비 | | | |
| | | 11 관리사업원가 | 공사·공단 | 손익 |
| | 1. 관리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 | | |
| | 12 택지매출원가 | | 공영개발 | 손익 |
| | 1. 택지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 | 개발공사 | |
| | | | 기타공사 | |
| | | 13 공단용지매출원가 | 공영개발 | 손익 |
| | | 1. 공단용지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 개발공사 | |
| | | | 기타공사 | |
| | | 14 주택매출원가 | 공영개발 | 손익 |
| | | 1. 주택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 개발공사 | |
| | | | 기타공사 | |
| | | 15 기타용지등매출원가 | 공영개발 | 손익 |
| | 1. 기타용지등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 | 개발공사 | |
| | | | 기타공사 | |
| | | 16 유형자산처분손실 | 공통 | 손익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적용 대상 | 예산 분류 | | |
|-----|---------------------------------------|---|-----------|-----------|--|--|
| | | 1. 유형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 | | | |
| | | 가.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 | | | |
| | | 17 자산손상차손 | 공통 | 손익 | | |
| | | 1. 재고자산 멸실로 인한 감손, 유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 | | | |
| | | 18 외화환산손실 | 공통 | 손익 | | |
| | | | | | | |
| | | 19 전기오류수정손실 | 공사·공단 | 손익 | | |
| | | 1. 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 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 | | | |
| | | 20 투자자산처분손실 | 공통 | 손익 | | |
| | | 1. 투자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 | | | |
| | | 가.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 | | | |
| 800 | 예비비및기타 | | | | | |
| | 801 예비비 | 01 일반예비비 | 공통 | 사업 | | |
| | | <지방직영기업> | | 자본 | | |
| | [사업] | | | | | |
| | 1.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 |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 | [사업] | | | | | |
| | | 1. 사업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 | | | |
| | | [자본] | | | | |
| | | | | | | |
| | | 직영 | 사업· 자본 | | | |
| | | 1.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 | | | |
| | | 직영 | 사업· 자본 | | | |
| | | | | | | |
| |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금 | | | 사업· 자본 | | |
| | | 1. 과년도 국고에 의한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액 | | | | |
| | |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 | | |

| 그룹 | 목 | 세목 및 과목내역 | | 예산 분류 |
|----|---|--|-------|-----------|
| |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
| | | ※ 당년도 보조금의 정산잔액은 해당과목에서 반환 | | |
| |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 | |
| | | 1. 과년도 시·도비에 의한 보조금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액 | | |
| | |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 | |
| | | ※ 당년도 보조금의 정산잔액은 해당과목에서 반환 | | |
| | | 03 기타반환금 등 | 공통 | 사업· 자본 |
| |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 | |
| | 04 잡손금 | | 공통 | 사업 |
| | | 1. 기타잡손금 | | |
| | | 11 대행사업비반환금 | 공사·공단 | 사업 |
| | | 1. 과년도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 | |
| | | | 공사·공단 | 사업 |
| | | 1. 적중 투표권에 대한 고객 환급금 | | |
| | | 13 임시손실 | 직영 | 사업 |
| | | 1. 임시로 발생한 거액의 손실 | | |
| | | 2.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의 폐쇄로 인한 철거비용 | | |
| | | 14 전기손익수정손실 | 직영 | 사업 |
| | | 1. 전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 발생 또는 지급되는 금액 (과오납금 등) | | |
| | | 15 기타영업외비용 | 공통 | 사업 |
| | |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타영업외비용 | | |
| | | 16 배당금 | 공사 | 자본 |
| | | 1.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익배당금 | | |

VIII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WII.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예산편성·집행을 위한 기준경비 등 참고자료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기준 및 자치단체 예산조례를 활용
 -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는 반드시 준수하되,
 - 기타 경비는 지방공기업 자체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하여 운영이 가능함
- 지방공사·공단은 동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기준 설정하여 운영



예산서

•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서류(지방공기업법 제26조, 동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가. 예산안(예산의 내용)

- (1) 사업운영계획 : 별첨양식
- (2) 예산총칙

제1조 총칙

제2조 업무의 예정량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제5조 계속비

제6조 채무부담행위

제7조 지방채

제8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제9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제10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제11조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제12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에 관한 사항

제14조 기타 필요한 사항

- (3) 예산서
 - 1) 예산 총괄
 - 2) 수입 예산
 - 3) 지출 예산
- (4) 자금운영계획

나.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예산안에 관한 설명서)

- (1)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업별 설명서
 - 예산서의 사업·자본예산으로 갈음
- (2) 급여비 명세서 : 별첨 양식
- (3) 계속비에 관한 조서 : 별첨 양식
- (4)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 별첨 양식
- (5) 당해 사업연도(2025년)의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 연도(2024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이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수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이 예산의 단위
 - 수입·지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함
- ㅇ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서식(예시)

2025년도 ○○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서

○○시・군

목 차

- 1. 사업운영계획
- 2. 예산 총칙
- 3. 2025년 예산 총괄표
 - 3-1. 수입예산 총괄표
 - 3-2. 지출예산 총괄표
- 4.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 지출자금
- < 별 첨 >
- 1. 계속비사업조서
- 2. 채무부담행위조서
- 3.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1. 사업운영계획

가. 상수도사업

□총 괄

| | - | 구 분 | 단 위 | 당년도 | 전년도 | 증 감 | 비 | 고 |
|----------|--------------|-------------------|------|-----|-----|-----|---|---|
| 1 | | 1) 행정구역총인구(A) | 천명 | | | | | |
| | 보급계획 | 2) 급수인구(B) | " | | | | | |
| | | 3) 보급률 B/A×100 | % | | | | | |
| | | 1) 취수용량 | 천 m³ | | | | | |
| | | 2) 시설용량 | " | | | | | |
| 2 | 시설계획 | 3) 급수전수 | 전 | | | | | |
| ∠. | 시설계획 | 4) 송배수관총연장 | km | | | | | |
| | | 5) 급수관총연장 | " | | | | | |
| | | 6) 노후관교체 | " | | | | | |
| | | 1) 년간총생산량(C) | 천 m³ | | | | | |
| | | 2) 1일평균생산량 | " | | | | | |
| | allal mi | 3) 년간총급수량(조정)(D) | " | | | | | |
| 2 | | 4) 1일평균급수량 | " | | | | | |
| ان. ا | 생산 및 수급계획 | 5) 1일1인평균급수량 | L | | | | | |
| | | 6) 요금부과율(D/C×100) | % | | | | | |
| | | 7) 톤당평균요금 년간급수수입 | 원 | | | | | |
| | | () 년간조정량 | | | | | | |
| | 인력관리 계획 | 계 | 명 | | | | | |
| | | 1) 일 반 직 | " | | | | | |
| $ _{4}$ | | 2) 별 정 직 | " | | | | | |
| | | 3) 기 타 직 | " | | | | | |
| | | 4) 무기계약근로자 | " | | | | | |
| | | 5) 기간제근로자 등 | " | | | | | |
| 5. | 5. 자산평가액 | | 억원 | | | | | |

□ 주요 투자사업

| 사 업 명 | 사 업 내 역 | 사업비(백만원) | 刊 |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 및 급수계획

| 정수장별 | 시설용량(천m³) | 연간총생산(천m³) | 1일평균생산(천m³) | 가동율(%)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금조정계획

| 시즈버 | | 당년도 | | | 전 년 5 | - - | 인상율 | 인상 |
|---------|-----|-----|--------|-----|-------|--------|-----|----|
| 업종별 | 사용량 | 수입액 | m³당 단가 | 사용량 | 수입액 | m³당 단가 | (%) | 시기 |
| 계 | | | | | | | | |
| 가 정 용 | | | | | | | | |
| 업 무 용 | | | | | | | | |
| 영 업 용 | | | | | | | | |
| 욕 탕 1 종 | | | | | | | | |
| 욕 탕 2 종 | | | | | | | | |
| 전용공업용 | | | | | | | | |

□ 지방채 발행계획

| 기채선 | 금 액 | 용도 | 발행사유 | 발행조건 | 발행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하수도사업

| 구 | 분 | 단 위 | 당년도 | 전년도 | 증 감 | 山 | 고 |
|---------------|--|---------------------------|-----|-----|-----|---|---|
| 1. 시설현황 | 총인구(A) 하수인구(B) 보급률(B/A) 하수처리시설용량 하수관거연장 | 천명 "% 천톤/일 km | | | | | |
| 2. 업무현황 | 1) 연간총하수발생량 2) 1일평균하수발생량 3) 1인1일평균하수발생량 4) 연간 총하수처리량 5) 1일평균하수처리량 6) 1인1일평균하수처리량 7) 하수처리율(1/4) | 천톤 톤 | | | | | |
| 3. 시설계획 | 1) 하수처리장시설 2) 하수처리장확장 3) 차집관거연장 4) 하수관거신설 5) 하수관거시설유지관리 6) 톤당평균요금 (년간사용료수입 년간조정량 | 천톤/일 " km m m | | | | | |
| 4. 인력관리 계획 | 계 (명) 1)일 반 직 2)별 정 직 3)기 타 직 4)무기계약근로자 5)기간제근로자 등 | B ル ル ル ル | | | | | |
| 5. 자산평가역 | H | 억원 | | | | | |

다. 공영개발사업

| | - | 구 분 | 단 위 | 당년도 | 전년도 | 증 감 | 비 | 고 |
|--------|----------------------|---|---|-----|-----|-----|---|---|
| | 주택보급 변황 | 행정구역총세대수(A) 주택세대수(B) 무주택세대수(C) 주택보급율(B/A×100) 무주택율(C/A×100) | 세대 " " % " | | | | | |
| 및 및 | 백지조성 및 주택 번설계획 | 1) 용지조성 및 주택건립계획 | 천 m³ " 천 n° " " 천 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 | | | |
| |]력관리 계획 | 계 1)일 반 직 2)별 정 직 3)기 타 직 4)무기계약근로자 5)기간제근로자 등 | 명 "" "" | | | | | |
| 4. ス | 사산평가의 | | 억원 | | | | | |

2. 예산 총칙

제1조(총칙) 2025년도 ○○시 ○○사업 특별회계예산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가. 예정손익계산서

| 차 | | 대 변 | | |
|----------------|---------|-----|-----|--|
| 비 용 | 순이익 | 수익 | 순손실 |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나. 예정재무상태표

| 차 | | 대 변 | | |
|----|---------|-----|----|--|
| 자산 | 순손실 | 부채 | 자본 |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다.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 과 목 | 금 액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천원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천원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천원 |
| Ⅳ. 현금의 증감(І+Ⅱ+Ⅲ) | 천원 |
| V. 기초의 현금 | 천원 |
| VI. 기말의 현금 | 천원 |

제2조(업무의 예정량)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 사업별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공급 계획 및 주요건설개량사업 개요기재 (예시 : 상수도사업)

가. 급수전수 ××××전

나. 연간 생산량 ××××천㎡

다. 1일평균생산량 ××천㎡

라. 주요건설개량사업○○○○사업(○○○공사) 사업비 ×××백만원

제3조(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수 | 입 |
|------------------------|------------|-------------------------------|
| 제1관 ○○사업수입 | | ××××천원 |
| 제1항 영업수익 | | $\times \times \times$ " |
| 제2항 영업외수익 | | $\times \times \times$ " |
| 제3항 특별이익 | | $\times \times \times$ " |
| | 지 | 충 |
| | \sim | 至 |
| 제1관 ○○사업비용 | \uparrow | 물 ××××천원 |
| 제1관 ○○사업비용 제1항 영업비용 | ^ | _ |
| , , , , , | ^ | - ××××천원 |
| 제1항 영업비용 | ^ | - ××××천원 ××× " |
| 제1항 영업비용 제2항 영업외비용 | ^ | - ××× 천원 ××× 〃 ××× 〃 |

제4조(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 천원과 기처분 ××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 | 수 | 이 ㅂ |
|---|---|----------------------------|
| 제1관 자본적수입 | | ××××천원 |
| 제1항 고정자산매각수입 | | $\times \times \times$ " |
| 제2항 비유동부채수입 | | $\times \times \times$ " |
| 제3항 잉여금수입 | | $\times \times \times$ " |
| 제4항 기타 자본적수입 | | $\times\!\times\!\times$ " |
| | 지 | 출 |
| 제1관 자본적 지출 | | ××××처워 |
| | | |
| 제1항 가동설비자산 | | ××× " |
| , _ , _ , _ | | |
| 제1항 가동설비자산 | | ××× " |
| 제1항 가동설비자산 제2항 비가동설비자산 | | ××× " ×××천원 |
| 제1항 가동설비자산 제2항 비가동설비자산 제3항 무형자산 | | ××× " ×××천원 ××× " |
| 제1항 가동설비자산 제2항 비가동설비자산 제3항 무형자산 제4항 투자자산 | | ××× " ×××천원 ××× " |
| 제1항 가동설비자산 제2항 비가동설비자산 제3항 무형자산 제4항 투자자산 제5항 비유동부채상환금 | | ××× " ×××천원 ××× " ××× " |

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관(분야•부문) | 항(정책사업) | 사업명 | 총 | 액 | 년 도 | 연할액 |
|----------|---------|-----|---|----|--------|-----|
| | | | | 천원 | 20××년도 | 천원 |
| | | | | | 20××년도 | 천원 |
| | | | | | 20××년도 | 천원 |

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사 | 항 | 기 | 간 | 한 | 도 | 액 |
|---|---|---|------|---|---|----|
| | | | 년도에서 | | | 천원 |
| | | | 년도까지 | | | |

제7조(지방채)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기채목적 | 한도액 | 기채방법 | 이자율 | 상환방법 |
|------|-----|------|-----|------|
| | 천원 | | %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숭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재

제8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천원

(2)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천원

(3) 차입금워금상화 ××× "

(4) 차입금이자상환 XXX #

(5) 기타유동부채상환 ××× "

(6) 기타비유동부채상환 ××× "

제10조(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을 위하여 ○○○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제11조(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이월이익잉여금 ××천원과 당년도 예정이익잉여금 ×× 천원 총××천원 중 ××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결손보조금 ×××천원

(2) 이익적립금 ××× "

(3) 감채적립금 ××× "

 (4) 건설개량적립금
 ××× "

(5) 납부금 ××× "

제12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그 세부 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 구 분 | 종 | 류 | 명 | 칭 | 수 | 량 | 금 | 액 |
|---------|---|---|---|---|---|---|---|---|
| 1. 취득자산 | | | | | | | | |
| 2. 처분자산 | | | | | | | | |

제13조(회전기금)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

3. 예산 총괄표

| 사업예4 | 산 | 자본예산 | | 예산총계 | |
|--|-------------------------------------|---|---|--|---|
| 수입계(A) | 000 | 수 입 계 (A') | 000 | 수 입 계 (A") | 000 |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 000 000 000 | 투자자산처분 유형자산처분 기타비유동자산처분 유동부채수입 비유동부채수입 자본금수입 자본이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투자자산처분 유형자산처분 기타비유동자산처분 유동부채수입 비유동부채수입 자본금수입 자본이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지출계 (B) | 000 | 지 출 계 (B') | 000 | 지 출 계 (B") | 000 |
| XX 정책사업 XY 정책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외활동 법인세등 예비비 | 000 000 000 000 000 | XX 정책사업 XY 정책사업 행정운영활동 재무활동 예비비 | 000 000 000 000 | XX 정책사업 XY 정책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외활동 법인세등 재무활동 예비비 | 000 000 000 000 000 000 |
| 차인 (A-B) | 000 | 차인(A'-B') | 000 | 차인(A"-B") | 000 |

3-1. 수입예산 총괄표

| 구 | | , | 세 | _ | | 금액 | (인기 · 선건) |
|--------|----|---------|-------------|---------|---------|---------------|-----------|
| · 분 | 관 | 항 | 항 항 | 목 | 예산액 | 전년도 당초 예산액 | 증감액 |
| | | | | 총계 | 000 | 000 | 000 |
| 사업 | 예산 | | | | 000 | 000 | |
| | 사위 | 업수♀ | 2] | | 000 | 000 | 000 |
| | | 영역 | 업수익 | | 000 | 000 | 000 |
| | | 사용료수익 | | -료수익 | 000 | 000 | 000 |
| | | | | 가정용 | 000 | 000 | 000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
| 자본 | 예산 | | | | 000 | 000 | 000 |
| | 자분 | 본적스 | 수 입 | | 000 000 | | 000 |
| | | 투계 | 사 자신 | -처분 | 000 | 000 | 000 |
| | | | 대여 | 금회수수입 | 000 | 000 | 000 |
| | | | | 대여금회수수입 | 000 | 000 | 000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

3-2. 지출예산 총괄표

| | ㅂ사 | 과 케 | rl.01 | 게 H | | | | 금액 | 건위 · 선원) |
|-----|----------|----------|----------|----------|-------------|------------|-----|---------------|----------|
| 구분 | 분야 부문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목 | 세목 | 예산액 | 전년도 당초 예산액 | 증감액 |
| | | | Ş | 총계 | | | 000 | 000 | 000 |
| 사업여 | 사업예산 | | | | | | 000 | 000 | 000 |
| | 상하수도・수질 | | | | | | 000 | 000 | 000 |
| | | 상수도 | 드사업 | | | | 000 | 000 | 000 |
| | | | 정수성 | 생산관리 |] | | 000 | 000 | 000 |
| | | 정수장 개·보수 | | | | | 000 | 000 | 000 |
| | | | | | 수선- | 유지교체비 | 000 | 000 | 000 |
| | | | | | | 수선유지비 | 000 | 000 | 000 |
|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자본여 |]산 | | | | | | 000 | 000 | 000 |
| | 상하수 | ・・・・ク | 질 | | | | 000 | 000 | 000 |
| | | 상수도 | 드사업 | | | | 000 | 000 | 000 |
| | | | 정수성 | 생산관리 |] | | 000 | 000 | 000 |
| | | | | OO경 |]수장 <u></u> | 둔목공사 (구축물) | 000 | 000 | 000 |
| | | | | | 시설! | 비및부대비 | 000 | 000 | 000 |
| | | | | | | 시설비 | 000 | 000 | 000 |
|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 | | | |

4. 자금운영계획

ㅇ 수입자금

| 계정괴 | | 당년도 예정액(A) |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 (인규·전원) 증 감(A-B) |
|---------------|-------------|------------|-------------------|---------------------|
| 수 입 자 | | | | |
| 영업수익 | 계 | | | |
| ОНІТ | | | | |
| 영업외수익 | 계 | | | |
| 0 1 7 1 7 | | | | |
| 특별이익 | 계 | | | |
| 국일이의 | | | | |
| FələlxləlH | 계 | | | |
| 투자자산처분 | | | | |
| 6 =1 1 1 -1 H | 계 | | | |
| 유형자산처분 | | | | |
| | 계 | | | |
| 기타비유동자산처분 | | | | |
| | | | | |
| 유동부채수입 | 계 | | | |
| 110171111 | | | | |
| 비유동부채수입 | 계 | | | |
| 기보고스이 | 계 | | | |
| 자본금수입 | ⇒ıl | | | |
| 자본잉여금수입 | 계 | | | |
| 유보자금 | 계 | | | |
| | <u></u> 계 | | | |
| 기타자본적수입 | | | | |
| | 계 계속비이월금 | | | |
| 전년도이월금 | 건설개량이월금 | | | |
| | 사고이월금 | | | |
| | 미지급이월금 | | | |

ㅇ 지출자금

| 7 | - 분 | 당년도 예정액(A) |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 증 감(A-B) |
|-------------|-----------|------------|-------------------|----------|
| 지 출 | 자 금 (A) | | | |
| | 계 | | | |
| 기계기시 | a 단위사업 | | | |
| xx 정책사업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계 | | | |
| ···· 거케시어 | a 단위사업 | | | |
| xy 정책사업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행정운영활동 | a 단위사업 | | | |
| 행성군정활동 -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계 | | | |
| 영업외활동 | a 단위사업 | | | |
| 0 6 1 6 0 | b 단위사업 | | | |
| | : | | | |
| 법인세등 | 계 | | | |
| H C 110 | 법 인 세 등 | | | |
| | 계 | | | |
| 재무활동 | a 단위사업 | | | |
| 11 20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계 | | | |
| 전 년 도 | 계속비이월금 | | | |
| 이월예산 | 건설개량이월금 | | | |
| | 사 고 이 월 금 | | | |
| | 미지급금・비용 | | | |

< 별 첨 >

1. 계속비 사업 조서

(단위 : 천원)

| | | | | | | | 연 | 차별 투 | - 자현횡 | - 및 투 | 자계획 | | | |
|--------------|-----|---------|-----|-----|-------|----------|-----|------|----------|-------|------------|-----------|----|----------|
| 예산 과목 사업명 | 구 분 | 사업 | 총 | 전2 | 전년도// | 가지 | | 전년도 | | 당년도 | えばに | 차차년도 | 비고 | |
| | . – | 개요 | 사업비 | 예산액 | 지출액 | 지출 잔액 | 예산액 | 지출액 | 지출 잔액 | 예산액 | 차년도 예산액 | 이후 예산액 | | |
| | | 기존(a) | | | | | | | | | | | | |
| | | 변경(b) | | | | | | | | | | | | 변경 사유 |
| | | 증감(b-a) | | | | | | | | | | | | |

2.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사업명 | 채무부담행위 대상 사업개요 | 채무부담 행위액 | 채무부담 사유 | 상환계획 |
|------|-----|-------------------|-------------|------------|------|
| | |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 | | |

3.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단위 : 토지/천㎡, 건물/㎡, 취득(처분)가액/백만원)

| 뉤ㄷ | | | 취득계획 | | | 처분계획 | | | | | |
|--------------|--|-----|------|----|----|------|-----|-------------|----|------|----|
| 취 득 (처 분) | 자 산 종 별 | 자산명 | 치드 | | | 처분 | 장부기 | -액(a) | 처분 | 핵(b) | 처분 |
| 예정시기 | 기 종 별 ^{사산명} 취득 기 목적 수량 평가액 | | 목적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손익 (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방공사(공단) 예산서 작성서식(예시)

2025년도 지방공사·공단 예산서

지방공사·공단 명

목 차

- 1. 사업운영계획
- 2. 예산 총칙
- 3. 2025년 예산 총괄표
 - 3-1. 수입예산 총괄표
 - 3-2. 지출예산 총괄표
- 4.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 지출자금

< 별 첨 >

- 1. 계속비조서
- 2. 채무부담행위조서
- 3.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 4.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1. 사업운영계획

가. 도시철도공사

| | 구 | 분 | 단위 | 당년도 | 전년도 | 증 | 감 | 비 | 고 |
|-------------------|--|---|---|-----|-----|---|---|---|---|
| 1. 시설 현황 | 1) 시설(2) 정 치 3) 노 선 4) 전동(5) 건설(6) 건설(7) 차량(| · 장 ! 수 차량 보유수 기간 투자비 | km 개소 개 량 억원 개소 | | | | | | |
| 2. 업무 현황 | | 편성 시격 평 시 R·H 회수 주행거리 ·송인원 수송인원 | 변 명/회 분 분 일 배만 명 천원 백만원 생 | | | | | | |
| 3. 건설 | 1) 건설 ² 2) 건설 ² 3) 건설 ² 4) 정차 ² 5) 전동 ² 6) 차량 ² | 기간장 투자비 장설치(신설) 차구입 | km ~ 억원 개소 량 개소 | | | | | | |
| 4. 인력 관리 계획 | 2) 増 3) 기 4) 기 5) 무기 | 능 직 | 명 " " " " | | | | | | |
| 5. 자산 | 평가액 | | 억원 | | | | | | |

나. 도시개발공사

| | 구 분 | 단위 | 당년도 | 전년도 | 증 감 | 刊 | 고 |
|-------------------------|---|--|-----|-----|-----|---|---|
| 1. 주택보급 현황 | 행정구역총세대수(A) 주택세대수(B) 무주택세대수(C) 주택보급율B/A×100 무주택율C/A×100 | 세대 " " % " | | | | | |
| 2. 택지조성 및 주택 건설계획 | | 천m ² """천 """ 천원 """" 천원 """" 11 천원 """" 11 천원 """" 11 천원 """" 11 천원 11 """ 11 천원 11 """" 11 천원 11 """" 11 """ 11 천원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 | | | | |
| 3. 기타사업 계획 | | " | | | | | |
| 4. 인력관리 계획 | 계 1) 일 반 직 2) 기 능 직 3) 기 타 직 4) 무기계약근로자 5) 기간제근로자 등 | 명 """""""""""""""""""""""""""""""""""" | | | | | |
| 5. 자산평가 | 백 | 억원 | | | | | |

다. 시설관리공단

| | 구 | 世 | 단위 | 당년도 | 전년도 | 증 | 감 | 비 | 고 |
|-------------------|--|---|--|-----|-----|---|---|---|---|
| 1. 시설 현황 | 공영주차 구차빌딩 상가관리 공원관리 견인차링 수영장관 장묘관리 가로등관 | 수 - - -리 | 면/개소 개소/m 개소 대 대 m²/개소 m²/개소 m²/개소 m²/개소 | | | | | | |
| 2. 업무 현황 | 6) 견인차링7) 년간 수약8) 년간 장! | 차요금수입 가관리수입 원관리수입 차위반 견인수입 = 1일견인실적 영장관리수입 | 대/일 백만원 " " 대/일 백만원 " | | | | | | |
| 3. 건설 계획 | 주차장 4 장묘장 4 건인차링 상가시설 장묘시설 | 신설·확장 - 구입보강 ! 확장 | 면/개소 m²/개소 대 m²/개소 m²/개소 | | | | | | |
| 4. 인력 관리 현황 | 1) 임 2) 일 반 3) 기 능 4) 기 타 5) 무기계익 6) 기간제근 | 직 직 근로자 | B "" "" "" | | | | | | |
| 5. 자산 | 평가액 | | 억원 | | | | | | |

2. 예산 총칙

제1조(총칙) 2025년도 ○○공사·공단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가. 예정손익계산서

| 차 | 변 | 대 변 | | | |
|------|--------|-----|-----|--|--|
| मो 8 | 비용 순이익 | | 순손실 | |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나. 예정재무상태표

| 차 | 변 | 대 변 | | | |
|----|--------|-----|----|--|--|
| 자산 | 자산 순손실 | | 자본 | |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다.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 과 목 | 금 액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천원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천원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천원 |
| Ⅳ. 현금의 증감(I + II + III) | 천원 |
| V. 기초의 현금 | 천원 |
| Ⅵ. 기말의 현금 | 천원 |

제2조(업무의 예정량)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예시 : 도시개발공사)

가. 연간 총 생산량

 \bigcirc 산업단지조성 : $\bigcirc\bigcirc$ 산단 외 \bigcirc 개소 $\bigcirc\bigcirc\bigcirc$ 천 \mathbf{m}^2

○ 도시개발사업 : ○○부지 외 ○개소 ○○○천m²

○ 주택건설사업 : ○○지구 외 ○개소 ○○○세대

나. 연간공급계획

○ 용지공급 : ○○지구 외 ○개소 ○○○천㎡○ 주택공급 : ○○지구 외 ○개소 ○○○호

(예시 : 환경관리공단)

가. ○○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처리용량 ○○만톤/일, 처리량 ○○만톤/일) 나. ○○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처리용량 ○○만톤/일, 처리량 ○○만톤/일) 다. ○○사업소: 위생소각장 운영(처리용량 ○○만톤/일, 처리량 ○○만톤/일) 라. ○○사업소: 소각처리장 운영(처리용량 ○○만톤/일, 처리량 ○○만톤/일)

제3조(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수 | ol ㅂ |
|------------------------|--------------|------------------------------|
| 제1관 ○○사업수입 | | ××××천원 |
| 제1항 영업수익 | | $\times \times \times$ " |
| 제2항 영업외수익 | | $\times \times \times$ " |
| 제3항 특별이익 | | $\times \times \times$ " |
| | | |
| | ス | 출 |
| | <i>/</i> · / | |
| 제1관 ○○사업비용 | 71 | 르 ××××천원 |
| 제1관 ○○사업비용 제1항 영업비용 | 7 1 | - |
| . – | 7 1 | - ××××천원 |
| 제1항 영업비용 | ~ 1 | - ××××천원 ××× 〃 |
| 제1항 영업비용 제2항 영업외비용 | ~ · I | - ×××천원 ××× " ××× " |

제4조(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 천원과 기처분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 제3항 고정부채수입 | $\times \times \times$ " |
|---------------|--------------------------|
| 제4항 자 본 금 | $\times \times \times$ " |
| 제5항 자본잉여금수입 | $\times \times \times$ " |
| 제6항 기타자본잉여금수입 | $\times \times \times$ " |
| ス | <u>충</u> 꿀 |
| 제1관 자본적 지출 | ××××천원 |
| 제1항 투자자산 | $\times \times \times$ " |
| 제2항 유형자산 | $\times \times \times$ " |
| 제3항 무형자산 | $\times \times \times$ " |
| 제4항 유동부채상환금 | $\times \times \times$ " |
| 제5항 고정부채상환금 | $\times \times \times$ " |
| 제6항 기타 자본적 지출 | $\times \times \times$ " |
| 제7항 예 비 비 | $\times \times \times$ " |

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관 | हो | 사업명 | 총 액 | 년 도 | 연할액 |
|---|----|-----|-----|--------|-----|
| | | | 천원 | 20××년도 | 천원 |
| | | | | 20××년도 | 천원 |
| | | | | 20××년도 | 천원 |

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사 | 항- | 기 | 간 | 한 | 도 | 액 |
|---|----|---|--------------|---|---|----|
| | | | 년도에서 년도까지 | | | 천원 |

제7조(공사채 등) 공사채 등 외부자금의 차입계획 및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다.

- (그 세부내역은 별첨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와 같다)
- (1) 외부자금 차입예정액: ×××천원
- (2) 외부차입자금 상환예정액 : ×××천원

제8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1) 인거비 ×××처워

(2)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 "

(3) 차입금워금상화 ××× "

(4) 차입금이자상화 ××× "

(5) 기타유동부채상환 ××× "

(6) 기타비유동부채상환 ××× "

제10조(대행사업 경비) ○○사업을 위하여 ○○시·도 ○○회계로부터 이 공사(공단)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며, ○○시·도 ○○특별회계로부터 이 공사(공단)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

제11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그 세부 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 구 분 | 종 | 류 | 명 | 칭 | 수 | 량 | 금 | 액 |
|--------------------|---|---|---|---|---|---|---|---|
| 1. 취득자산 2. 처분자산 | | | | | | | | |

3. 예산 총괄표

| 사업예 | 산 | 자본예산 | | 예산총계 | 귀 · 선턴) |
|--|-------------------------------------|---|---|---|---|
| 수입계(A) | 000 | 수 입 계 (A') | 000 | 수 입 계 (A") | 000 |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 000 000 000 | 투자자산처분 유형자산처분 기타비유동자산처분 유동부채수입 비유동부채수입 자본금수입 자본이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투자자산처분 유형자산처분 기타비유동자산처분 가동부채수입 비유동부채수입 자본금수입 자본이여금수입 자보이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지출계 (B) | 000 | 지 출 계 (B') | 000 | 지 출 계 (B") | 000 |
| XX 정책사업 XY 정책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외활동 법인세등 예비비 | 000 000 000 000 000 | XX 정책사업 XY 정책사업 행정운영활동 재무활동 예비비 | 000 000 000 000 | XX 정책사업 XY 정책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외활동 법인세등 재무활동 예비비 | 000 000 000 000 000 000 |
| 차인 (A-B) | 000 | 차인(A'-B') | 000 | 차인(A"-B") | 000 |

3-1. 수입예산 총괄표

| | | 고 최 세 P | | | 금액 | | | | |
|-----|----|---------|-----|---------------|-----|---------------|-----|--|--|
| 구분 | 관 | 항 | 항 | 목 | 예산액 | 전년도 당초 예산액 | 증감액 | | |
| 총계 | | | | | 000 | 000 | 000 | | |
| 사업이 | 계산 | | | | 000 | 000 | 000 | | |
| | 사업 | 수익 | | | 000 | 000 | 000 | | |
| | | 영업 | 수익 | | 000 | 000 | 000 | | |
| | | | 사용 | 료수익 | 000 | 000 | 000 | | |
| | | | | 가정용 | 000 | 000 | 000 | |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여 | 계산 | | | | 000 | 000 | 000 | | |
| | 자본 | -적수 | 입 | | 000 | 000 | 000 | | |
| | | 투지 | ·자산 | 처분 | 000 | 000 | 000 | | |
| | | | 대여 | 금회수수입 | 000 | 000 | 000 | | |
| | | | | 대여금회수수입 | 000 | 000 | 000 | |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지출예산 총괄표

| | 분야 | 정책 | 단위 | 세부 | | | | 금액 | 한지 • 선천/ |
|-----|--------------------|------|------|-------|------------|---------|-----|---------------|----------|
| 구분 | 부문 | | | 사업 | 목 | 세목 | 예산액 | 전년도 당초 예산액 | 증감액 |
| | | | Ş | 총계 | | | 000 | 000 | 000 |
| 사업회 | 사업예산 | | | | | | | 000 | 000 |
| | 지역 및 도시 / 산업단지 / … | | | | | | | 000 | 000 |
| | | 토지기 | 배발 및 | 주택분 | 양사업 | | 000 | 000 | 000 |
| | | | 주택판 | 반매 관i | 리 | | 000 | 000 | 000 |
| | | | | 001 | 스택 수 | 선유지 | 000 | 000 | 000 |
| | | | | | 수선- | 유지교체비 | 000 | 000 | 000 |
| | | | | | | 수선유지비 | 000 | 000 | 000 |
|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자본여 | · 산 | | | 1 | | | 000 | 000 | 000 |
| | 지역 | 및 도시 | / 산약 | 법단지 / | / . | | 000 | 000 | 000 |
| | | 토지기 | 배발 및 | 주택분 | 양사업 | | 000 | 000 | 000 |
| | | | 주택3 | 측성 | | | 000 | 000 | 000 |
| | | | | 001 | 스택 조 | 성(미완성) | 000 | 000 | 000 |
| | | | | | 시설1 | 비 및 부대비 | 000 | 000 | 000 |
| | | | | | | 시설비 | 000 | 000 | 000 |
| | | | | | |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4. 자금운영계획

ㅇ 수입자금

| | | | ונונו. דווב | (단위 · 선원) |
|-----------|---|------------|-------------------|-----------|
| 계정고 | | 당년도 예정액(A) |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 증 감(A-B) |
| 수 입 자 | 금 (A) | | | |
| 영업수익 | 계 | | | |
| 영업외수익 | 계 | | | |
| 특별이익 | 계 | | | |
| 투자자산처분 | 계 | | | |
| 유형자산처분 | 계 | | | |
| 기타비유동자산처분 | 계 | | | |
| 유동부채수입 | 계 | | | |
| 비유동부채수입 | 계 | | | |
| 자본금수입 | 계 | | | |
| 자본잉여금수입 | 계 | | | |
| 유보자금 | 계 | | | |
| 기타자본적수입 | 계 | | | |
| 전년도이월금 | 계 계속비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사고 이월 금 미지급이월금 | | | |

ㅇ 지출자금

| า | 2 분 | 당년도 예정액(A) |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 중 감(A-B) |
|------------|---------------|------------|-------------------|----------|
| 지 출 | 자 금 (A) | | | |
| | 계 | | | |
| 거케시어 | a 단위사업 | | | |
| xx 정책사업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계 | | | |
| xy 정책사업 | a 단위사업 | | | |
|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행정운영활동 | a 단위사업 | | | |
| 0 0년 0 월 0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계 | | | |
| | a 단위사업 | | | |
| 영업외활동 | b 단위사업 | | | |
| | : | | | |
| 2.2.2= | 계 | | | |
| 법인세등 | 법 인 세 등 | | | |
| | 계 | | | |
| 7 T - 2 F | a 단위사업 | | | |
| 재무활동 | b 단위사업 | | | |
| | : | | | |
| | 계 | | | |
| | 계 속 비 이 월 금 | | | |
| 전 년 도 | 건 설 개 량 이 월 금 | | | |
| 이월예산 | 사 고 이 월 금 | | | |
| | 미지급금・비용 | | | |
| l | 1 1 1 1 1 1 0 | | | |

< 별첨 1 > 계속비조서

(단위 : 천원)

| | | | | | | 연차별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 | | | | | | | |
|--------|------|---------|----|-----|--------|-----------------|----------|-----|-----|----------|------------|-----|-----------|----------|
| 예산 사업명 | | 구 분 | 사업 | 총 | 전전년도까지 | | 전년도 | | 타네트 | 차년도 | 차차년도 이후 | 비고 | | |
| 과목 | 71日0 | 1 4 | 개요 | 사업비 | 예산액 | 지출액 | 지출 잔액 | 예산액 | 지출액 | 지출 잔액 | 당년도 예산액 | 예산액 | 이후 예산액 | 7) 35 |
| | | 기존(a) | | | | | | | | | | | | |
| | | 변경(b) | | | | | | | | | | | | 변경 사유 |
| | | 증감(b-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2 >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사업명 | 채무부담행위 대상 사업개요 | 채무부담 행위액 | 채무부담 사유 | 상환계획 |
|------|-----|-------------------|-------------|------------|------|
| | |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 | | |
| | | | | | |

< 별첨 3 >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단위: 백만원)

| | | 승인받은 금액 | | | 차입선 | , , h | 발행액 및 발행 예정액 | | | 원금상환 | | | 이자상환 | | | |
|--------|------------|---------|-----|-----|-------|-------|--------------|-----|-----|------|------|-----|------|-----|-----|-----|
| 사업대 | 용 사업개요 | | | | | | | | | 상환액 | 상환계획 | | 상환액 | 상환 | ·계획 | |
| ^[H . | 2 八月川亚 | 계 | '23 | '24 | / [급선 | (이자율) | 계 | '24 | '25 | '26 | '24 | '25 | '26 | '24 | '25 | '26 |
| | | /1 | 까지 | 24 | | (| /1 | 까지 | | 이후 | 까지 | 20 | 이후 | 까지 | 20 | 이후 |
| | ما ما ما ه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동사합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사업비 등 | | | | | | | | | | | | | | | |

< 별첨 4 >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단위: 토지/천㎡, 건물/㎡, 취득(처분)가액/백만원)

| | 취 득 | | 3 3 | 2 22 | | | | 취득계획 | | | 처분계획 | | | | | |
|----|------|------------|-----|------|--------|------|----|---------|----|--------|------|-------|--|--|--|--|
| () | 처 분) | 자 산 종 별 | 자산명 | 취득 | よ ¬Ъ | 퍼리 제 | 처분 | 장부가액(a) | | 처분액(b) | | 처분손익 | | | | |
| 예 | 정시기 | ㅎ 크 | | 목적 | 수량 평가액 | | 목적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인 쇄 일 ▮ 2024년 월 일

발 행 일 ▮ 2024년 월 일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TEL. (044)205-3987

FAX. (044)204-8940